

獨逸統一 3年에 대한 經濟的 評價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統一을 이룬 지 만 3년이 지난 지금 獨逸은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심각한 統一後遺症에 시달리고 있다. 엄청난 統一費用의 부담 때문에 財政赤字, 高金利, 그리고 치솟는 失業率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獨逸의 이러한 統一後遺症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政策選擇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앞으로의 韓半島 統一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分斷國家의 統一過程에서 매우 중요한 課題로 대두되고 있는 通貨統合, 企業民營化, 勞動市場政策, 統一費用調達方案 등의 주제를 차례로 분석해 보았다. 특히 獨逸統一 以後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본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앞서 출간된 유사 보고서들과는 자못 다른 觀點을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즉, 본 보고서는 統一에 대한 幻想이 부서지고 經濟沈滯의 늪에 빠진 獨逸의 統一過程을 반추해 보는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독일경제가 短期的인 經濟沈滯에 빠졌다고 하여 단순히 獨逸統一이 失敗했다고 결론 짓고 있지는 않다. 獨逸政府가 統一過程에서 추진해온 각 부문의 經濟政策을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에서 모두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韓半島 統一에 他山之石으로 삼으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本院의 金裕燦 專門研究委員이 집필하여 완성하였다. 본 보고서가 獨逸現地の 統一進行 實相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著者는 금년 봄에 現地를 방문, 많은 최신 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著者は 資料蒐集에 지대한 도움을 준 獨逸聯邦財務部の G. L. Orlopp 博士, 獨逸聯邦銀行의 R. König 局長, Hamburg 세계경제연구소의 M. Krakowski 博士, 그리고 同 研究所의 財務部 派遣官인 姜錫浚 書記官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有益한 助言을 아끼지 않은 本院의 金勳鎔, 孫光洛 博士들에 대해서도 感謝한 마음을 표하고 있으며, 資料蒐集 및 整理에 도움을 준 金勇周, 成周錫 研究員과 崔美英, 趙明熙 研究助員, 그리고 校訂을 도맡아 준 出版部の 여러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모든 內容은 著者の 個人的 見解이며 本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11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I. 序 論	1
II. 統一過程의 選擇	4
1. 體制轉換(體制統合)의 3段階論	4
가. 市場經濟體制의 制度整備 段階	4
나. 體制統合 段階(價格自律化 段階)	5
다. 經濟的 構造調整 段階	6
2. 體制統合 5段階論	7
가. 制度的 準備 第1段階: 市場經濟制度의 基本的 틀 確立 ...	7
나. 制度的 準備 第2段階: 統合過程을 위한 限時的 特別法 制定	8
다. 體制統合의 第1段階: 體制統合	8
라. 體制統合의 第2段階: 行政 및 經濟組織의 擴大	9
마. 產業構造調整 段階	9
3. 體制統合 5段階論과 獨逸統一 過程	9
4. 衝擊療法과 漸進療法	12
가. 衝擊療法	12
나. 漸進療法	13

5. 舊東西獨 經濟統合과 東유럽 體制轉換 過程의	
示唆點	13
가. 個別段階의 成熟期間	14
나. 産業生産 減少期間 및 減少程度의 關係	15
다. 體制轉換 方法의 自由選擇 制約	18
라. 體制統合과 體制轉換의 區分	19
마. 體制統合의 經濟的 影響	21
III. 通貨統合	24
1. 通貨統合의 背景	24
2. 通貨交換 比率	25
3. 最終案	26
4. 通貨統合에 대한 評價	26
가. 通貨統合의 準據	27
나. 通貨統合時 通貨交換 比率 決定의 理論的 背景	28
다. 東獨地域 住民의 通貨資産價値 保障 觀點에서 본 通貨交換 比率	30
라. 企業競爭力 側面에서 본 通貨交換 比率의 評價	32
마. 인플레이션의 可能性에서 본 通貨統合	35
바. 綜合評價	37
5. 結 語	38
IV. 企業民營化 및 土地私有化	40
1. 獨逸 信託管理廳의 企業民營化 作業	40
가. 信託管理廳의 設立과 組織	40

나. 信託管理廳의 民營化業務 推進 基本方向	41
다. 民營化 推進實績	42
라. 信託管理廳의 財政現況	48
2. 民營化 方案에 대한 評價와 代案	49
가. 民營化 方案에 대한 評價基準	49
나. 民營化 方案	50
다. 民營化 實績의 不振과 賣却收益 低調의 原因	51
라. 賣却方式에 대한 代案으로서 從業員 資本參與 모델의 可能性	59
3. 東獨地域의 土地私有化政策	63
가. 所有權 確立 方案	63
나. 統一獨逸의 土地私有化政策	63
다. 統一獨逸 土地私有化政策의 問題點	64
라. 返還原則의 修正	65
마. 補償原則과 補償基金 財源의 마련	67
바. 評價 및 示唆點	69
V. 勞動市場政策	70
1. 統獨 後 獨逸 勞動市場의 變化推移	70
가. 東獨地域의 人口와 勞動力의 急激한 減少	70
나. 雇傭體系의 崩壞	71
2. 賃金政策	74
가. 東獨地域의 賃金上昇	74
나. 賃金上昇의 原因	78
다. 賃金上昇과 雇傭	79

라. 統獨과 西獨地域의 賃金政策	81
3. 勞動市場政策	82
4. 失業과 勞動政策 手段의 財政費用	87
5. 勞動市場政策과 政策代案들에 대한 評價	88
가. 經濟活性化 및 勞動市場政策 手段으로서의 賃金補助金 支給方案	88
나. 勞動力 移動(移住)의 制限	93
다. 綜合評價	94
VI. 巨視經濟政策	96
1. 統一 後 巨視經濟指標의 變化	96
가. 獨逸의 經濟成長率 推移	96
나. 東獨地域의 經濟狀況	98
다. 西獨地域의 經濟狀況	99
라. 失業率 및 物價上昇率 推移	100
마. 展 望	101
2. 經濟沈滯의 原因	102
3. 統一 後 獨逸의 財政政策	103
4. 統一 後 獨逸의 金融政策	106
가. 利子率政策	106
나. 通貨量政策	107
VII. 統一費用 推計와 費用調達方案	109
1. 統一費用의 概念	109

2. 統一費用的 推計	112
가. 統一費用的 構成	112
나. 政府部門 統一費用	115
3. 統一費用 調達方案	124
가. 統一費用으로 인한 獨逸政府의 財政赤字 規模	124
나. 稅收增大를 통한 財源調達	127
다. 政府負債	131
라. 支出削減을 통한 財源調達	132
4. 獨逸政府의 統一費用 調達政策 選擇의 可能性과 展望	134
가. 概括的 統一費用 調達現況	134
나. 政策選擇의 可能性과 限界	137
5. 統一費用 調達方案의 理論的 比較	144
가. 增稅와 資本市場 借入	144
나. 直接稅와 間接稅	146
VIII. 政府構造 改編과 社會經濟制度 整備	147
1. 州政府間의 水平財政移轉制度(逆交付金制度)	148
가. 1994年까지의 水平財政移轉制度	148
나. 1995年 以後의 水平財政移轉制度	149
2. 稅務行政機構의 統合	150
가. 舊東獨의 稅務行政機構	150
나. 統合過程의 主要 爭點(租稅制度의 單純化)	151
다. 東獨地域의 稅務行政機構 構築	152

라. 問題點	153
3. 東獨地域 銀行制度의 改編	155
가. 舊東獨의 銀行制度	155
나. 東獨地域 銀行制度의 改編	156
다. 銀行制度 改編過程의 主要 爭點	162
4. 社會保障制度의 確立	170
가. 東獨地域에 實施할 社會保障의 原則	170
나. 年金制度	170
다. 醫療保險制度	171
라. 其他 社會保障制度	172
마. 社會保障 行政體制의 確立을 위한 支援	172
5. 住居支援制度	173
가. 住宅部門의 所有權 確定	173
나. 東獨地域에서의 賃貸料 引上	174
다. 東獨地域의 住宅現代化 및 補修	175
6. 醫療·保健分野	176
가. 醫療·保健體系의 構造整備	176
나. 醫藥品 供給 擴大 및 補助金 支援	177
IX. 韓半島와 獨逸의 統一與件 比較	179
1. 經濟力 比較	179
2. 經濟體制 및 制度의 差異	180
3. 統一對備 制度의 整備	183

4. 統一過程에 대한 政策的 選擇	184
5. 結 語	185
X. 綜合整理 및 政策的 示唆點.....	186
〈參考文獻〉	198

表 目 次

〈表 II- 1〉東歐 3國의 通貨供給, 利子率 및 物價 現況	7
〈表 II- 2〉獨逸統一 過程의 主要事件 年代表	10
〈表 II- 3〉西獨地域의 製造業 稼動率	21
〈表 III- 1〉舊東西獨 通貨의 購買力 比較	31
〈表 III- 2〉M ₃ 와 可處分國民所得의 關係(1989)	36
〈表 III- 3〉所得 및 資産에 대한 세 가지 觀點에서 본 適正 通貨 交換 比率과 通貨統合時의 實際 通貨交換 比率	38
〈表 IV- 1〉民營化 進陟現況(1993. 2)	43
〈表 IV- 2〉民營化 對象企業의 部門別 現況	44
〈表 IV- 3〉國別 東獨地域 企業 引受現況(1993. 2)	45
〈表 IV- 4〉信託管理廳 私有化 實績(1993. 2)	46
〈表 IV- 5〉信託管理廳 管理財産의 原所有者 歸屬現況 (1993. 2)	47
〈表 IV- 6〉部門別 企業閉鎖 現況(1993. 2)	47
〈表 IV- 7〉信託管理廳의 財政現況	48
〈表 IV- 8〉信託管理廳 管理土地 現況	52
〈表 V- 1〉東獨地域의 人口 推移	71
〈表 V- 2〉東獨地域의 雇傭 推移(1990~92)	72
〈表 V- 3〉短縮勞動制度를 통한 就業人口	72
〈表 V- 4〉雇傭 및 民營化 現況	74
〈表 V- 5〉東獨地域 勞動者의 月平均 賃金水準	76

〈表 V-6〉獨逸企業의 單位製品當 利潤 및 賃金費用增加率 推移(1991~93)	77
〈表 V-7〉生産性, 賃金 및 賃金費用上昇率(1992. 下半期)	77
〈表 V-8〉産業別 雇傭量, 總賃金 및 1人當 給與 推移 (1992. 1/4)	80
〈表 V-9〉勞動市場政策의 手段 및 規模	83
〈表 V-10〉失業과 勞動政策 手段의 財政費用(1992)	87
〈表 V-11〉「버클리모델」에 따른 賃金補助金의 雇傭創出效果와 財政負擔規模(1992)	90
〈表 VI-1〉獨逸의 經濟成長率 推移	96
〈表 VI-2〉東獨地域의 産業別 附加價值生産	98
〈表 VI-3〉西獨地域의 産業生産 推移	99
〈表 VI-4〉獨逸의 失業率 推移	100
〈表 VI-5〉獨逸의 消費者物價上昇率 推移	101
〈表 VI-6〉獨逸經濟의 展望(1993)	101
〈表 VI-7〉獨逸政府의 財政赤字 累積現況	103
〈表 VI-8〉獨逸 財政再建計劃의 主要內容	104
〈表 VI-9〉獨逸 政府財政의 展望	105
〈表 VI-10〉獨逸의 利子率 推移	106
〈表 VI-11〉獨逸의 國際收支 動向	107
〈表 VI-12〉獨逸의 總通貨(M ₃) 推移	108
〈表 VII-1〉南北韓 統一費用 推計結果 比較	110
〈表 VII-2〉獨逸 統一費用 推計結果 比較	111
〈表 VII-3〉獨逸 統一費用의 構成	112
〈表 VII-4〉總統一費用 內譯	113
〈表 VII-5〉東獨地域에 대한 投資需要	114
〈表 VII-6〉民間投資 需要額과 投資額	115
〈表 VII-7〉西獨地域 政府部門의 統一費用 內譯	116

〈表 VII- 8〉 獨逸 聯邦政府의 統獨關聯 支出 比重	116
〈表 VII- 9〉 東獨地域에 대한 財政支援 內譯(1991)	117
〈表 VII-10〉 東獨地域에 대한 財政支援 內譯(1992)	118
〈表 VII-11〉 統一關聯 國家財政 負擔額 및 新設 5個 州 交付金(1991)	119
〈表 VII-12〉 東獨地域 再建 共同事業의 聯邦政府 財政負擔	121
〈表 VII-13〉 獨逸統一基金에 의한 年度別 財政移轉 規模	122
〈表 VII-14〉 東獨地域 州政府의 支出 및 收入構造(1992)	123
〈表 VII-15〉 政府部門의 財政收入과 財政支出	125
〈表 VII-16〉 政府支出 內譯	126
〈表 VII-17〉 社會保障機構의 財政赤字 規模	126
〈表 VII-18〉 稅收增大를 위한 政府施策과 稅收增大效果.....	127
〈表 VII-19〉 聯邦政府, 州政府, 基礎自治團體의 稅收總額	128
〈表 VII-20〉 增稅措置로 인한 國民의 追加負擔額	130
〈表 VII-21〉 個人所得 擔稅率 推移	131
〈表 VII-22〉 全體 公共部門의 財政赤字	132
〈表 VII-23〉 聯邦緊縮프로그램에 의한 緊縮目標(1993~96)	133
〈表 VII-24〉 全體 公共部門의 財源調達 內譯	134
〈表 VII-25〉 獨逸의 資本收支 推移	135
〈表 VII-26〉 獨逸의 長期資本收支 內譯	136
〈表 VII-27〉 聯邦政府의 補助金 및 租稅支援 現況	139
〈表 VII-28〉 社會福祉費 및 防衛費 支出 比重	139
〈表 VII-29〉 EC國家들의 附加價值稅率	143
〈表 VIII- 1〉 舊西獨의 逆交付金 負擔 및 受取 基準.....	148
〈表 VIII- 2〉 水平財政移轉制度를 통한 州間의 財政移轉 推移 ..	149
〈表 VIII- 3〉 舊東西獨의 稅務公務員 1人當 人口規模	151
〈表 VIII- 4〉 東獨地域의 金融機關 現況	159
〈表 VIII- 5〉 東獨地域 金融機關의 民間 與·受信 規模 推移	161

〈表 VIII- 6〉東西獨地域 金融機關의 民間與信 成長規模 比較 (1992. 6. 30)	161
〈表 VIII- 7〉東西獨地域 金融機關의 民間與信 規模 比較 (1992. 6. 30)	161
〈表 VIII- 8〉東獨地域의 資金供給 規模	164
〈表 VIII- 9〉統合條約에 따른 東獨마크貨 對 DM貨의 交換比率을 想定한 貸借對照表	166
〈表 VIII-10〉金融機關別 店鋪數, 營業規模 및 市場占有率 (1991年 末)	169
〈表 VIII-11〉東西獨地域 年金生活者 年金受領額의 增加 推移	171
〈表 VIII-12〉統獨 直前 舊東西獨의 住宅現況 比較	175
〈表 VIII-13〉東獨地域의 州別 住宅新築·補修現況(1991)	175
〈表 VIII-14〉東獨地域 病院의 病床數 및 從事者數 現況	177
〈表 IX- 1〉舊東西獨과 南北韓의 經濟力 隔差 比較	179
〈表 IX- 2〉南韓과 西獨地域의 歲出內譯 比較(1991)	181
〈表 IX- 3〉南韓과 西獨地域의 財政規模 比較	182
〈表 IX- 4〉南韓과 西獨地域의 租稅負擔率 比較	183

圖 目 次

[圖 II-1] 統合 5段階와 舊東獨 經濟體制의 主要 轉換過程	11
[圖 II-2] 헝가리, 폴란드, 舊東獨의 經濟體制轉換 後 產業生産 水準의 變化	17
[圖 IV-1] 獨逸과 美國의 實質利子率 推移	54
[圖 IV-2] 東西獨地域 企業에 대한 投資의 「캐쉬 플로우」 (cash-flow) 比較	55
[圖 IV-3] 資本調達 制限과 支拂可能한 企業賣却 價格	56
[圖 VIII-1] 西獨地域의 稅務行政機構圖	152
[圖 VIII-2] 獨逸의 金融機關 體系圖	157

I. 序 論

舊東西獨이 經濟統合을 이룬 지 만 3년이 지났다. 1990년 7월 1일 구동서독은 '經濟·社會·通貨同盟의 創設에 관한 國家條約'을 발효시킴으로써 統獨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이 경제통합은 3개월 뒤 政治統合으로 이어져 완전한 統一이 실현되었다. 이리하여 독일은 유럽 최대의 經濟·政治大國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오는 2000년대에는 EC圈域을 넘어 대서양 연안에서 우랄 산맥까지 7억 5,000만 인구의 유럽經濟圈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獨逸은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심각한 統獨後遺症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경제력이 부담할 수 없는 엄청난 統一費用 때문에 막대한 財政赤字, 高金利, 그리고 치솟는 失業率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한 해를 보더라도 東獨地域을 지원하기 위해 西獨地域이 부담한 政府支援金은 1,500억DM에 달했는데 이는 독일 GNP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이다. 統獨以後 1년 반 정도는 서독지역 기업에 統獨特需가 작용, 서독지역 기업이 거의 100% 가 동틀하에서 조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독지역 경제가 經濟統合 後 1年間(1990. 7~1991. 6) 4.9%라는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統獨特需가 사라지면서 서독지역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기 시작, 지난해에는 1.5%의 성장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2.0% 내외의 마이너스 成長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失業者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올 들어서는 360만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市場經濟에 익숙치 않은 東獨地域 經濟는 경제통합과 함께 급속히 붕괴되면서 심각한 生産減少와 失業者 量產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90년 현재 동독지역의 GDP는 1989년의 50

% 수준에 그치고 있다.

獨逸統一 後 3年이 지난 오늘날 그 동안 獨逸政府의 統一關聯 經濟政策은 어떠하였으며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未來의 韓半島 統一에 어떠한 示唆點을 안겨주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된다. 과연 작금의 統獨後遺症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政策選擇이나 政策의 優先順位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를 보다 면밀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本 研究는 우선 第II章에서 統一過程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개관한 후 第III章부터 第VII章까지는 獨逸統一 過程의 가장 중요한 政策決定 部門인 通貨統合, 企業民營化 및 土地私有化政策, 勞動市場政策, 巨視經濟政策, 統一費用 調達政策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차례로 고찰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이 章들에서는 統一獨逸의 經濟政策 中 民營化政策, 土地私有化政策, 勞動市場政策 등에 政策의 問題點이 있고, 이 때문에 統獨後遺症이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면에 通貨統合은 주어진 통일과정 여건 속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함으로써, 統獨後遺症의 주된 원인을 通貨統合에서 찾는 학계와 언론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관점을 달리했다.

이러한 기본시각을 바탕으로 第III章에서는 구동서독의 通貨統合이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왜 아주 바람직한 선택으로 여겨지는지 논의하였으며, 第IV章과 第V章에서는 民營化政策, 土地私有化政策, 勞動市場政策 등의 問題點을 분석하고 代案을 제시해 보았다. 第VI章의 巨視經濟政策 고찰에 이어 第VII章에서는 西獨地域의 統一費用 調達方式과 西獨地域 政府에 주어진 資本調達 手段別 可能性과 限界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第VIII章에서는 統一獨逸에서 이루어진 行政構造 및 社會經濟制度의 改編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고 第IX章에서는 韓半島와

獨逸의 統一與件을 비교해 보았다. 끝으로 第X章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綜合整理하고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지었다.

II. 統一過程의 選擇

市場經濟體制에 의한 計劃經濟體制的 統合을 전제로 논의할 때, 吸收統合되는 국가 또는 지역이 경험하게 될 體制轉換 過程을 最適化하기 위해서는 전환과정에 필요한 段階를 파악하여 그 最適順序를 결정하며 각 단계에 소요되는 最適期間을 알아야 한다.

體制轉換 過程을 最適化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制限的인 與件下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제한적 여건들로서는 政治的 與件, 異質的 經濟體制에 기인한 經濟行爲 樣式的 差異 등과 같은 非經濟的 與件, 資本스투의 構造的 變化와 國家經濟의 財政的 與件 등과 같은 經濟的 與件 등을 들 수 있다.

1. 體制轉換(體制統合)의 3段階論

體制轉換 내지 體制統合 過程은 다음의 세 段階로 나뉘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

가. 市場經濟體制的 制度整備 段階

第1段階에서는 市場經濟를 위한 法的·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1) 이러한 3段階論은 「시버트」(H. Siebert), 「크라콥스키」(M. Krakowski), 「클로텐」(N. Kloten) 등에 의해 언급되었다(H. Siebert, *The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Kiel Discussion Papers 163, Kiel: Kiel Institut, 1991; M. Krakowski, "System Transform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Eastern Germany and Eastern Europe: Some Lesson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Two Years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organized by KIEP and FES, Seoul, October 2, 1992; N. Kloten, "Zur Transformation von Wirtschaftsordnungen," *Ordo*, Vol. 40, 1989).

한다. 입법활동을 통해 사유재산, 법적분규의 해결 및 새로운 기업 설립 등과 관련한 市場經濟制度에 必須的인 法律規定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期間은 政治的 過程에 의존하며, 이러한 법규들은 새로운 經濟的 自由를 보장하고 수호하는 데 필요한 司法 또는 行政機構를 설립하기 위한 前提條件이 된다. 그 밖에 이 단계에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직으로는 國營企業의 私有化를 담당하는 기구, 통상적인 金融政策을 수행하는 中央銀行, 社會保障制度 등을 운용하는 保險制度 등이 있다.

나. 體制統合 段階(價格自律化 段階)

第2段階는 價格自律化 段階이다. 이 단계는 매우 短期的으로 또는 短순간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격자유화의 단순한 공표에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구조는 競爭指向的 經濟構造, 즉 利潤極大化를 추구하는 상당수의 독자적 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수의 기업이 私有化되고 난 이후에 價格을 自律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東歐國家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企業私有化 혹은 民營化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서, 그 전제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價格自律化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資產을 評價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유화는 가격자유화의 전제조건이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이 문제는 體制轉換 過程에 대한 적절한 時間管理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거에 가격을 자유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價格統制體制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부문이나 제품에 대한 가격은 國家管理下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對外貿易과 관련한 價格政策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커다란 問題들이다.

다. 經濟的 構造調整 段階

어떠한 體制統合 方法을 택하더라도 經濟的 構造調整 段階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며 이러한 調整過程에는 時間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自律化 過程이 짧을수록 構造調整에 소요되는 時間도 단축될 것이다. 즉, 일거에 가격자율화가 실현될 경우 점진적 자율화 방식보다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간도 짧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調整費用(산업생산 수준의 하락)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自律化過程이 漸進的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第2段階와 第3段階의 작업이 部分的으로 同時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構造調整 過程에 있어서는 健全한 安定化政策이 필요하다. 과거의 計劃經濟體制下에서는 전형적으로 생산력에 비하여 過剩通貨供給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가격자율화 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傳統的인 安定化政策에 따르면 緊縮通貨政策이 필요하고, 이때는 金利上昇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私有化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서는 대개 발달된 시장경제체제에서보다도 높은 利子率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영기업들이나 가격통제가 존재하는 부문의 생산자들은 利子率 變化에 대해서 시장경제체제의 일반적인 기업들과 같은 通常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中央銀行이 훨씬 강한 시그널을 보내야만 중앙은행이 바라는 경제행위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表 II-1>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및 헝가리의 經濟體制 轉換 後 通貨量, 利子率 및 物價水準의 變化를 보면 통화증발로 인해 폭발적인 물가상승이 있게 되고 이에 따라 中央銀行 金利도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構造調整이 시작되기 전에 第1段階와 第2段階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대개 私有化 過程의 완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부분적으로는 價格自律化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第2段階 작업이 마무리되기 以前에 構造調整이 시작된다.

〈表 II-1〉 東歐 3國의 通貨供給, 利子率 및 物價 現況

(單位：10億自國通貨, %)

		1987	1988	1989	1990	1991
체코 슬로 바키 아	總 通 貨	474.62	529.36	554.42	550.65	697.74
	預 金 金 利	2.64	2.66	2.48	2.83	8.11
	物價上昇率 ¹⁾	0.1	0.1	1.4	10.0	57.8
폴 란 드	總 通 貨	7,416	12,110	74,433	96,334	..
	貸 出 金 利	12.0	16.7	64.0	101.4	..
	物價上昇率 ¹⁾	25.2	60.2	251.1	585.8	70.3
헝 가 리	總 通 貨	594.3	612.8	706.2	912.9	..
	公 定 割 引 率	10.0	10.5	14.0	20.0	..
	物價上昇率 ¹⁾	8.2	16.3	17.0	28.2	..

註：1) 消費者物價上昇率(1985=100).

資料：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1992, pp. 178~212.

2. 體制統合 5段階論

위에서 언급된 3段階 體制統合 過程을 독일이 통일된 現時點에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細分化하는 것은 獨逸統一 過程에 대한 분석은 물론 南北韓 統一計劃의 樹立에 보다 유용하리라 본다.

3段階 중의 첫번째 過程인 市場經濟體制的 制度的 準備段階를 좀더 細分化시키고 두번째 段階인 價格自律化 段階의 意味도 좀더 擴大함으로써 그 다음 5段階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가. 制度的 準備 第1段階：市場經濟制度的 基本的 量 確立

이 단계에서는 市場經濟制度的 基本前提인 私有財產權, 會社法,

銀行法, 競爭法(혹은 公正去來法) 등의 法制度 確立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吸收統合되는 경우(獨逸 통일과 미래 한반도통일의 경우) 이 단계는 계획경제체제를 시행하던 쪽이 시장경제체제를 시행하던 쪽의 법체제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간단히 매듭지어 질 수 있다.

나. 制度的 準備 第2段階: 統合過程을 위한 限時的 特別法 制定

다음 단계로, 實質的 統合이 이루어지기 以前에 統合過程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統合過程에서만 有效한 限時的 法律이 제정되어야 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 國家所有企業이 民營化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民營化法,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가장 지배적인 소유형태였던 國家所有 形態의 財産을 어떻게 처분 혹은 새로운 통합정부에 이양해야 하는지에 관한 國有財産處理法, 양 체제의 通貨를 어떤 比率로 交換할 것인지 또 通貨制度가 어떠한 방식으로 統合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通貨統合法, 그 밖에 年金法, 勞動關係法, 財政調達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法制定 作業은 실질적으로 統合節次 및 過程을 구상하는 일이며 그 경제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5段階의 統合過程 中 가장 重要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體制統合의 第1段階: 體制統合

體制統合은 경우에 따라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衝擊療法)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漸進主義 方法) 이루어질 수도 있다.

衝擊療法을 이용할 경우 體制統合은 前段階에서 미리 준비되어진 價格自律化 方案, 通貨統合法, 企業民營化法, 國境撤廢, 土地分配法 등의 시행시기를 선포하고 실행시킴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과정을 끝낼 수 있다.

漸進主義 方法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諸法令들의 시행시기, 기간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해 많은 研究檢討가 필요하다.

라. 體制統合의 第2段階: 行政 및 經濟組織의 擴大

市場經濟體制로 새로이 흡수된 지역에 기존 行政 및 經濟組織(내무행정, 세무행정, 은행제도 등)이 확대되어 經濟·社會活動을 뒷받침해야 한다. 행정 및 경제조직의 확대방안은 제도적 준비 第2段階에서 마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확대 자체는 통합과정이 시작된 이후에나 가능하며 이에선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行政 및 經濟組織의 擴大는 일반적으로 產業構造調整 段階와 병행하게 된다.

마. 產業構造調整 段階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시장경제체제에 새로이 흡수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金融, 財政, 勞動政策 및 產業構造調整政策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수준이 타지역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政策的 配慮가 있어야 한다.

3. 體制統合 5段階論과 獨逸統一 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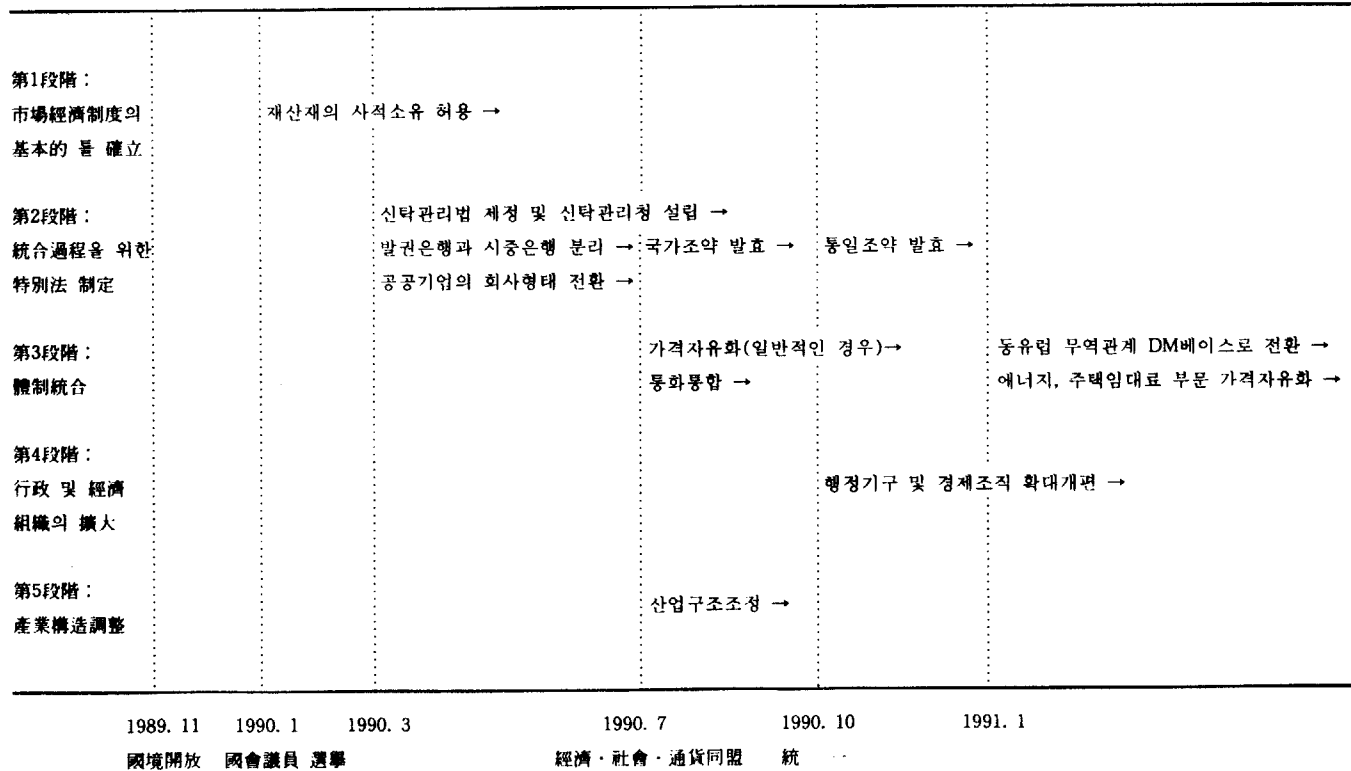
舊東西獨 經濟體制 統合過程의 중요한 政治·經濟的 결정이나 합의를 年代別로 정리하면 <表 II-2>와 같다.

舊東西獨 統合過程의 特徵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짧은 기간 내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衝擊療法을 택하였다.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制度的 準備段階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제적得失을 고려한 통합을 준비하지 못했다. 둘째,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國境開放이 먼저 이루어져 勞動力의 自由로운 移動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동독지역 노동자들의 賃金上昇 速度가 生産性增

(表 II-2) 獨逸統一 過程의 主要事件 年代表

1985. 3.11	구소련,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 피선
1989. 5. 2	헝가리와 구서독간의 국경개방, 구동독 난민을 구서독으로 보냄
1989.10.18	호네커 실각
1989.11. 9	구동서독, 양국간 국경개방
1989.12.20	구동서독 정부간에 계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 설립
1990. 1.12	구동독, 생산재의 개인소유 허용
1990. 1.25	구동독, 영업행위의 자유 및 합작기업(joint venture)의 설립 허용
1990. 2. 7	구서독, 구동독에 대해 단일통화권 설립 제안
1990. 3. 1	신탁관리청 설립(제1차 신탁관리청법)
1990. 3. 6	구동독, 발권은행과 일반시중은행의 분리, 민간은행 설립 허용
1990. 3. 7	구동독, 공공기업(VEB : volkseigene Betrieb)을 민간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형태로 전환. 1972년에 공유화했던 소규모 개인기업을 복귀시킴
1990. 3.18	구동독, 국회의원 자유선거(Volkskammer)
1990. 5. 5	'2+4회담' 시작 (구동독, 구서독, 미국, 영국, 프랑스, 구소련)
1990. 5.16	구서독, 연방 및 각 州는 1,150억DM의 '독일통일기금' 설치에 합의
1990. 5.18	구동서독, '경제·사회·통화공동체'(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형성을 위한 국가조약(Staatsvertrag)에 조인 → 1990년 7월 1일부로 유효
1990. 6.17	구동독의회, 제2차 신탁관리청법 통과 → 1990년 7월 1일부로 유효. 구동독, 헌법에서 노동권 삭제
1990. 6.22	구동독, 가격통제기구를 해체
1990. 7. 1	구동서독간 '경제·사회·통화공동체' 조약 효력 발생
1990. 7. 2	구동서독, 통화교환
1990. 7.16	구서독정부, 고르바초프로부터 독일 통일에 대한 동의 획득
1990. 7.22	구동독의회, 행정체제 개편('州'단위 새로 도입)
1990. 8.31	구동서독, 통일협약조인 → 1990년 10월 3일부로 유효
1990. 9.12	'2+4회담' 종결
1990.10.14	구동독, 주의회선거 실시
1990.12. 2	통일독일, 연방의회선거 실시

[圖 II-1] 統合 5段階와 舊東獨 經濟體制의 主要 轉換過程



大 速度보다 훨씬 옷도는 추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셋째, 通貨統合時 임금이나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에 대한 統合比率은 경제적 고려보다 政治的 考慮에 의하여 1:1로 정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圖 II-1]과 같은 5段階 統合過程에 비추어 본다면, 第2段階인 制度的 整備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第3段階인 體制統合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段階인 産業構造調整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第4段階인 行政機構 및 經濟組織의 擴大 改編이 시작되어 産業構造調整이 行政機構나 其他 經濟組織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 衝擊療法과 漸進療法

가. 衝擊療法

일반적으로 衝擊療法이란 轉換過程이 一舉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衝擊療法을 찬성하는 論據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동구의 경우 체제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들 국가가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에 내려진 것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과거에 計劃經濟에 市場要因을 接木시키고자 시도한 바 있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위기와 미온적인 정책수단 때문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果敢한 改革政策을 통하여 단기적 성과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實質所得의 過渡期的인 下落을 누구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政治的 不安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衝擊療法을 지지하는 견해에 따르면, 漸進的인 自律化方式을 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부의 體制轉換 過程에 대한 管理가 요구되며, 이때 經濟的 混亂이 政府의 誤導된 調整(wrong adjustment)으로 인하여 증폭되며 그 결과 조정과정의 연장과 追加費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는 자들은, 적절한 目標을 설정하고 이를 적절한 政策手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政府의 能力을 의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產業政策도 반대한다.

나. 漸進療法

漸進主義的 方法이란 各 段階의 統合過程이 어느 정도의 時間을 두고 段階別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또한 價格自律化 역시 漸進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價格自律化 期間中 價格安定化政策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 市場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價格統制와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對外貿易에 대한 制限은 체제 전환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점진적 전략을 지지하는 자들은,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체제전환이 지향하는 窮極的 目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人當 所得의 減少가 가능한 한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은,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체제전환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들은 衝擊療法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결국은 국민들이 體制轉換 過程 自體를 拒否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급격한 소득감소는 결국 경제의 脫工業化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成長率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5. 舊東西獨 經濟統合과 東유럽 體制轉換 過程의 示唆點

東유럽에서는 多樣한 形態의 體制轉換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衝擊療法과 漸進療法 중 어느 것이 有利的한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결론이 이론적 논쟁에서 도출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부합되는 普遍妥當한 方式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가. 個別段階의 成熟期間

極端的인 衝擊療法에 의한 體制轉換에 있어서도 개별단계가 성숙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총격요법이 실현된 극단적인 예는 舊東獨으로서 이보다 급속히 체제전환이 진행된 예는 찾기 어렵다. 轉換過程의 각 단계를 舊東獨에 적용시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第1段階에서 별도의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法律은 구서독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구동독이 구서독에 통합됨으로써 최소한 연방 차원에서는 새로운 制度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統獨 以前이나 以後에도 聯邦政府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법률뿐만 아니라 行政官僚들도 輸入되었다. 第3段階의 自律化 措置는 일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가격이나 대외가격을 포함한 모든 價格이 自律化되었다(주택임대료, 에너지 가격 등 다소의 예외는 있음). 관세나 쿼터제 어느 것에 의해서도 保護貿易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9년의 국경개방 이후 1990년의 3월선거가 있기 전까지 당시 社會主義 政權의 조치들은 미온적이었으며 뚜렷한 성과도 보지 못했고 舊東獨에서의 體制轉換 過程은 1990년의 3月選舉 以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 후 2개월이 경과하여 舊東西獨間 條約에 따라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法的裝置가 마련되었고 市場經濟를 목표로 한 基本法이 나오게 되었다. 1990년 7월까지의 市場經濟制度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法律들이 제정되었고 ‘經濟·社會·通貨同盟’이 결성됨으로써 선거 이후 불과 4個月만에 第3段階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새로운 制度의 形成過

程이 마무리된 것은 결코 아니다. 第2段階에서 수립되어야 할 法律制度들 중 특히 土地私有化法, 民營化法, 勞動法, 年金法 등의 일부 조항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東獨地域의 經濟活性化가 큰 진척을 보지는 못했다. 동독지역의 경우 價格自律化는 大規模 民營化作業이 시작되기도 전에 실시되었다. 물론 민영화 담당기구로서 信託管理廳이 동독지역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었으며 合作投資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法律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信託管理廳은 1990년 10월에야 비로소 大規模 民營化作業에 착수하였고 1993년 2월 말 현재 新塔관리청을 통한 企業民營化가 80% 정도 진척되었으므로 이 과정에 2年 以上이 소요된 셈이다. 構造調整 段階(第5段階)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나 이 체제전환 과정이 언제 종료될는지 현재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우며 아마도 1989년부터 계산하여 10年 以上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獨逸에서 衝擊療法에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漸進的 接近方法을 취할 경우 훨씬 長期間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 產業生産 減少期間 및 減少程度의 關係

產業生産의 減少期間과 減少程度 사이에는 대략적이거나 一定한 逆關係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東歐國家들은 이제 市場經濟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나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개별국가의 歷史的,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與件上 市場經濟를 도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이 가장 많이 진척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이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人種紛糾 問題가 없었다. 폴란드의 경우 정부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法的問題나 國境問題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체제전환 작업이 상대적으로 早期에 시작되었다는 의미

에서 흥미로운 경우이다. 헝가리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實驗한 傳統이 있었고 체제전환에 있어서 漸進主義的 方式을 채택한 반면에 폴란드의 경우는 衝擊療法을 도입하였다²⁾.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을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체코공화국은 衝擊療法을 택한 반면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보다 漸進的인 方式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방식의 차이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시킨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主要 論爭은 體制轉換의 最適期間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러한 논쟁에서 經濟的 要因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多元的 經濟構造를 갖고 있고 독일에 인접해 있는 체코공화국과 주로 방위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은 體制轉換의 最適經路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가격경쟁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방위산업 등에서의 가격자율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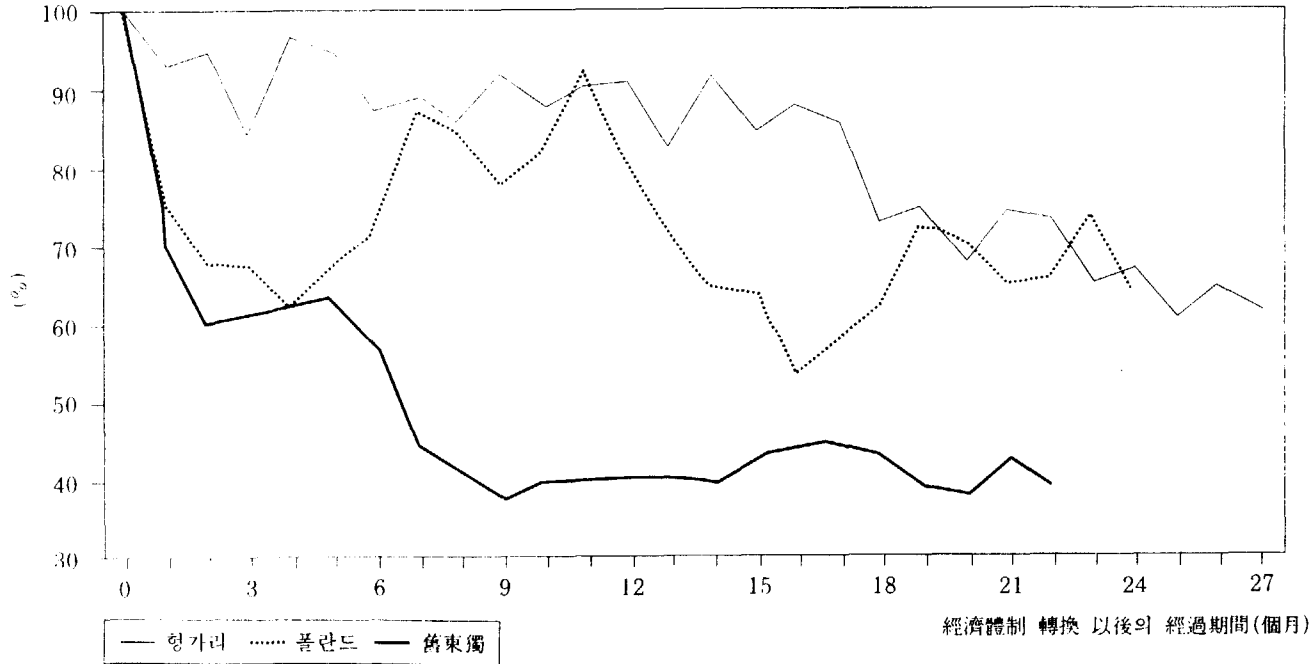
政治發展의 관점에서 볼 때 발틱3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은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複雜한 양상을 띠고 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알바니아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獨立國家聯合에서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東歐의 경험에서 결론을 도출해 보기 위해 가장 유리한 體制轉換 候補國인 폴란드와 헝가리를 舊東獨과 비교하면 [圖 II-2]와 같다. 폴란드의 경우 1990년 초 40%에 달하는 通貨의 平價切下에도 불구하고

2) 洪裕洙, 『東歐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정책연구 92-1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p. 81~124.

3) J. Charap and K. Dyba, "Economic Transformation in Czechoslovakia," Osteuropa-Wirtschaft, 91/1, 1991, pp. 39~46.

[圖 II-2] 헝가리, 폴란드, 舊東獨의 經濟體制 轉換 後 産業生産水準의 變化



註：기준시점은 헝가리 1989년 10월, 폴란드 1990년 1월, 구동독 1990년 7월 등 각국의 경제체제 전환시점이며, 기준시점 (경제체제 전환시점) 직전의 산업생산을 100%로 보았을 때 각 시점의 산업생산수준을 나타냄.

資料：독일 HWWA연구소 Dr. M. Krakowsky의 기초자료에 의거 자체작성함.

하고 産業生産이 크게 減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감소는 ‘經濟·社會·通貨同盟’以後의 東獨地域보다는 덜 심각한 것이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산업생산 감소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처음 몇 개월 동안 10%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초기의 국별 생산감소 격차는 체제전환이 진전되면서 크게 완화되었다. 産業生産의 이러한 全般的 減少現象은 生産水準의 減少期間과 減少程度 사이에 逆關係가 존재한다는 理論的 假說에 부합된다. 東獨地域에서의 極端的인 衝擊療法은 급격한 생산감소를 유발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3년에는 생산량 증대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충격요법은 덜 급격한 것이었고 생산감소 역시 완만하였던 반면에 아직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헝가리의 경우 漸進的 接近方式에 따라 생산감소가 매우 완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감소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 體制轉換 方法의 自由選擇 制約

각 나라의 歷史的, 政治的 및 經濟的 與件 때문에 漸進主義 方式과 衝擊療法間의 自由로운 選擇은 불가능하다.

생산량의 감소기간과 감소정도 사이에 역관계가 존재한다는 앞의 假說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衝擊療法을 택할 경우 産業生産과 1人當 所得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極端的인 경우, 국민의 物理的 生存을 위협할 수준이어서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생산감소가 이러한 수준까지 악화될 경우 정책은 보다 漸進主義的 樣相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國民生産이 減少하면 國民 個個人의 消費水準도 전반적으로 下落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제무역과 자본교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中·短期的으로는 생산과 소비수준이 항상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資本流入이 있을 경우 消費는 生産을 超過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統一 後 西獨地域 및 東獨地域에서 모두 높은 消費水準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海外로부터 資本을 流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獨立國家聯合의 경우에는 生産 및 소비의 대규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독지역에서와 같은 처방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독일과 같은 極端的 衝擊療法은 現實性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틱3國의 경우는 새로운 民族的 同質性을 모색하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政治的인 이유로 制度的 準備段階에서 구동독과 같은 외국(구서독)의 法的制度를 도입하는 것은, 비록 경제체제 전환과정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⁴⁾.

歷史的인 理由로 인해, 企業家的 行爲의 危險을 수용할 수 있는 國民의 能力과 意志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私經濟部門의 經濟行爲에 대한 수용의지 역시 국가마다 다르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國民의 높은 適應力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하고 이러한 ‘個人的 適應過程’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私有化過程의 成果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⁵⁾.

現實的으로 體制轉換 過程에서 선택 가능한 代案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衝擊療法에서 漸進主義的 方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選擇의 幅이 극히 制限的이고 독일에서 채택된 바와 같은 極端的인 衝擊療法이 東歐國家들에 적용되기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라. 體制統合과 體制轉換의 區分

體制統合과 體制轉換은 區分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計劃經濟體制

4) K. von Delhaes, "Die Unabhängigkeit der baltischen Länder," *Osteuropa-Wirtschaft*, 92/1, 1992, p. 93.

5) Krakowsky, *op. cit.*, p. 14.

下의 한 나라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지닌 두 나라가 經濟統合을 이루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體制轉換 方法上 選擇의 幅도 훨씬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舊東西獨間에 人口移動에 대한 물리적 장애요인이 제거되자 구동독에서 구서독으로 一方的인 勞動力 流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동독의 경제여건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한 이러한 大規模 人口流入 現象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舊東獨이 衝擊療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대안으로서 舊西獨이 國境을 封鎖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는 독일국민이 수용할 수도 없고 바람직스럽지도 않은 대안이었을 것이다.

東獨地域의 價格自律化는 ‘經濟·社會·通貨同盟’ 이후 즉시 추진되었다.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도입하고 일부 산업에서 가격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상품이동이 자유로운 交易財의 경우 불가능한 것이었다.

效率적인 國境統制가 불가능하다면 두 개의 通貨地域을 설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서로 다른 통화단위로 급료를 지불하고 대외교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換率메커니즘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換率메커니즘에 의존하여 轉換過程이 遲延된다면 人口移動은 실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通貨統合을 이루었기 때문에 實際的인 人口移動 規模가 당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든 분단국가에서 漸進的인 接近方式을 취하는 경우에는 두 나라간의 勞動力 移動을 制限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경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경은 두 나라가 共同政府를 갖고 共同選舉를 치를 경우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 體制統合의 經濟的 影響

經濟統合時 統合을 主導하는 나라(구서독이나 남한)에 미치는 統合의 經濟的 影響은 매우 크고 否定的일 수 있다.

統一이 舊西獨의 國際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효과는 통일 직후 西獨地域에서의 投資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赤字財政을 통하여 東獨地域에 大規模 移轉支出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따른 需要의 增加를 東獨地域 企業이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다 동독지역 소비자들이 서독지역 제품을 선호함으로써 서독지역에서 特需現象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西獨地域 製造業의 稼動率은 1990년에 90%에 육박했으며 生産力 增大을 위한 投資도 크게 증가하였다.

〈表 II-3〉 西獨地域의 製造業 稼動率

(單位: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¹⁾
稼動率	84.1	83.8	86.1	88.3	89.4	87.3	84.3

註: 1) 1992년은 9월까지의 평균임.

資料: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 Wege- Risiken*, 91/92, November 1991, p. 83.

獨逸政府의 大規模 赤字 財政支出은 實質金利 上昇과 資本費用 增加를 초래했으며 특히 자본비용은 稅收增大에 따른 높은 擔稅率로 인해 더욱 증가하였다.

구동독 및 동구국가들이 개방되면서 이러한 나라들에 거주하던 독일인들이 西獨地域으로 대거 流入되었으며 그 規模는 1989~90년간 매년 70만명 이상을 헤아렸다. 이는 勞動供給의 大規模 增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

면 肯定的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勞動力의 質이 수요구조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의 勞動力은 異質的인 經濟體制下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예를 들면 동독지역의 행정기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서독지역의 행정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再教育이 필요한 것처럼 대부분 낡은 기계를 작동시켜 온 동독지역의 근로자들도 새로운 技能教育을 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規勞働者의 教育을 통해 기존 勞動力 需給上의 乖離가 해소된다면 앞으로 勞働供給 不足現象은 상당히 解消될 수 있을 것이다.

中期的으로 볼 때 신규인력과 노동자의 유입현상은 기존의 賃金上昇 壓力을 緩和시킬 것이다. 1989년 이후 西獨地域에서는 賃金上昇이 加速化되었고 이를 生産性 向上으로 흡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賃金上昇 要因의 하나로서 統獨을 들 수 있는데, 需要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利潤도 증가하여 生産능력의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勞組의 힘이 강화되었다. 앞으로 東獨地域에서의 높은 失業으로 인해 西獨地域에 대한 勞動力의 流入이 지속되어 賃金上昇率은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서독지역에 대한 노동력 유입은 임금상승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가에 불리한 勞働關聯 規定들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肯定的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統獨에 따른 가장 심각한 後遺症의 하나는 獨逸의 財政赤字이다. 현단계에서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다분히 인위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統獨의 영향을 西獨地域에 국한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GN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西獨地域의 歲入·歲出 規模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모두 急激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⁶⁾. 東獨地域에 대한 大規模

6) 자세한 내용은 第Ⅶ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移轉支出에 따른 큰 규모의 豫算赤字가 가까운 장래에 현저히 감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大規模 財政赤字를 계속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租稅負擔을 增加시키는 방안과 支出을 減少시키는 방안으로는 財政赤字를 부분적으로 메울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적자는 당분간 큰 규모로 유지될 것이고 이는 西獨地域 經濟에 커다란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舊東西獨問의 國境開放과 東歐의 與件變化 및 單一유럽市場의 形成에 따라 西獨地域에서도 間接資本에 대한 新規需要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서독지역간 신규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수요, 즉 輸送需要가 급증하고 있고 이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公共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미 大規模 財政赤字를 경험하고 있는 西獨地域으로서 間接資本에 대한 新規需要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러한 서독지역과는 달리 間接資本에 대한 需要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국민의 상당수를 재정지원할 필요도 없는 경쟁상대국들을 고려할 때, 서독지역은 실질적으로 間接資本의 質에서 유지해 왔던 相對的 優位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⁷⁾.

7) Krakowski, *op. cit.*, p. 22.

Ⅲ. 通貨統合

1. 通貨統合의 背景

1989년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인접국경을 개방한 데 이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舊東獨 住民의 舊西獨 移住는 절정에 달했다. 1989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舊東獨 勞働人口의 약 2.4%에 달하는 23만 4,000명이 구서독으로 이주하였고 이러한 大規模 移住趨勢는 1990년 3월의 구동독 총선 때까지 지속되었다.

舊東獨 移住民의 急增은 구동서독 정부 모두에게 危機感을 안겨 주었다. 舊東獨에서는 이주민의 대부분이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청장년층이었기 때문에 勞動力 喪失에 따른 경제적 공백이 초래되었으며 구동독 정부는 經濟 空洞化 및 崩壞 威脅에 따른 體制危機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舊西獨에서는 주택부족, 실업자보 험지출부담의 증대 및 기타 복잡한 社會問題가 야기되었으며 이같은 사회 경제적 불안은 1990년 12월의 총선을 앞둔 「콜」政府에 政治的 負擔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兩獨 政府는 구동독인의 大量移住 問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早速한 通貨統合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한스 모드로프」 당시 동독 수상은 1990년 2월 1일 양국간 ‘通貨同盟’ 결성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시 서독 재무부 장관은 다음 날 바로 DM貨를 舊東獨의 公式通貨로 지정하여 구동독에 유통시키자고 제안했다. 곧이어 2월 6일에는 구서독 「콜」수상이 통화통합을 위한 양독간의 通貨會談 개최를 제의하였고 2월 19일에는 ‘通貨全擔 實務委員會’가 가동되었다.

2. 通貨交換 比率

通貨單一化의 가장 큰 문제는 兩國通貨의 交換比率이었다. 이는 통화교환 비율 여하에 따라 통합 후 東獨地域 住民의 生活水準과 東獨地域 企業의 國際競爭力, 그리고 西獨地域이 負擔해야 할 經濟的 規模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通貨交換 比率 問題에 대해 舊西獨 社民黨은 당시 西獨 自由市場에서의 實勢換率에 가까운 1:5의 비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동독지역 주민의 西獨地域 移住를 막을 길이 없다는 반대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동독지역 주민에게 유리한 1:3의 비율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때 새로운 政治的 變數, 즉 구동독 최초의 자유총선 10일 전에 실시된 輿論調査에서 「콜」수상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당보다 떨어지자 「콜」수상은 總選 3日前 舊東獨 住民에게 그들의 少額貯蓄에 대해 1:1의 交換比率을 적용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1:1 교환비율의 채택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 「콜」수상이 지지하는 구동독의 獨逸聯盟이 總選에서 壓勝을 거둘 수 있었다.

반면 舊西獨 聯邦銀行과 美國 및 유럽諸國은 1:1 交換時 DM貨의 增發에 따른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金利上昇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世界經濟에 미칠 惡影響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獨逸聯邦銀行은 1:2 交換을 골자로 하는 獨自的 通貨統合案을 마련하였다. 이 통화교환 비율은 인플레이션의 防止에 主안점을 두고 通貨方程式($MV=PQ$)을 이용해 산출한 것으로서, DM貨로 평가한 구동독의 잠재적 GNP(구서독의 10~13%)를 감안한 東獨地域의 DM貨 需要($M=PQ/V$)와 東獨마르크 通貨量 「스톡」(stock)의 比率에 따라 平均 交換比率을 산정한 것이다.

이러한 독일연방은행안이 발표되자 구동독에서는 「콜」수상의 虛僞公約을 비난하는 시위가 잇달았고 구동독 신정부에 대한 信賴度가

크게 실추되었다. 이에 「콜」수상은 양독의 조기통일을 지지하는 구 동독 保守右派를 지원하기 위해 1990년 4월 3일 1:1 等價交換을 골자로 하는 舊西獨 政府案을 확정하였다. 양독 通貨實務委員會는 이 구서독 정부안을 기초로 最終案에 합의하였고 이는 1990년 7월 1일의 ‘經濟·社會·通貨同盟’ 발효와 함께 시행되었다.

3. 最終案

1:1 交換은 임금, 봉급, 장학금, 연금, 임대료, 부양수당 등 反復的 定期的 所得과 個人的 現金 및 預金에 대해 적용하며, 개인의 현금 및 예금의 경우 14歲 以下는 최고 2,000DM, 15~59歲는 최고 4,000DM, 그리고 60歲 以上은 최고 6,000DM의 금액에 한한다.

1:2 交換은 채권 및 채무, 그리고 개인의 현금 및 예금 중, 上記 限度 超過額, 生命保險 및 民間年金, 保險會社의 支給額, 그리고 非 居住者의 1989년 12월 31일 以前 銀行預託金에 대해 적용한다.

1:3 交換은 非居住者의 1990년 1월 1일 以後 銀行預託金에 대해 적용한다.

4. 通貨統合에 대한 評價

통화통합 과정에서 一時的 統合이 초래할 經濟的 衝擊을 우려하여 舊西獨에서도 처음에는 段階的, 漸進的 通貨統合論이 우세하였으나, 舊東獨 住民들이 DM貨의 獲得을 위해 구서독으로 집단이동함에 따라 구동독 경제 및 사회체제의 급속한 붕괴가 우려된 데다 구서독의 입장에서조차 統一에 有利한 國際與件의 造成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一時的 通貨統合 方案을 채택하였다.

가. 通貨統合의 準據

國際政治的 側面에서 볼 때, 一時的 通貨統合은 獨逸統一을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國內政治的으로는 동독지역 주민에게 西獨地域으로 移住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롭지 않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通貨統合은 그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準據(norm)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通貨交換 比率이 東獨地域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감퇴시키지 않을 것 둘째, 통화교환을 통해 동독지역 경제에 적절한 수준의 流動性, 즉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것 셋째, 이를 통해 東獨地域 住民들에게 資本主義體制下에 統一된 獨逸에서의 經濟生活을 출발함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通貨資産을 保障해 줄 것¹⁾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通貨交換 比率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더욱이 현금, 예금, 임금, 연금, 부채 등 通貨로 표시되는 모든 종류의 財産價値나 要求手段을 唯一한 比率로 交換하면서 이 세 가지 準據를 同時에 充足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最終案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個別 財産價値나 要求別로 서로 다른 通貨交換 比率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1 교환 비율을 주창한 舊西獨 聯邦政府와 동독마르크화에 훨씬 불리한 교환 비율을 주창한 獨逸聯邦銀行의 妥協에 의한 것이다.

전반적인 國際輿論은 이 타협안에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이는 1990년 초 암시장에서의 구동서독 통화교환 비율인 1:7에 비해 이

1) H.-W. Sinn and G. Sinn,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91, p. 35.

타협안이 東獨마크貨에 너무 有利하기 때문에 東獨地域 住民들이 높은 財産增殖을 실현, 需要爆發로 인한 인플레이션 誘發이 초래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결국 現實化되지 않았고 단지 통화통합 후 첫달에만 구동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구서독 제품에 대한 수요로 대체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뿐 統合元年인 1990년의 年平均 物價上昇率은 2.8%로서²⁾ 비교적 완만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후에도 뚜렷한 인플레이션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西獨地域 經濟가 統一 後 미약하나마 경기부흥을 누리는 동안 東獨地域 經濟는 1989년 말에서 1990년 말에 이르는 1년간 産業生産 水準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근대산업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작금의 東獨地域 景氣沈滯와 西獨地域의 微弱한 인플레이션으로 미루어 보아 1:1 交換比率이 東獨地域 住民들에게 높은 財産增殖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가 대두하게 된 것은 舊東西獨 通貨의 購買力에 대한 信賴性 있는 比較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은 구동서독 통화의 暗市場 交換比率(단지 구동독이 흡수통합되기 직전의 투기적 전망만으로 추정된)을 감안하였는데, 이는 구동서독 통화의 實質的인 購買力 比率과 상당한 乖離를 보이는 것이었다.

나. 通貨統合時 通貨交換 比率 決定의 理論的 背景

1) 購買力 評價說

購買力 評價說이란, 두 국가가 존재할 때 각국 통화가 갖는 각국 내에서의 購買力間의 比率에 따라 두 국가간의 均衡換率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品目바스켓에 어떤 製品(또는 서비스)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均衡換率이 달라지게 되고, 價格만 비교하므로

2)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e*, Feb. 1991, p. 35.

두 국가간 製品의 質的 差異는 반영되지 않으며, 한 나라의 제품이 다른 국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제품은 바스켓에 포함될 수 없고, 생필품 등에 지원하는 政府補助金 등의 여부에 따라 製品의 價格構造가 달라지며 이러한 가격구조에 바탕을 둔 製品選好 構造에 따라 이루어지는 均衡換率이 購買力 評價를 歪曲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通貨方程式

通貨統合時 通貨의 流通速度(V)가 양국간에 같다고 보면, 通貨方程式($MV=PQ$)에 따라 適正通貨量(M)은 名目生産量($P \cdot Q$)에 比例하게 된다.

名目生産量を 각국의 자본스톡, 노동투입시간, 생산성 등을 감안·추정하여(또는 명목GNP를 그대로 사용하여) 適正通貨量の 比率를 산출하면 實際 通貨량과 비교된 交換比率이 결정된다. 예컨대, 두 국가간의 적정통화량 비율이 2:1이고 실제 통화량 비율이 1:3이면 교환비율은 1:6이 된다.

그러나 서로 異質的인 經濟體制를 지니는 두 국가의 통화가 통합될 때 양국간에 通貨量の 概念이 一致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M_1 또는 M_3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3) 裁定換率

裁定換率(arbitrage exchange rate)을 이용한 방안은 國際通貨(US\$ 등)를 매개로 통화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통화통합을 모색하는 兩國 通貨의 國際通貨에 대한 交換比率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 예컨대, A국 통화의 對US\$ 교환비율이 5:1, B국 통화의 對US\$ 교환비율이 2:1이라면 양국이 통화통합을 할 경우 A국 통화와 B국 통화의 교환비율은 2.5:1이 되어야 한다.

4) 生産性 比較

이 방안은 兩國 賃金勞働者들의 名目賃金 水準과 平均 勞動生産性을 비교하여 通貨交換 比率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B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의 2분의 1인데 A국 통화로 표시된 A국의 평균 명목임금 수준이 B국 통화로 표시된 B국 평균 명목임금 수준의 7분의 1이라면 A국 통화와 B국 통화는 3.5 : 1의 비율로 교환되어야만 양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 東獨地域 住民의 通貨資産價値 保障 觀點에서 본 通貨交換 比率

구동서독 통화의 暗市場 交換比率가 7 : 1 혹은 극단적인 경우 11 : 1로 나타날 때에도 구동서독 통화의 購買力 比率는 거의 1 : 1에 가까웠음이 밝혀지고 있다.

여러 기관들의 구동서독 통화의 구매력에 대한 비교는 물론 그 正確性에 문제가 있다. 우선 두 국가의 實質所得 水準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共通的인 製品바스켓을 찾는 데 문제가 있고, 舊東獨의 경우 1988년의 정부재정에서 기본생활품의 생산에 660억동독마르크의 補助金을 지급하고 사치품에는 430억동독마르크를 特別消費稅 형태로 부과함으로써³⁾ 製品의 價格構造가 舊西獨과 상당히 달랐고(예컨대, 구동독의 빵 가격은 구서독의 6분의 1, TV 가격은 3배임), 이러한 사치품에 속하는 제품의 종류가 구동서독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購買力 評價에 있어서 問題點은 존재하나 각 기관들은 <表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M貨와 東獨마르크貨의 購買力 比率를 100 : 88과 100 : 132 사이에서 비교적 큰 편차 없이 평가하고 있다. 100 : 88과 100 : 132의 算術平均은 100 : 110이 되는데

3) Statistisches Bundesamt, *DDR 1990; Zahlen und Fakten*, Wiesbaden, 1990.

(100동독마르크가 110DM의 구매력을 지님), 이에 비추어 볼 때 舊東獨 住民들이 通貨統合을 통해 더욱 큰 購買力을 보너스로 얻게 되었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통화통합에 즈음하여 구동독 주민들이 향유하던 구매력을 존속시킬 수 있는 통화교환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實際적으로 이루어진 交換比率, 즉 약 131동독마르크가 100DM로 교환된다는 것은 舊東獨 住民들이 統合 以前 東獨마르크貨로써 누리던 購買力 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表 III-1〉 舊東西獨 通貨의 購買力 比較

研究機關	購買力 ¹⁾	備 考
DIW 研究所	100 : 120	통합 후 동독지역의 예상바스켓으로 평가
	100 : 128	구동독 바스켓으로 평가
I f o 研究所	100 : 98	구동독 바스켓으로 평가
獨逸聯邦銀行	100 : 107	구동독 바스켓으로 평가
獨逸聯邦統計廳	100 : 132	구동독 바스켓으로 평가
	100 : 88	구서독 바스켓으로 평가

註 : 1) DM貨 : 동독마르크貨를 나타냄.

資料 : DIW, *Wochenbericht*, 90/12, 1990, p. 294; *Ibid.*, 90/32, 1990, pp. 446~450.

Ifo, *ifo Schnelldienst*, 90/13, 1990, pp. 24~26.

Statistisches Bundesamt, *Zahlen, Fakten, Trends; Extra 9/90-2*, 1990.

이러한 결과는 구동독인들이 통합 이전에 DM貨를 동독마르크貨보다 훨씬 가치 있는 통화로 인식하던 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되는데, 購買力 比較는 각각의 통화가 각각 唯一한, 그리고 一般的인 支拂手段이라는 假定下에서 그 통화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평균가치를 비교하는 것이고, 舊東西獨 通貨의 暗市場 交換比率⁴⁾은 두 통화에 대한 單純한 需要와 供給狀態만을 대변하므

로 相互 獨立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換率과 購買力의 比率이 전혀 獨立的이거나 矛盾的인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을 「발라사」(B. Balassa)는, 통상적으로 市場換率 이, 국제간에 거래되지 않는 內國財(대개 값싼 제품)를 거의 대변하지 않으므로 勞動生産性이 낮은 국가의 환율은 보통 自國通貨의 購買力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라. 企業競爭力 側面에서 본 通貨交換 比率의 評價

舊東獨 企業들의 國際競爭力을 감퇴시키지 않는 通貨統合 比率에 대해 聯邦經濟部 教授諮問團의 多數見解는 1:1을, 獨逸聯邦銀行과 聯邦經濟部는 1:2를 주장함으로써 의견이 대립되었다⁶⁾.

물론 어떠한 통화교환 비율이 적용되더라도 通貨統合 以後의 賃金水準은 長期的으로 勞使協商을 통해 새로운 均衡水準으로 收斂해 나갈 것이나 短期的으로는 1:1 交換比率이 통화통합을 전후한 舊東獨 勤勞者의 實質賃金水準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1:2 交換比率은 이러한 實質賃金이 統合 以前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책입안자들의 의견이 企業競爭力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賃金水準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企業의 國際競爭力 維持 次元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通貨交換 比率은 國際市場에서의 製品價格에도 영향을 미치나 통화교환 비율에 의해 이루어진 賃金水準의 變化는 크게 두 가지 經路(資本市

4) 구동서독 통화의 通貨交換 比率은 暗市場이 小規模이고 不法去來되고 있어서 通貨의 實際價値를 반영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

5) B. Balassa, "The Purchasing Power Parity Doctrine: A Reapprais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2, 1964.

6) Wissenschaftlicher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bietes in Deutschland, Gutachten vom 1987. 6. bis 1990. 3.*, Bonn: Otto Schwartz und Co., 1990; Sinn and Sinn, *op. cit.*, p. 46.

場과 勞動市場)로 企業競爭力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구서독 통화에 비해 低平價된 舊東獨 通貨의 交換比率은 舊東獨의 實質賃金 水準이 下落함을 의미하며, 이는 資本市場에서 舊東獨이 좋은 投資環境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는 요인이 된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舊東獨의 實質賃金 水準이 下落하면 舊東獨 勞動力の 舊西獨 移動을 억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 근로자일수록 더욱 강하기 때문에 舊東獨 企業의 競爭力을 侵害하는 요인이 된다.

統一條約에서 합의된 대로 1:1의 通貨交換(賃金の 경우)이 이루어짐으로써 統合 直後 東獨地域 勤勞者들의 賃金水準은 西獨地域 勤勞者의 약 3분의 1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東獨地域의 實質賃金 水準을 維持하게 하는 정도였다.

구서독 노동자들의 생산성의 약 3분의 1에 이르는 舊東獨 勞動者들의 生産性을 감안하면 1:1 交換比率은 舊東獨 企業의 生存을 威脅하지는 않는 수준이며 또 구동독 노동자들의 舊西獨 流入을 刺戟하지 않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즉, 生産物 單位當 勞動費用(임금수준/노동생산성)의 관점에서 볼 때 구동서독 기업의 생산물 단위당 노동비용은 同一한 水準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통합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이러한 1:1 交換比率이 예상과는 달리 競爭의 中立性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主要原因으로서는 東獨地域 勤勞者의 實質賃金이 1:1 交換 以後 統合 以前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 1:1 交換은 統合 以前의 舊東西獨 市場換率 1:5에 비해 舊東獨 通貨의 換率이 상당히 高平價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統合 以前의 平均換率이 東獨마르크貨當 0.23DM였기 때문에 수출품의 원가에 비추어 볼 때 實質賃금이 5배 정도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⁷⁾.

7) 이러한 문제점은, 「발라사」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동서독지역간의 商品交易이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交易되지 않던 勞動集約的 內國財도 交易되어

이러한 문제점은 통일 후 東獨地域 勞組의 強力한 賃金引上 要求로 인해 증폭되게 되었다. 1990년 후반기에 각 산업별로 勞使合議된 東獨地域 勤勞者의 賃金水準은 25~60%까지 인상된 규모였다. 동독지역 노조측의 목표는 임금수준이 1~2년 내에 서독지역 근로자 임금수준의 60% 정도를, 1995년까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다⁸⁾. 동독지역 근로자의 勞動生産性이 이러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1:1 交換比率과 그에 따른 賃金引上으로 야기된 동독지역 기업들의 國際競爭力 喪失은 必然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獨逸聯邦銀行의 권고 대로 通貨交換이 1:2의 비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제경쟁력 상실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는 유추할 수 없다. 만약 1:2의 비율로 통화통합이 이루어졌다면 통합 직후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實質賃金 水準은 서독지역 근로자들의 6분의 1 수준이 되었을 것인데, 이 경우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賃金引上 慾求는 더욱 강렬해져서 賃金上昇率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이 爆發的인 賃金費用 上昇을 막아 동독지역 기업의 생존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기술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우선 通貨統合을 拋棄하고 東西獨地域間에 自由貿易地帶(free trade area)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경우 동서독지역간의 變動換率制度는 두 지역경제의 인플레이션이나 그 밖의 변화로 인한 競爭力 喪失의 緩衝役割을 할 수 있다. 위의 방안이 政治的인 이유로 實現 不可能함에 비해 두번째 방안인 暫定的인 賃金上昇 制限은 政治·經濟的으로 實現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⁹⁾.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賃金上昇 抑制를 통한 低賃金이 동독지역 근로자의 西獨地域 流入을 刺戟한다는 勞組의 論理는 限界

감에 따라 다소 해결될 수도 있다.

8) 자세한 논의는 第V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이는 第IV章에서 從業員參與 모델과 관련하여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임금비용으로 인한 企業倒産은 失業을 의미하고 또 失業은 동독지역 노동력의 西獨地域 流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마. 인플레이션의 可能性에서 본 通貨統合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資本主義 國家와는 달리 통상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通貨超過(suppressed inflation : 抑壓인플레이션)’ 현상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실물경제부문보다 통화부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실물경제부문보다 통화부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도 政府가 法令에 의거 價格이나 利率을 統制하기 때문에 많은 통화유통량과 적은 상품공급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充足되지 않는 商品需要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通貨超過’라고 한다¹⁰⁾.

舊東獨에서도 예외 없이 大規模 ‘通貨超過’ 현상이 존재했는데, 1989년 M_3 개념(통화유통량과 저축성예금)에 해당하는 구동독의 總通貨量은 2,373억동독마르크였고 이는 당시 구동독 純通貨所得¹¹⁾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구서독의 경우 可處分國民所得 對 M_3 의 比率은 89.4%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동독의 通貨保有量(M_3) 2,373억동독마르크 중 1,497억동독마르크는 구서독 수준의 可處分所得 對 M_3 比率을 유지하기 위한 구동독의 M_3 규모이며 876억동독마르크가 ‘通貨超過’ 규모이다¹²⁾.

10) Z. Polanski, "Inflation and the Monetary System in Poland in the 1980s, and the Stabilization Program 1990," *Osteuropa-Wirtschaft*, 91/4, 1991, p. 343.

11) 이 개념이 OECD 국가들의 國民所得 概念에 비교될 수 있는 舊東獨의 唯一한 公式 國民所得 概念이다.

12) 舊東獨의 경우 貯蓄性預金도 要求拂預金の 형태로 이루어지며 요구불예금과 본원통화 이외에는 M_3 가 여타 예금(정기예금 등)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M_1 , M_2 , M_3 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舊西獨의 M_1 과 M_2 를 기준

(表 III-2) M₃와 可處分國民所得의 關係(1989)

(單位: 億東獨마르크, 億DM, 億원, %)

	舊 東 獨	舊 西 獨	韓 國
可處分所得 ¹⁾	1,675	14,038	1,276,059
M ₃	2,373	12,555	1,507,743
M ₃ /可處分所得	141.7	89.4	118.2

註: 1) 구동독은 순통화소득 기준임.

資料: Statistisches Bundesamt, DDR 1990; Zahlen und Fakten, Wiesbaden, 1990.

——, Statistisches Jahrbuch 1990 für die BRD, Wiesbaden, 1990.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3, p. 122.

韓國銀行, 『國民計定解說』, 통계편, 1991, p. 24.

通貨統合時 이 ‘通貨超過’ 현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統一條約에 의하면 東獨地域 주민이 年齡別로 相異한 最高限度의 通貨를 교환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독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한도를 모두 사용할 경우 2,373억동독마르크가 1,514억DM로 교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統一條約 規定에 의하면, 14세 이하에게는 최고 2,000DM, 15~59세에게는 최고 4,000DM, 그리고 60세 이상에게는 최고 6,000DM에 해당하는 東獨마르크貨나 要求拂預金을 1:1 交換比率로 DM貨와 교환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1990년 7월 1일 당시의 東獨地域 人口構造로 미루어 볼 때 655억DM의 通貨創出을 의미한다. 또한 이 限度를 超過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1 비율로 交換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373억동독마르크에서 655억동독마르크를 제하면 1,718억동독마르크이므로 DM貨로는 859억DM의 增加가 있게 된다. 東獨地域 非居住者의 1990년 1월 1일 이후 銀行預託金에 대해서는 1:3의 交換比率가 적용되는데, 그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小規模일 것으로

으로 通貨超過 規模를 추정하면 각각 1,835억동독마르크, 1,473억동독마르크 정도로서 M₃를 기준으로 한 통화초과 규모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가 된다.

추정할 수 있다. 655억DM와 859억DM의 합계인 1,514억DM는, 西獨地域 水準의 M_3 /可處分所得 關係를 維持하는 데 필요한 M_3 규모인 1,497억DM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通貨交換을 통해 실제로는 당초의 예상규모인 1,514억DM보다 300억DM 정도 超過發行되었는데 이는 獨逸聯邦銀行의 錯誤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착오는 독일연방은행이 통합 전에 일종의 은행성격을 가지던 舊東獨 對外貿易機構의 金融機關에 대한 債權을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통합 후에 이 대외무역기구의 은행성격이 없어지면서, 과거의 여타 은행에 대한 채권이 당시까지는 은행간 채권으로서 통화의 성격은 지니지 않았으나 통합 이후 비은행의 은행에 대한 채권이 되면서 通貨的 性格을 띠게 되었다¹³⁾. 그러나 이러한 착오 규모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준은 아니었는데, 300억DM는 동서독지역의 총 M_3 규모의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獨逸이 거의 완벽하게 인플레이션 危險을 最小化하는 通貨統合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綜合評價

임금, 연금 등과 같은 개인의 反復的, 定期的 所得에 대해서는 企業競爭力 保護라는 측면에서 2:1의 交換比率이, 東獨地域 住民에 대한 資産價値 保障이라는 관점에서 1:1의 交換比率이 옹호되었으나 通貨統合時 實際 交換比率은 1:1로 결정되었다.

民間保有 通貨資産 혹은 預金資産은 인플레이션 防止라는 측면에서 1.59:1, 그리고 東獨地域 住民의 購買力 保障이라는 측면에서 1:1이 옹호되었으나 實際 交換比率은 이를 절충하여, 연령별로 달리 적용되는 最高限度額까지는 1:1, 그리고 이를 超過하는 資産部分에 대해서는 2:1로 교환되었으며 全般的으로 볼 때 그 수준은

13) Sinn and Sinn, *op. cit.*, p. 53.

〈表 III-3〉所得 및 資産에 대한 세 가지 觀點에서 본 適正 通貨交換 比率과 通貨統合時의 實際 通貨交換 比率

		適正 通貨交換 比率			通貨統合時의 實際 交換比率
		東獨地域 獨逸人 資産의 價値保障	인플레이션 防止	企 業 競爭力	
流量 (flow)	임금·연금 등 개인의 반복적· 정기적 소득	1 : 1	—	2 : 1	1 : 1
貯量 (stock)	민간소유 통화 자산 혹은 예 금자산	1 : 1	1.59 : 1 ¹⁾	—	1.31 : 1 ²⁾
	채권 및 채무	—	—	2 : 1	2 : 1

註 : 1) 구동독의 통화보유량과, 구서독 수준의 가처분소득 對 M_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통화보유량의 비율임.

2) 구동독의 통화보유량과 그로부터 실제로 교환된 DM 규모의 비율임.
資料 : 자체 작성함.

1.31 : 1 정도였다.

債權 및 債務는 企業競爭力 保護라는 측면에서 2 : 1로 교환되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防止 및 東獨地域 住民의 購買力 保障이라는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시되지 않는다.

5. 結 語

通貨統合時 東獨마르크貨를 DM貨로 교환함에 있어서 각 소득 또는 자산별로 다른 交換比率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交換比率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보다 나은 經濟的 結果를 가져왔으리라고는 보기 힘들다. 債權 및 債務를 2 : 1, 그리고 民間所有 通貨資産을 1.31 : 1 정도의 비율로 교환한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임금 등 定期的 所得을 1 : 1로 교환한 것이 企業

競爭力 弱化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나, 그보다 낮은 교환비율을 택하였을 경우 東獨地域 住民들의 資産價値 保障이라는 측면에서 衡平性에 어긋날 뿐 아니라 東獨地域 勤勞者들의 實質賃金 水準이 西獨地域 勤勞者들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게 되어 賃金引上 壓力은 더욱 加速化되었을 것이다.

IV. 企業民營化 및 土地私有化

1. 獨逸 信託管理廳의 企業民營化 作業

가. 信託管理廳의 設立과 組織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은 企業의 民營化를 基本前提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作業의 進行에 따라 體制轉換의 成敗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東獨地域에서 이러한 과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信託管理廳(Treuhandanstalt)이다.

信託管理廳은 統獨 直前 舊東獨의 「드 마이지에르」(de Maiziere) 정부가 市場的 社會主義를 지향하기 위해 立법한 ‘信託管理廳法’에 기초하여 設立되었다. 1990년 6월 17일의 信託管理廳 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면 信託管理廳은 國有財產을 私有化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舊東獨 企業을 活性化시키며 이들 기업의 競爭力을 提高 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¹⁾. 9,000개 이상의 기업²⁾, 2만여개의 도· 소매업소, 7,500여개의 호텔과 음식점, 수천개의 약국, 서점 및 영화 관 등의 財産을 信託管理廳이 관리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약 400만

1) 統一條約에 따르면, 그 밖에 信託管理廳은 同 條約 第23條에 의거한 債務管理基金(Kreditabwicklungsfonds)이 1993년 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利子의 절반을 負擔해야 할 책임과 同 條約 第25條 第7節에 의거 동독지역 기업들 의 과거 채무가 ‘DM貨表示 開始 貸借對照表法’에 의해 DM화 단위로 확정 되어 질 때까지 이들 기업의 所有主로서 利子를 負擔해야 할 책임을 진다. 債務管理基金은 구동독 政府의 모든 債務, 外債費用, 동독중앙은행을 통해 구동독 政府가 맡은 擔保保證, 화폐통합으로 인해 은행이 떠맡아야 할 債務 減少額 등을 負擔시키기 위해 設立된 기금이다.

2) 이 企業數는 民營化의 進척에 따라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舊東獨 企業 들이 콤비나트(Kombinat : 企業組合) 위주로 構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콤비나트가 분할되어 民營化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企業數는 계속 늘어 나게 된다.

ha에 달하는 농지와 산림지 역시 信託管理廳의 관리하에 있으며 정당, 군대, 안기부(Staatssicherheit), 지방행정기구 등의 재산도 信託管理廳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약 410만명의 勞動者가 信託管理廳의 관리하에 놓여졌고 이는全體 勞動者의 약 45%에 해당한다.

信託管理廳은 ‘經濟·社會·通貨同盟’과 함께 西獨地域 財務部 관할의 한 機構로 편성되었으며 2,000여명의 직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대 신탁관리청장 「로베더」(Detlev Rohwedder)는 1991년 4월 2일 피살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브로이엘」(Birgit Breuel)이 임명되었다. 信託管理廳에 대한 監督은 聯邦財務部가 관장하되 業務는 經濟部 및 關聯 部署와 協議하여 추진하고 國會統制는 聯邦議會 豫算委員會 산하 信託管理廳 小委員會에서 행해진다.

‘經濟·社會·通貨同盟’ 직후 약 3개월간의 民營化 推進實績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信託管理 業務의 專門性和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 구서독으로부터 많은 신탁관리 전문가들을 고용했는데 이는 과거 신탁관리 업무를 맡았던 舊東獨人들은 市場經濟에 대한 知識과 經驗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統獨과 함께 15개 地方信託管理廳 廳長을 西獨地域 出身 經營者로 대체하였다.

信託管理廳은 베를린에 中央信託管理廳과 地方에 15개의 地方信託管理廳을 두고 있다. 地方信託管理廳은 1,500명 이하의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民營化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 5,400개의 기업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이에 반해 베를린의 中央信託管理廳은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大企業의 民營化를 담당하고 있으며 金融機關 및 百貨店도 그 업무영역에 속한다.

나. 信託管理廳의 民營化業務 推進 基本方向

信託管理廳의 國有企業 處理에 관한 基本方向은 民營化, 正常化(Sanierung), 廢業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當初의 基本方向은 國有企業 中 蘇生可能 企業과 蘇生不能 企業을 기업들의 대차대조표

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파악한 후 소생불능 기업은 파산시키고 즉시 민영화 가능한 기업은 민영화시키며 소생가능한 기업은 지원을 통해 정상화시킨 후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初期에는 시장경제질서의 조기정착과 신탁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민營化와 廢業에 치중하였으나 동독경제가 예상보다 대단히 악화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신탁관리청은 민영화와 함께 現在의 雇傭狀態를 유지할 수 있도록 企業을 正常化하는 지원방안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信託管理廳의 舊東獨企業 賣却에 대한 主要 基準은 賣却價格과 雇傭水準의 維持 및 投資計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기업매각에 대한 障礙要因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민營化의 加速化와 失業問題의 解決이기 때문에 負債引受와 環境淨化 條件은 신탁관리청이나 독일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매각조건에서 점차 제외시켰다.

다. 민營化 推進實績

信託管理廳은 동독지역의 민영화 대상기업 중 大企業들을 小單位 中小企業으로 계속 분리한 결과 민영화작업 출발시점인 1990년 7월 1일에 9,000여개이던 신탁관리청 관리기업은 1993년 2월 말 현재 3,000여개 늘어난 11,966개로 증가하였다.

신탁관리청에 따르면 1993년 2월 말 현재 11,966개 민營化 對象 企業 中 기업부문 매각건수 3,552건을 포함하여 총 5,669개 기업이 민營化되었고 1,232개 기업이 原所有者에게 歸屬되었으며 2,427개 기업이 破産處理되었는데, 1993년 말경 이러한 민영화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 2월 말 현재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으로 잔류하고 있는 기업은 2,334개로서 전체 민영화대상 기업의 20% 정도이다. 기업수로 볼 때 80% 정도의 민영화작업이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다.

〈表 IV-1〉 民營化 進陞現況(1993. 2)

(單位：個, %)

	企 業 數	比 重
民營化 對象 企業	11,966	100.0
민영화	5,669	47.4
(완전 민영화)	(5,117)	(90.3)
(부분 민영화)	(552)	(9.7)
원소유자에 귀속	1,232	10.3
지방공기업화	304	2.5
파산처분	2,427	20.3
(처리중)	(2,387)	(98.4)
(처리 완결)	(40)	(1.6)
잔류 신탁관리청 관리기업	2,334	19.5

資料 :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p. 30.

企業 以外의 民營化 實績으로는 1993년 2월 말 현재 2만 7,236ha의 農地와 1,839ha의 林野가 私有化되었다.

신탁관리청에 따르면, 1993년 말 이후에 잔류하게 될 일부 不實企業들은 1992년 5월 말에 별도의 사법인으로 설립된 經營KG(management KG)에서 계속 해당 기업의 健實化 및 整備作業(Sanierung)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정한 단계에 올라선 기업들을 계속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탁관리청은 이러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1,756억DM의 투자를 약속받고 근로자 142만 3,668명의 취업을 보장받았다.

1993년 2월 말 현재 민영화 대상기업 2,334個社를 部門別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部門 321個社, 機械類部門 277個社, 農林業部門 371個社, 流通部門 217個社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韓國企業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화학, 전기, 전자, 정밀기계 및 광학분야에 남아 있는 민영화 대상기업도 각각 56個社, 72個社, 10個社에 달하고 있다.

〈表 IV-2〉 民營化 對象企業의 部門別 現況

(單位: 個)

部 門	企 業 數
건 설	77
건설관련(미장 등)	18
광 산	15
화 학	56
서 비 스	321
금속제품·악기·스포츠용품·완구류·장신구류	54
비철금속 및 선철생산, 주물 및 철강	71
전기·전자	72
에너지 및 급수	35
차 량 류	65
정밀기계 및 광학	10
석재 및 토재·정밀세라믹 및 유리제조	69
유 통	217
목재산업	76
플라스틱·고무·석영가공	22
농업 및 임업	371
가죽 및 신발산업	32
기 계 류	277
식품 및 기호산업	101
종이류 및 인쇄산업	32
철강 및 경금속	47
섬유 및 의류산업	129
운송, 운수, 물품보관, 운송 및 운수관련업	128
보험, 신용 및 기타 금융기관	2
기 타	35
계	2,334

資料 :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p. 8.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유력한 방법으로서 각광

받고 있는 經營者買入(MBO : management buy out) 方式, 즉 민영화 대상기업의 기존 경영층이 동 기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의한 民營化 件數는 1993년 2월 말 현재 1,986個社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中小企業 위주로 구성된 1,765個社는 15개 지방소재 信託管理廳 分所에 의하여 민영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外國人 投資者들의 東獨地域 企業引受 件數를 살펴보면, 1993년 2월 말 현재 총 577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投資保障額 및 雇傭保障人員이 각각 173억 9,200만DM, 12만 3,740명에 달하고 있다. 1992년 들어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과거 여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동독지역 기업에 대한 인수실적이 저조했던 英美系 企業들의 활발한 진출세를 들 수 있는데, 1993년 2월 말 현재 英國은 78개 기업을 인수해 동독지역 기업의 인수건수면에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第3位를 차지하였으며 美國도 54개 기업을 인수해 1992

〈表 IV-3〉 國別 東獨地域 企業 引受現況(1993. 2)

(單位 : 個, 100萬DM, 名)

	引受企業數	投資保障額	雇傭保障人員
스 위 스	90	926	14,124
英 國	78	1,569	15,467
프 랑 스	60	4,800	21,024
오 스트리아	85	678	13,621
美 國	54	2,715	11,844
네 덜 란 드	54	983	8,073
스 웨 덴	25	117	3,540
덴 마 크	25	424	2,755
이 탈 리 아	27	642	4,643
캐 나 다	7	1,848	16,706
其 他	72	2,690	11,943
計	577	17,392	123,740

資料 :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p. 16.

년 이전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美國의 경우 동독지역 진출세가 최근 들어 더욱 加速化되고 있는데, 投資保障額 基準으로 볼 때 27억 1,500만DM로서 프랑스에 이어 대규모 동독지역 투자국이 되어 있다. 또한 美國은 동독지역의 신탁관리청 관리기업에 대한 인수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내에서의 販賣網 構築에도 적극 나서 현재 동독지역에 支店을 설치하거나 현지 프랜차이즈網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기업이 120個社에 이른다. 한편 日本 등 아시아國家들의 동독지역 기업에 대한 引受現況을 보면, 인수건수 및 투자액 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日本의 경우 3개 중소기업 인수에 그치고 있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각각 1개 기업의 인수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들 民營化 企業의 賣却收入과 투자자들로부터 얻어낸 雇傭保障 및 投資保障 規模는 〈表 IV-4〉와 같다.

〈表 IV-4〉 信託管理廳 私有化 實績(1993. 2)

(單位: 100萬DM, 名)

	賣却收益	雇傭保障人員	投資保障額
本 社	28,078	897,382	134,356
支 社	13,835	526,286	41,209
計	41,913	1,423,668	175,565

資料: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p. 11.

信託管理廳 管理財産 中 총 13,471건에 대해 원소유자들로부터의 財産返還 訴訟이 있었는데 여기서 企業全體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는 1,232個社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資格은, 1953년 6월 이전에 구동독을 떠났다는 이유로 그 재산이 구동독 정부로부터 沒收되었던 原所有者, 1972년에 소위 人民財産(volkseigene Vermögen)으로 公有化된 企業, 1935~45년 사이에 沒收 또는 強制賣却 등이 이루어진 財産 등이다³⁾.

〈表 IV-5〉 信託管理廳 管理財産의 原所有者 歸屬現況(1993. 2)

(單位: 件)

	件 數
返 還 訴 訟	13,471
返 還	7,352
기 업 반 환	4,147
기업전체	1,232
기업일부	2,915
기타재산반환	1,346
원소유자의 매각동의	419
투자우선결정	564
적절한 배상	460
주정부에 의한 소송기각	416

資料 :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p. 18.

主要 産業部門別 閉鎖企業數 現況은 〈表 IV-6〉과 같다.

〈表 IV-6〉 部門別 企業閉鎖 現況(1993. 2)

(單位: 個, 名)

	閉鎖企業數	失職人員
電氣 및 電子	167	47,448
織 維	208	35,840
車 輛	55	19,162
서 비 스	310	21,154
機 械 類	227	28,429
流 通	351	38,756
計	1,318	190,789
產 業 全 體	2,387	291,778

資料 :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p. 21.

3) 자세한 내용은 第IV章 第3節을 참조하기 바란다.

라. 信託管理廳의 財政現況

〈表 IV-7〉 信託管理廳의 財政現況

(單位: 億DM)

	1990	1991		1992
	實績值	豫算值	實績值	豫算值
總 支 出	59	377	305	502
核 心 事 業	16	274	204	314
매매계약으로 인한 의무		50	15	46
손실보상, 투자지원				34
평형청구권에 대한 지불				6
환경오염제거로 인한 비용			4	4
기업정비 및 구조조정		154	99	115
자기자본형성 도움을 위한 대출				53
평형청구권에 대한 이자지출			28	10
복지지출			50	29
환경오염제거를 위한 보조금지출			5	6
부분판매로 인한 매각수익 반환			16	16
담 保		26	45	80
관리기업의 이자지출		10	10	32
기업파산처분		25	25	28
기 타		9	10	13
法的委任事業	43	103	101	188
구채무에 대한 이자		71	71	68
채무관리기금의 이자보조		32	17	80
원소유자에 대한 귀속의무에 따른		—	—	33
보상				
기 타			13	7
總 收 入	16	169	100	188
賣却收入(건물)			98(3)	148(32)
其他 收入			3	40
總支出—總收入	-43	-208	-205	-314

資料: DIW, *Wochenbericht*, 92/7, 1992, p. 65.

1991년의 信託管理廳 支出(305억DM) 中 3분의 2가 新塔관리청 본연의 업무에, 그리고 3분의 1이 법적으로 지출이 의무화된 분야에 사용되었다. 이 비율은 1992년 들어 法的 委任事業의 比重이 擴大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1991년의 新塔관리청 賣却收益이 豫算額보다 약 70억DM 적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新塔관리청 本然의 業務 中 企業整備 및 構造調整을 위해 지출하려던 계획이 55억DM 정도 줄어들었다. 예산액이나 실적치가 200억DM 정도의 엇비슷한 赤字를 기록하는 것은 信託管理廳이 借入할 수 있는 法的 限界⁴⁾가 당시 250억DM였기 때문이다.

매년 新塔관리청은 기업매각 수익이나 기타 수익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企業整備 및 支援과 其他 法的 委任 事業의 수행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赤字規模는 1992년 현재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民營化 方案에 대한 評價와 代案

가. 民營化 方案에 대한 評價基準

民營化 方案에 대한 중요한 評價基準으로서는 우선 民營化 速度, 企業賣却 收益, 그리고 東獨地域 住民들에 대한 配慮 등을 들 수 있다. 體制轉換 後 급격히 저하된 生産水準이 回復勢를 되찾는 데에는 民營化가 어떤 速度로 진전되느냐가 결정적이므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企業賣却 收益⁵⁾을 많이 올리는 것이 민영화 과정의 절대적인 정책목표라고는

4) 統一條約(Einigungsvertrag) 第25條 第4節. 이 차입액은 1995년 12월 31일 까지 償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法的 限界에 관한 規定은 1992년 들어 修正되었다.

5) 당초 6,000억D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信託管理廳의 企業賣却 收益은 企業 民營化가 80% 정도(11,966개 민영화대상 기업 중 9,632개 기업) 진척된

볼 수 없으나 餘他 政策目標(민영화의 조기성과,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보장 등)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매각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민營化가 순조로울 경우 그 賣却收益이 統一費用의 많은 부분을 充當할 수 있는 潛在力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단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舊東獨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舊東獨 體制下에서 정치·경제적으로 舊西獨 住民에 비해 不利한 生活을 해왔던 東獨地域 住民들에 대한 고려가 衡平性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구동독 체제하에서 쌓았던 個人的 人的資本의 대부분이 통합 이후 쓸모 없게 되어 버린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나. 민營化 方案

가장 代表的인 민營化 方案으로는 賣却 方式과 證書(Voucher)分配 方式이 있다. 賣却 方式은 매각 당시에 인수대금을 지불케 하는 방법과 미래시점에 대금을 지불케 하는 방법(信用賣却 方式)이 있다. 또 企業資產을 證書化하여 分配하는 방법도 다양한 變形이 가능한데 우선 증서를 無償配分 또는 有償配分할 수도 있고 또 분배받은 사람에게 대해 이 증서의 賣却을 許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해 놓을 수도 있으며 이 證書의 分配對象을 全國民으로 하거나 該當 企業 從事者에 국한시킬 수도 있다.

두 가지 대표적인 민영화 방안에 대한 代案으로서 投資者가 賣買를 통해 企業을 引受하되 그 資產의 一部分을 證書化하여 해당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賃金引上을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分配하는 方案(從業員 資本參與 方式)⁶⁾을 들 수 있다.

1993년 2월 28일 현재 419억DM를 기록함으로써 當初 豫想額의 9% 정도에 그치고 있다.

6) 이 방식은 「G. 신」(G. Sinn)과 「H.-W. 신」(H.-W. Sinn)에 의해 주창되었

다. 民營化 實績의 不振과 賣却收益 低調의 原因

민영화의 추진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진 것이나, 또 이로 인한 매각수익이 예상을 훨씬 밑도는 데 대해서는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고임금 요구 및 부동산 소유권의 불확실성 이외에 크게 두 가지 범주의 原因들이 거론되고 있다. 舊東獨 社會主義의 非效率的 經濟體制가 남긴 遺産의 深刻性에 대한 것과 聯邦政府의 經濟政策 및 信託管理廳의 民營化 戰略上 問題點에 대한 것이다.

1) 舊東獨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遺産

구동독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구서독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흡수통합되면서 東獨地域 企業 生産設備의 老朽性과 環境汚染 문제로 民營化 對象企業의 市場價値가 陰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즉, 東獨地域의 環境汚染 잔재가 너무 심각하고 生産施設이 너무 老朽化되어 있어 새로운 곳에서 新規 生産設備로 조업을 시작하는 것이 東獨地域 企業을 無償으로 인수하여 環境汚染과 노후화된 生産設備를 제거한 후 조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投資費用이 적게 든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주로 統計 또는 理論的인 根據 없이 언론매체 등으로 輿論을 조성하여 기업인수 대금을 낮추어 보려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독지역 기업들은 통합과 더불어 제정된 'DM貨 表示 開始 貸借對照表法'에 의하여 DM화로 표시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企業의 自己資本 價値가 陰일 경우 政府의 '平衡請求權'(Ausgleichforderung)에 의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自己資本을 낮추어 평가하고자 하는 誘引을 받게 된다⁷⁾.

다(G. Sinn and H.-W. Sinn,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91).

7) 그 밖에도 平衡請求權은 기업이 동독지역 은행에 통합된 이후 通貨交換이

동독지역의 環境汚染 狀態를 보면, 水質 및 大氣 汚染度는 상당히 높으나 放射能 汚染度와 비소, 디옥신 등에 의한 土壤 汚染度는 낮은 편이다. 서독지역의 경험에서 볼 때 이러한 종류의 오염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⁸⁾.

신탁관리청의 민영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의 價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表 IV-8>에서 읽을 수 있다.

〈表 IV-8〉 信託管理廳 管理土地 現況

(單位: 萬ha, 億DM)

	面 積	土地價値(A) ²⁾	土地價値(B) ³⁾
農業部門	172	530	320
林 野 ¹⁾	51	60	40
土 地	27	2,560	1,580
計	250	3,150	1,940

註: 1) 지방정부에 이양한 145만ha는 제외함.

2) 서독지역 기준 가치임.

3) 5%의 이자율로 10년간 할인한 후의 가치임. 즉, $B=A/(1.05)^{10}$.

資料: G. Sinn and H.-W. Sinn,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91, p. 91.

신탁관리청 관리재산 중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것은 土地部分인데 신탁관리청이 소유한 27만ha의 居住用 및 産業用 土地를 西獨地域의 平均地價로 환산하면 2,560억DM가 된다. 東獨地域의 土地價格이

민간 저축자산과 기업의 은행차입에 대해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貸借對照表上的 缺損을 補填해 주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第VIII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8) G. Streibel, "Environmental Protection: Problems and Prospects in East and West Germany," P.J.J. Welfens(ed.), *Economic Aspects of German Unification*, Berlin: Springer Verlag, 1992, p. 183; Sinn and Sinn, *op. cit.*, p. 89; 駐獨大使館, 『숫자로 본 독일통일』, 1992, p. 79.

통합 후 10년이 경과해야 현재와 같은 서독지역 토지가격 수준이 된다고 가정하여 동독지역의 토지를 10년 동안 할인(5%의 이자율로 10년간 복리계산)하면 居住用 및 産業用 土地의 現在價値는 약 1,580억DM가 될 것이다. 신탁관리청 관리하의 農業用地 및 林野를 합하면 現在價値의 畝은 1,900억DM 이상이 될 것이다. 이 가치는 건물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土地價格만을 감안한 것이며 서독지역 평균지가라는 것도 公示地價이기 때문에 實際 去來土地 價格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신탁관리청 관리기업 재산가치의 下限線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聯邦政府의 經濟政策과 信託管理廳의 民營化 戰略上 問題點으로 인한 企業賣却 不振

신탁관리청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신탁관리청 관리기업 賣却收益의 實績値는 推定値의 9% 정도로 나타났는데⁹⁾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가) 政府負債를 통한 統一財政 需要의 調達

統一과 더불어 費用調達 方案이 논의될 때 政府負債를 통한 방안과 增稅를 통한 방안 중 어느 것이 經濟的으로 最小의 犧牲을 가져오는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特別한 政治·經濟的 事件(예컨대, 統一)으로 인한 財政需要인 경우 財政負擔을 여러 世代에 分散시키기 위해서는 政府負債를 통한 費用調達이 필요하다는 財政學의 古典的 見解에 대해, 政府 財政需要뿐만 아니라 民間 投資需要도 자본시장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驅逐效果(crowding-out effect)를 피하기 위해 政府 財政需要가 增稅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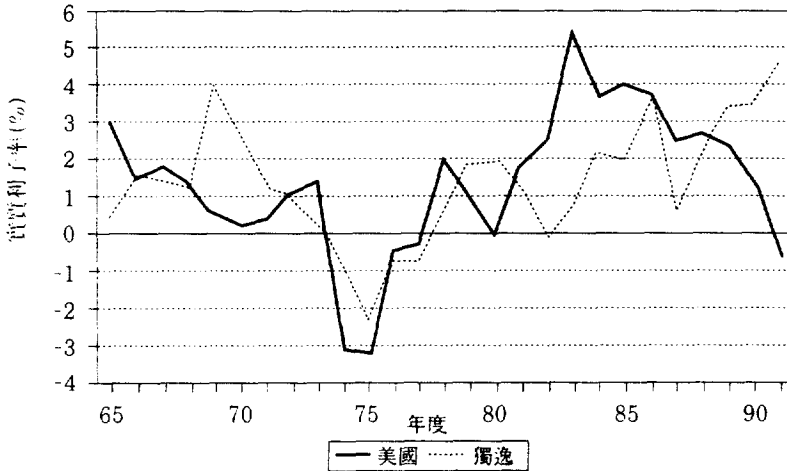
이 두번째 견해는 獨逸의 資本市場이 國際的으로 開放되어 있어서

9) 本章의 註 5)를 참조하기 바란다.

獨逸政府의 財政需要를 資本市場에서 충족하더라도 世界 및 獨逸 資本市場의 利率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설득력을 갖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統一로 인한 政府 財政需要의 大部分이 政府負債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現實化되지 않았다. 獨逸政府의 財政赤字는 資本의 海外輸出을 필연적으로 줄이게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자본수입으로 연결되었으나 독일의 國內資本市場 利率도 상당히 상승함으로써, 세계 자본시장을 크게 교란시켰던 1984년의 美國 利率 水準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圖 IV-1] 獨逸과 美國의 實質利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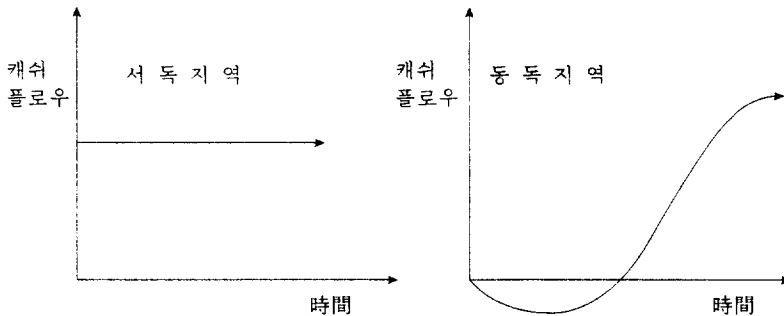
註：실질이자율 = 공정한인율 - 도매물가지수.

資料：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각 연도.

利率 上昇은 民間投資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탁관리청 관리기업 중 매각대상 기업의 豫想收益率도 市中利率로 할인되기 때문에 企業引受 意思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상수익률이 하락하고 따라서 기업인수 의사도 위축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東獨地域 企業의 경우에 더욱 크다. 이는 西獨地域 企業의 경우 初期에 老朽化된 設備 및 環境汚染에 따른 集中投資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東獨地域 企業의 경우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캐쉬 플로우」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東獨企業에 대한 投資의 「캐쉬 플로우」의 現在價値는 微弱한 利率 上昇으로도 陰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圖 IV-2] 東西獨地域 企業에 대한 投資의 「캐쉬 플로우」(cash-flow) 比較



統一費用이 대부분 增稅를 통해 조달되었다면 政府負債를 통해 통일비용이 조달되는 경우보다 總消費支出 規模는 작고 總貯蓄 規模는 클 것이며 利率은 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¹⁰⁾. 따라서 信託

10) R. J. Barro, "Are th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1974, pp. 1095~1117; O. Gandenberger, "Zur Rationalität der öffentlichen Kreditnahme," *Finanzarchiv*, Vol. 30, 1972, pp. 369~391.

「리카도」(D. Ricardo)의 '相應定理'(equivalence theorem)에 의하면 개별 경제주체는 정부가 政府負債와 增稅 中 어떠한 것을 통해 財政需要를 충당하든지 간에 貯蓄과 消費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P. Sraffa (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1, 1970, p. 245). 政府負債를 償還하기 위해 정부가 언젠가는 增稅를 해야 하기 때문에 政府負債를 통한 財政需要 調達方式和 增稅를 통한 방식은 個別經濟主體의 租稅負擔이 時間的으로 서로 달리 分散된다는 것뿐 그 부담의 現在價値는 同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개별 경제주체가, 未來의 可處分所得이 增稅를 통해 줄어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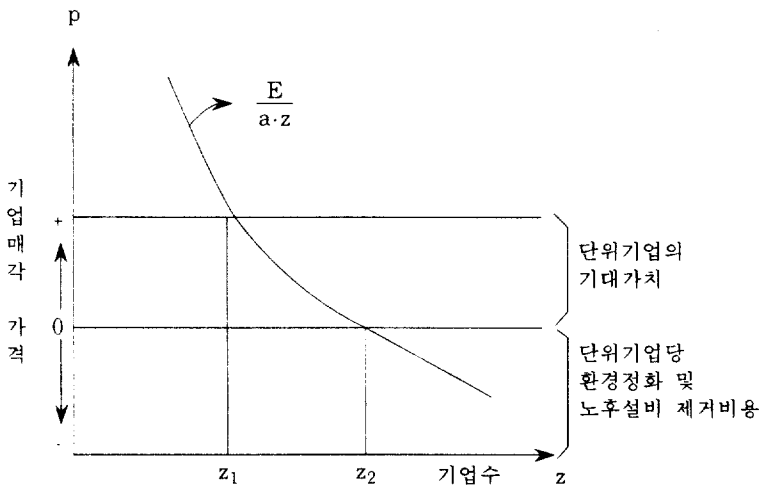
管理廳의 企業賣却 實績 및 賣却收益도 보다 양호하였을 것이다.

나) 資本調達의 制限性

어떤 企業을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액의 일부를 自己資本으로 充當하여야 하는데 이 最小 自己資本 比率(α)과 投資者의 自己資本의 크기에 따라 가능한 銀行貸出의 他人資本 最大規模가 결정된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潛在的 投資者들의 自己資本 규모를 E,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의 賣却價格을 P,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의 數를 Z라고 하고 信託管理廳 管理企業들이 모두 同質的이라고 가정하면 [圖 IV-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圖 IV-3] 資本調達 制限과 支拂可能한 企業賣却 價格



신탁관리청 관리기업들이 모두 同質的인 경우 이들은 모두 同一한 環境淨化 費用 및 老朽設備 除去費用이 필요할 것이며 同一한 水準의 單位企業當 期待價値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 他人資本 調達限度

이라는 점을 별로 고려함이 없이 現在의 可處分所得 水準에 맞추어 消費支出을 한다는 점에서 經驗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alpha PZ \leq E$ 이며 이는 $P \leq E/\alpha Z$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E와 α , 즉 잠재적 투자자들의 자기자본 총액과 법에 규정된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할 경우 企業單位當 賣却價格은 賣却企業數에 反比例함을 뜻한다. 賣却企業數가 Z_1 未滿일 경우에만 單位企業의 期待價値 以上の 賣却價格을 실현할 수 있는 만큼 充分한 他人資本 貸與가 가능하고 Z_1 以上 Z_2 以下일 경우에는 單位企業의 期待價値 未滿의 賣却價格을 실현함으로써 賣却이 不可能해진다. 賣却企業數가 Z_2 를 超過할 경우 單位企業의 賣却價格은 陰이 된다. 이 경우 企業의 期待價値가 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본동원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대량의 기업이 매각용으로 제공되는 까닭에 市場에서 결정되는 企業賣却 價格은 信託管理廳이 自體的으로 부담해야 하는 環境淨化 費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他人資本을 통한 企業資本 調達이 稅制上 有利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타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自己資本 餘力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독지역의 투자자들도 資本動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 海外資本 調達の 限界

海外市場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을 통하여 海外에서 形成된 貯蓄이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의 引受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國際 資本市場의 規模가 充分히 크고 資本移動性이 充分히 伸縮의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必要條件일 뿐이며 充分條件은 아니다. 즉, 이러한 조건 외에 國際間的 商品交流가 充分히 伸縮의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만 이러한 조건하에서 利子率 上昇이 資本輸入을 유인할 수 있다.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을 購買하고자 하는 개별 투자자들은 이러한 자본거래를 원하는 상대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海外로부터 資本을 借入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國內의 海外資本 需要는 經常收支의 變化를 초래하는 實物經濟의 適應過程을 필요로 한다. 國內資本 需要가 資本供給을 超過하면 利子率이 上昇하게

되고 海外資本이 導入되게 되는데, 우선 해외자본가들의 DM貨 需要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DM貨 價値를 切上시킴으로써 商品輸出이 줄어들고 결국 經常收支는 惡化되게 된다.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DM貨의 超過供給은 資本收支上的 DM貨 超過需要와 相殺된다.

이러한 일련의 實物經濟 適應過程이 항상 迅速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J커브效果」(J-curve effect)를 보자. 短期的으로 非彈力的인 輸入과 輸出의 價格彈力性 때문에 換率切上은 經常收支를 改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經常收支 및 資本收支 모두에 있어서 DM貨의 超過需要를 유발하므로 계속적인 換率切上 壓力을 야기시키게 된다. 1980년대 美國의 경우에서와 같이 앞서 살펴본 實物經濟의 適應過程이 실현되려면 數年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換率의 安定性을 유지하는 것이 獨逸聯邦銀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이상 이러한 實物經濟的 適應過程은 獨逸聯邦銀行에 의해 제동받을 수도 있다. 獨逸聯邦銀行은 通貨量 規模를 변화시키지 않고 DM貨의 切上을 막기 위해 國內 有價證券을 반대급부로 外國通貨를 매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外國通貨를 買入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DM貨를 公開市場 政策을 통해 흡수한다는 것이다.

라) 信託管理廳의 雇傭保障에 대한 要求

東獨地域의 失業率이 急増함에 따라 新탁관리청은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投資者들에게 雇傭과 投資에 관한 條件들을 부여하는 가운데 企業賣却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民營化 速度를 더디게 할 뿐 아니라, 雇傭保障 要求를 불러 일으켜 非生産的, 勞動集約的인 產業構造調整을 야기하므로 경제 전반으로는 非效率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정책은 生産性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賃金水準 때문에 個別投資者가 雇用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肯定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新탁관리청의 賣却收益은, 정부가 新탁관리청의 民營化 政策을 택하는 대신 실업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企業의 支給賃金에 補助金을 제공할 경우 國家財政이 부담해야 하는 賃金補助金만큼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라. 賣却方式에 대한 代案으로서 從業員 資本參與 모델의 可能性

1) 證書分配 方式

證書分配 方式은 민영화 대상기업의 가치를 證書로 표시하여 이 증서를 국민들이나 해당 기업 종사자들에게 配分해 주는 방법으로서 賣却方式과 함께 民營化의 가장 基本的인 方式이다.

이 방식은 러시아聯邦과 체코 등의 民營化에 있어서 각기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실현되었다. 舊蘇聯은 經營者買入(MBO: management buy-out) 方式 위주였음에 비해 러시아聯邦은 勞動者買入(EBO: employee buy-out) 方式 위주로 노동자에게 주식매각에 있어서 特惠를 주었다¹¹⁾. 체코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의 증서를 국민의 週平均 給與에 해당하는 反對給付를 받고 분배하였다¹²⁾.

이 방식은 앞장에서 언급된 賣却方式과는 반대로 無償 혹은 象徴的인 代價로 분배되므로 企業 老朽設備 代替 및 環境汚染 除去에 쓰일 資本을 資本市場에서 미리 빼내지 않는 長點이 있을 뿐 아니라 社會主義體制의 산물인 所有權 未定の 財産을 국민들에게 公平하게 分配한다는 점에서 肯定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方式의 短點은 民營化 過程과 더불어 企業整備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 賣却方式에서는 잠재적 기업인수자들이 기업인수 후의 該當 企業 整備 및 投資計劃을 갖고 기업인수 경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신탁관리청

11) 이와 더불어 러시아聯邦에서는 企業을 賣却하는 方式도 함께 사용된다(朴濟勳,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資與件』,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6, pp. 32~33).

12) D. Cornelson, "Privatisierung in Ungarn, Polen und in der CSFR," *Wirtschaftsreformen in Mittel- und Osteuropa*, Beihefte der Konjunkturpolitik 40, Berlin: Duncker & Humboldt, 1993, p. 41.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企業整備 計劃을 소유한 투자자를 선택하여 매매계약에 이를 명시토록 할 수 있으나 分配方式의 경우 민영화 대상기업이 민영화된 후 적절한 經營者와 企業整備 計劃을 마련하게 되는 과정이 不確實하다. 賣却方式으로 企業을 引受하게 되는 투자자들은 대개 西獨地域에서 同種의 企業을 經營하는 투자자들로서 이 분야에 많은 知識을 蓄積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제대로 整備될 가능성이 높다¹³⁾.

2) 從業員參與 모델

이 모델도 企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知識을 갖춘 有能한 西獨地域 經營者를 찾는다는 점에서 新탁관리청이 실현하고 있는 민영화 방안인 賣却方式과 비슷하다. 兩者가 서로 다른 점은 서독지역 經營자가 新탁관리청에 企業引受 代金を 지불하지 않고, 企業引受와 함께 가져오는 技術的 知識이나 企業整備 費用, 그리고 資本金을 超過하는 賣却對象 企業의 價値를 信託管理廳이 資本參與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서독지역 經營자가 가져오는 技術적 지식이나 기타 자본가치의 평가방법과 그에 따라 信託管理廳이 該當 企業의 資本金에서 차지하게 될 比重은, 企業賣却時에 이루어지는 潛在的 投資者와 信託管理廳의 交渉과 유사하게 결정된다. 그리고 新탁관리청은 全體 企業의 民營化가 이루어진 후 個別企業의 信託管理廳 持分을 모두 모아 有償 또는 無償 分配할 수 있다.

서독지역 經營자가 가져오는 技術적 지식이나 자본금이 충분하므로 引受되는 企業의 持分을 多數 차지하게 하는 것이 經營權 確保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으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經營主의 經營權을 保障해 주는 방안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3) Wissenschaftlicher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Probleme der Privatisierung in der neuen Bundesländern," *BMWi Studienreihe*, Vol. 73, Bonn: BMWi, 1991.

多數持分을 차지하지 못한 경영자일지라도 契約時에 長期的인 投資計劃과 持分確保 計劃을 提示하는 경우(이를 실현한다는 조건하에서) 經營權을 法的으로 保障해 주거나, 西獨地域 經營者에 대해 多數持分을 가진 經營者와 同一한 權利를 처음부터 보장하되 서독지역 경영자 소유의 西獨地域 內 母企業이 信託管理廳에 擔保責任을 지는 방법이다.

물론 이 모델에서는 서독지역 경영자가 기업인수에 참여하는 방법 외에도 東獨地域의 既存 經營層이 企業을 引受케 하는 방법(經營者 買入 方式)도 가능하다. 그로 인해 기존의 지식이 보완되지 않는 나 所有關係가 變化함으로써 보다 效率的인 經營에 대한 誘引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의 중요한 長點 중의 하나는 동독지역 주민들이 과거의 人民財產 分配에 參與할 수 있다는 것이다. 統一條約 第25條는 동독지역 주민들이 東獨마르크貨로 보관하고 있는 貯蓄資產을 通貨統合時 2:1로 交換해 주는 대신에 인민재산 처분시 餘力이 있을 경우 이를 東獨地域 住民들에게 分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매각방식을 통해 신탁관리청이 거둬 들일 企業賣却 收益이 統一費用의 극히 미미한 부분밖에 充當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이 現實的으로 適用될 可能性은 全無하다.

國民들에게 信託管理廳 所有의 企業持分을 分配하는 方式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업지분을 결집, 業種別 또는 地域別로 投資會社(investment fund)를 만들어 그 株式을 分배하거나 信託管理廳 自體를 民營化하여 信託管理廳의 株式을 分배할 수도 있다.

3) 信用賣却 方式

信託管理廳 所有의 小規模 土地나 個人會社 規模를 지닌 企業의 民營化 方案으로서 企業資產을 證書化하여 賣却 또는 分配하는 方案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補完策으로서 企業을 賣却하되 潛在的 投資

者에게 資金調達의 隘路를 덜어주기 위해 特定한 未來에 賣却引受代金を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信用賣却 方式은 資本市場에 壓迫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證書分配 方式과 유사하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利潤이 발생할 경우에만 증서의 일부를 배당하는 證書分配 方式보다는 이윤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게 借入金에 대한 利子を 지불해야 하는 信用賣却方式이 危險負擔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信用賣却 方式이 現札로 賣却하는 方式보다 投資者에게 有利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4) 全般的인 比較評價

從業員參與 모델은, 資本市場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내어 자본시장을 梗塞시키지 않고 東獨地域 住民들에게 다소의 證券資產을 保障한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증권자산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대신 賃金上昇을 抑制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東獨地域 企業競爭力 低下의 가장 큰 요인인 生産性增加率 以上の 賃金上昇率을 抑制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長點을 지닌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독지역 주민들이 그들에게 분배된 증권들을 即時 賣却, 消費하고자 할 경우 매각방식에서와 같이 資本市場은 梗塞되게 된다. 동독지역 주민들이 證券을 即時 賣却할런지 또는 財産增殖 手段으로 留保할런지는 이 증권의 未來價値에 대한 期待와 동독지역 주민들의 所得水準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증권의 매각을 허용치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다면 資本市場의 梗塞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에 民營化의 反對給付로서 政府가 賣却收益 또는 그 밖의 형태로 財政收入을 올릴 가능성은 완전히 부인된다. 그러나 賣却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獨逸에서 信託管理廳이 賣却收益보다 더 많은 支出로 인해 財政赤字를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큰 短點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 東獨地域의 土地私有化政策

가. 所有權 確立 方案

經濟統合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은 토지, 건물 등 생산수단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유권 인정에 의해 投資者들이 所有權을 보다 확실히 행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구동독 정권하에서 국유화된 재산에 대한 原所有者 및 現所有者(또는 사용자)간의 土地償還 關係를 규율하는 방안으로서 첫째, 原所有者에게 歸屬시키는 방안 둘째, 증서제도의 도입 또는 새로운 소유희망자에 대한 매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所有關係를 定立하는 방안 셋째, 現在의 使用者의 所有權을 認定하는 방안 끝으로, 현 사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原所有者에게 補償하게 하는 방안 등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사회·경제·법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중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統一獨逸의 土地私有化政策

‘經濟·社會·通貨同盟’의 구동서독간 국가조약에서 구동독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沒收된 不動產에 대해서는 原所有者의 所有權을 인정해 주었다. 즉, 구동독의 국유재산 중에서 原所有者가 있을 경우¹⁴⁾ 위의 첫번째 방안이 채택되었고 補償은 例外的으로만 인정되었다. 첫번째 방안이 채택된 배경은, 먼저 과거 몰수된 부동산에 대한 所有權 問題의 解決이 없이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 수 없고 原所有者에게 歸屬시키는 방법 이외의 여타 해결책은 憲法裁判所에서 拒否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구동독하에서 새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처럼 원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所有希望者에 대한 賣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소유관계를 정립토록 하였다.

14) 法的으로 原所有者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第Ⅳ章 1의 ‘다’와 3의 ‘마’를 참조하기 바란다.

즉, 두번째 방안 중 後者를 택했으며 이를 신탁관리청이 수행토록 하였던 것이다. 세번째 방안은 既得權層을 유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原所有者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現在의 使用者의 소유를 인정하고 原所有者에게는 價格을 補償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法的 側面과 經濟的 側面이 상충되었다. 法的 側面에서는 새로운 소유관계가 個人의 基本權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經濟的 側面에서는 投資促進이 신속한 經濟回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또 이를 통해서만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投資促進에 유리한 後者의 방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原所有者에 대한 歸屬原則은 經濟部의 견해보다는 개인의 권한을 중시하는 法務部の 견해가 크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3월 말 현재 財產權 要求와 관련하여 120만건이 신고되었는데, 해당 토지면적은 전국토의 3분의 1 규모이다¹⁵⁾.

다. 統一獨逸 土地私有化政策의 問題點

그러나 返還을 원칙으로 하고 補償을 예외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不動產 所有權 概念의 不確實性和 이에 따른 不動產 市場의 機能麻痺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返還原則 規程은 投資目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 주어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返還原則, 補償例外 規程이 不動產 所有權의 不確實性和 이에 따른 不動產市場의 機能麻痺를 가져오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구동독 시대에 잘 관리되지 못하여 原所

15) 총신고대상인 150만건의 80%에 해당한다(*Handelsblatt*, January 14, 1992).

16) G. Fieberg and H. Reichenbach, "Offene Vermögensfragen und Investitio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Vol. 32, 1991, p. 1978; 裴眞永, 『統獨 1年の 經濟的 評價와 展望』, 정책연구 92-0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 46.

有者가 確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검토할 人力마저 부족하고 審査節次 및 方法도 미숙하다는 점이 ‘경제동맹’ 이후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둘째, 부동산 소유권의 不確實性은 不動產 所有關係가 一貫性을 유지하지 못한 데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구동독에서 지난 40년간 부동산, 특히 기업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기업소유와 個人所有의 分明한 區分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누구에게 무엇을 반환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부동산의 원소유자들은 현재의 不動產 時價를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장차 크게 오를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려 들지 않아 不動產市場의 賣物이 매우 적은 상태다. 따라서 투자 해당 지역의 原所有者가 返還을 拋棄하고 補償을 要求하지 않는 이상 원소유자의 부동산을 새로이 구입할 수 없다. 넷째, 단지 分割possible한 토지만이 반환될 수 있으며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동독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가 대규모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필요로 할 때,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투자지역에 많은 원소유자가 小規模 土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返還原則은 不動產 去來와 投資를 萎縮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끝으로, 현재 많은 부동산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으나 汚染淨化 費用을 買入者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의 거래는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라. 返還原則의 修正

返還原則의 問題點으로 인해 1990년 말부터 1991년 중순까지 不動產所有權의 歸屬方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經濟部 內 學術諮問團(Wissenschaftlicher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에서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補償은 優先的, 返還은 例外的’으로 수정할 것을 끊임없이 제안하였다.

統獨 이후 두 차례(1991. 3, 1992. 7)에 걸친 法律改正에 의해, 財産法 第3條¹⁷⁾는 公共團體(예컨대, 지방행정기관)나 信託管理廳의 管理財産일 경우, 반환원칙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조건하에서는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例外를 인정, 반환하지 않고 신탁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賃貸 또는 賣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雇傭의 創出 또는 維持, 주민들의 住宅問題 解決, 艱요한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構築 등에 필요한 土地와 建物 둘째, 雇傭의 創出, 維持 또는 競爭力 提高를 가져오거나 移轉所有者가 더 이상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원소유자에게 보상해 주는데, 個人財産權에 대한 중요한 침해로 간주되는 特別 例外規定은 제2차 법개정에 의해 1995년 12월까지 限時的으로만 적용토록 되었다.

公共團體나 信託管理廳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도 投資法(Investitionsgesetz)¹⁸⁾에 의거, 반환신청에도 불구하고 第3의 投資者에게 賣却 또는 賃貸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投資證明書(Investitionsbescheinigung)를 시·군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바, 發給條件은 상기 財産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는 再私有化 過程이 진행되는 동안 移轉所有者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所有權 關係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臨時的인 所有權을 지정(Einweisung)받아 기업을 책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임시적인 권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移轉所有者가 財産法을 담당하는 해당 주정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권자가 기업을

17)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Verträge zur Einheit Deutschlands*, München: Beck-Verlag, 1990, pp. 574~575; 統一院, 『統獨 2周年 報告書』, 1992. 10, p. 39.

18) Gesetz über besonderen Investitionen in der DDR, *Die Verträge zur Einheit Deutschlands*, München: Beck-Verlag, 1990, pp. 571~572.

불법목적이 아니라 本來目的대로 운영하는지 심사받아야 하며 신청권자가 기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企業運營 方案을 제출하여야 한다. 原所有者(Alteigentümer)와 現任의 管理者(Verfügungsberechtigten; 대개 신탁관리청)의 법률적 관계는 權利權者가 賣買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賃貸契約(Pachtvertrag)의 諸規定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경우 賃貸料나 賣買代金の 지불은 所有關係가 完全히 確定되어 권리권자에 대한 기업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猶豫(gestundet)된다. 해당 관청에 의한 이러한 臨時的 權利指定 외에도 원소유자와 해당 관리자는 언제라도 企業의 暫定的인 利用에 합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合議는 해당 관청에 통보되어야 한다¹⁹⁾.

마. 補償原則과 補償基金 財源의 마련

聯邦財務部는 과거의 沒收財産 補償에 관한 立法(Entschädigungsgesetz)을 추진중인바, 1992년 7월 1일 그 補償原則과 補償基金(Entschädigungsfond) 재원의 마련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²⁰⁾.

補償原則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5~49년 사이에 몰수된 재산을 보상한다. 둘째, 1950년 이후의 沒收財産 中 반환대상 재산이 수차례에 걸쳐 몰수조치를 당한 경우 첫번째 경우에만 返還權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補償이 행해진다. 셋째, 반환이 가능하나 自發적으로 返還을 拋棄한 경우는 補償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반환과 보상 중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음). 넷째, 個人不動産과 農地·山地의 경우, 補償額은 1935년 基準時價(분단 이전의 토지조사에 의한 課稅標準地價)의 1.3배로 한다. 다섯째, 營業用 財産의 경우 補償額은 1.3배가 아닌 1935年 時價를 기준으로 하나 최고 25만DM를 넘을 수 없다. 여섯째, 金融財産의 경우 通貨統合 當時의 交換率에 의거 동독

19) 統一院, 前掲書, p. 40.

20) 前掲書, p. 41.

마크화로 표시된 액수의 50%를 보상한다. 일곱째, 知的保護財産의 경우 舊東獨 價格의 50%를 보상하되 2만DM를 넘을 수 없다. 여덟째, 특히 高額補償의 경우 일정액 이상은 累進的으로 보상액을 감하는데, 100만DM를 넘으면 40%, 200만DM를 넘으면 70%를 감한다. 끝으로, 전후 구서독으로 이주하여 정부로부터 負擔調整金 (Lastenausgleich)을 받았을 경우 財産返還時에는 回收하고 補償時에는 精算措置한다.

補償基金은 신탁관리청 企業·不動産의 매각대금 일부, 金融資産 (Finanzvermögen) 매각대금, 負擔調整金 회수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占有權者가 해당 財産을 取得한 경우의 購入代金 일부, 財産特別賦課金 (Vermögensabgabe)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재산을 반환받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재산가격의 3분의 1을 財産特別賦課金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재산가격은 1935年 時價를 기준으로 農地 및 山地의 경우 당시 가격의 4배, 賃貸住宅은 6배, 50% 이상이 宅地인 垆地는 8배, 商業用 不動産 및 聯立住宅은 10배, 그리고 建物이 없는 垆地는 27배를 곱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財産特別賦課金은 다음 경우에 한해 差等的으로 免除하는데, 1989年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까지 舊東獨에 居住한 경우 중에서, 기업을 반환받아 최소한 3년간 90% 이상의 雇傭을 保障한 경우에는 100%, 1980年 1月 1日에서 1989年 11월 9日 사이에 구동독에서 西方으로 移住한 경우에는 66.6%, 기업을 반환받아 최소한 3년간 50% 이상의 雇傭을 保障한 경우와 農地나 山地를 반환받아 최소한 3년 이상 耕作한 경우에는 50%, 그리고 1961年 8월의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부터 1979年 12월 31日까지 舊東獨에 거주하다 西方으로 移住한 경우에는 33.3%를 免除받는다.

財産特別賦課金은 1996年 1月 1日부터 징수되며 해당 권리권자가 그때까지 재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향후 5년간 徵收가 猶豫될 수 있다. 補償은 상기 財源들에 의해 補償基金이 조성되고 난 후 1996

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바. 評價 및 示唆點

不動產 所有權에 대한 이러한 基本方向의 修正은 東獨地域의 投資를 活性化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補償決定에 대한 原所有者의 反撥, 그리고 보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補償規模에 대한 原所有者의 反撥 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대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賣買가 불확실하게 된다. 특히 返還의 例外規定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이러한 예외결정이 該當 行政當局의 判斷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投資決定에 해당 행정당국의 의사가 개입될 소지가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행정당국의 權力濫用과 非理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返還의 例外規定을 보다 擴大하는 것은 私有財產制度의 基本前提가 지켜져야 하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統合 以前에 준비되어서 통합과 더불어 시행되었더라면 潛在的 投資者의 混亂이 제거되고 보다 圓滑한 投資環境을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있어서는 약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1992년 7월의 法改正을 통해 위와 같은 返還原則의 修正이 가능해졌다.

V. 勞動市場政策

1. 統獨 後 獨逸 勞動市場의 變化推移

1990년 7월 1일의 '經濟·社會·通貨同盟'과 1990년 10월 3일의 舊東西獨 統合은 東獨地域의 생산, 고용 구조에 역사상 유례 없는 붕괴를 초래했다.

舊東獨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完全雇傭에 최고의 정책순위를 두어 왔기 때문에 통계상 完全雇傭 상태를 유지해 왔었으나 市場經濟로의 轉換은 거의 2년 사이에 大量失業과 勞動供給의 過剩現象을 가져왔다. 1993년 말을 고비로 고용감퇴 현상이 종료될지는 모르나 雇傭이 回復될 것인지 아니면 現在와 같은 低水準을 維持할 것인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가. 東獨地域의 人口와 勞動力の 急激한 減少

東獨地域 人口는 1989년 초의 1,670만명에서 1992년 말 현재 1,540만명으로 약 100만명 정도 감소했다. 西獨地域으로부터의 移住, 蘇聯圈域에 거주하던 獨逸人들의 流入, 그리고 亡命者들의 行렬이 계속되고 있으나 1989~90년간의 80만명에 달하는 西獨地域으로의 人口流出 때문에 總人口는 다소 減少勢를 보이고 있다. 西獨地域에 대한 移住는 계속 줄고 있으나 死亡率이 일정한 가운데 出生率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5~75세 인구는 약간 줄고 勞動市場 參與率도 1992년에 76.4%를 나타내는 등 減少勢를 보이고 있다. 老齡者들의 市場參與率도 減少하였는데 이는 1992년 중반까지 55세 이상 약 83만명의 노령자 중 많은 수가 早期에 退職했기 때문이다.

〈表 V-1〉東獨地域의 人口 推移

(單位：萬名, %)

	1989	1990	1991	1992
年 初 人 口	16,675	16,267	15,862	15,605
流 入	5	36	65	80
流 出	388	395	225	160
流入－流出	-383	-359	-160	-80
出 生	194	166	107	75
死 亡	219	212	204	198
出生－死亡	-25	-46	-97	-123
年 末 人 口	16,267	15,862	15,605	15,402
15~75歲 人口	12,036	11,764	11,677	11,862
勞動市場參與率	78.7	77.8	77.1	76.4

資料：J. Kühl, "East-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FES and KIEP, Seoul, October 2, 1992, p. 4.

나. 雇傭體系의 崩壞

東獨地域의 產業生産은 統一 以前의 절반 수준으로 감퇴되었고 雇傭은 통일 이후 계속 감소, 1989~92년간 350만명이 감소함으로써 1992년 12월 말 현재 就業人口는 630만명이 되었다. 失業人口는 1992년 12월 말 현재 110만명에 달하여 西獨地域의 失業率 6% 수준을 훨씬 웃도는 1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40만명의 근로자들(총고용의 6.4%)이 公共就業養成制度에 참여하고 있고 불완전 취업을 의미하는 短縮勞動制度에는 1992년 현재 29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總雇傭의 11%는 聯邦勞動廳(Bundesanstalt für Arbeit)의 資金支援을 받는 셈이 된다. 勞動市場政策에 따른 이러한 制度들(공공취업 양성제도, 단축노동제도)이 없다면 정상근로자들은 약 550만명에 머무르게 되었을 것이다.

〈表 V-2〉東獨地域の 雇傭 推移(1990~92)

(單位：千名)

	1990				1991				1992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雇傭人口	9,568	9,130	8,672	8,102	7,773	7,311	6,907	6,726	6,485	6,411	6,312	6,297
農林業	960	830	801	656	519	382	362	341	343	330	323	318
製造業	4,266	4,097	3,965	3,649	3,443	3,181	2,785	2,584	2,362	2,312	2,238	2,225
流通業	1,623	1,547	1,433	1,320	1,322	1,331	1,291	1,269	1,223	1,209	1,194	1,193
서비스와 政府部門	2,719	2,656	2,473	2,465	2,448	2,316	2,235	2,175	2,161	2,156	2,171	2,195
政府支援 을 통한 雇傭維持	0	0	0	12	41	101	234	357	396	404	386	366

1989年 4/4分期 對比 人口變化數

雇傭人口	-186	-624	-1,082	-1,652	-1,981	-2,443	-2,847	-3,028	-3,269	-3,343	-3,442	-3,457
失業人口	13	83	309	556	757	835	1,022	1,038	1,254	1,172	1,158	1,097
移動就業 人口 ¹⁾	14	28	101	175	222	278	308	352	343	351	353	351
東獨地域 移住人口 ²⁾	129	166	221	299	352	384	416	448	480	512	544	576
早期退職者	45	190	310	410	430	516	563	661	776	792	844	835

註：1) 동독지역 거주 서독지역 취업인구를 나타냄.

2) 취업 가능한 연령층만을 나타냄.

資料：DIW, *Wochenbericht*, 93/13, 1993, p. 133.

〈表 V-3〉短縮勞動制度를 통한 就業人口

(單位：千名)

	1989	1990	1991	1992
短期勞動勤勞者 ¹⁾	— (-)	758 (379)	1,616 (905)	725 (290)

註：1) () 안은 정상근로자로 환산한 경우임.

資料：J. Kühl, "East-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FES and KIEP, Seoul, October 2, 1992, p. 5.

聯邦勞働廳은 1991년에 短縮勞働, 즉 부족한 근로시간분에 대한 지급으로 인해 공공취업 양성의 경우보다 많은 재정부담을 안았으나 1992년 들어서는 公共就業 養成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短縮勞働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¹⁾. 근로시간의 50%가 감소된 短縮勞働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職業訓練 및 再訓練 制度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短縮勞働의 경우에도 본래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 참가하려는 동기부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統獨 後 1年間은 雇傭의 절반이 과거 국영기업들이었던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규모는 1990년 7월 1일 현재 8,800개 기업, 408만명의 취업자에 달하였다. 民營化의 촉진을 위해 기업들이 1만 2,800여개로 분할되었다. <表 V-4>에서 보듯이 1992년 말까지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의 雇傭規模는 6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93년 2월 현재 40만명을 밑돌고 있고 신탁관리청 관리 기업들의 雇傭占有率은 50%에서 7%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3년간 2,500여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就業者 數로 볼 때 7분의 1 정도만이 취업상태로 잔류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民營化(민간소유자에 대한 매각조치, 기존 경영층 인수조치, 과거의 재산권자에게 기업을 귀속시키는 재사유화 조치, 지방공공기구에 대한 반환조치 등)는 1993년 2월 말 현재 1,755억DM를 투자키로 한 인수자들에 의해 142만 4,000명의 就業機會를 가져왔다. 그러나 민영화 시점부터 1993년까지 總雇傭量(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자수와 신탁관리청의 관리하에 남아 있는 고용자수의 합)은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서, 就業機會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國營企業을 民營化함으로써 就業機會를 擴大시키려던 당초의 목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表 V-10>을 참조하기 바란다.

〈表 V-4〉 雇傭 및 民營化 現況

(單位: 千名, %, 個所, 億DM)

	信託管理廳 所有企業		工場閉鎖 (累計)	民 營 化	
	雇傭者數	總就業者 對比 比率		就業者	投資(累計)
1990. 7. 1.	4,080	(46.2)	0	0	0
1991. 6.20.	3,000	(37.5)	500	526	653
1991.10.31.	2,000	(..)	700	793	969
1991.12.31.	1,650	(22.0)	..	858	1,050
1991. 3.31.	1,350	(..)	1,200	1,130	..
1992. 5.31.	1,000	(..)	1,352	1,170	1,385
1992.12.31.	550	(9.4)	1,900	1,400	..
1991. 2.28.	370	(6.3)	2,427	1,424	1,755

資料: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2. 賃金政策

가. 東獨地域의 賃金上昇

西獨地域의 賃金 및 其他 勤勞條件은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團體協約 當事者의 自由로운 合議에 의해서 결정된다. '經濟·社會·通貨同盟'과 함께 西獨地域의 勞動法 및 勞使關係에 관한 基本原則이 수정 또는 제한 없이 東獨地域에 도입됨에 따라 동독지역에서도 賃金은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企業家 團體와 勤勞者 團體間의 自由로운 合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다. 그 결과 동독지역에서는 1990년 7월과 8월에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勞動組合과 企業家 團體가 새롭게 결성되었으며 이들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새로운 賃金水準이 협약되었다.

'經濟·社會·通貨同盟' 以後 團體協約에 따른 東獨地域의 賃金引上 計劃을 보면 산업부문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大部分의 産業

部門에서 東獨地域 勤勞者의 賃金이 1994년까지 西獨地域 勤勞者 水準에 이르도록 합의되었으며 金融部門의 경우에는 1992년까지 西獨地域 賃金水準의 100%를 지급토록 합의되었다²⁾. ‘經濟·社會·通貨同盟’ 以前에 舊東獨의 임금수준이 舊西獨의 3분의 1이었음을 감안하면 ‘경제·사회·통화동맹’ 이후 4년 이내에 큰 폭의 賃金上昇이 豫定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鑛工業 中 철강, 금속 및 전자, 고무, 도자기, 유리산업 등의 주요부문에서 합의된 賃金引上 計劃을 보면 1991년 4월까지의 西獨地域 賃金水準의 55% 이상, 1992년 4월에는 70%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3년 6월까지의 西獨地域 賃金水準의 80~85%에 달해야 하며 1994年初에는 西獨地域 賃金水準을 完全히 支給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³⁾.

合議에 의한 賃金引上 計劃은 노동자들의 實際 賃金上昇額과 다소의 差異가 있을 수 있는데 實際로 支拂된 東西獨地域의 月平均 總賃金所得은 〈表 V-5〉와 같다. 1991년 1/4분기 東獨地域 勤勞者의 月平均 總賃金水準은 1,468DM로서 1988년보다 44.5%나 증가하여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이 서독수준의 44.3%에 이르렀다. 東獨地域의 賃金水準이 統合 以前 舊西獨의 약 30%였음에 비추어 볼 때 東獨地域의 賃金이 西獨地域 水準에 꽤 近接했음을 알 수 있다. 部門別로 보면 農林業의 경우 賃金水準이 오히려 약간 下落하였지만 商業의 경우 賃金水準은 100% 以上 上昇하였다. 이는 統合 以前 商業部門의 賃金水準이 相對的으로 낮은 데에다 統合 以後 이 부문의 收益率이 他部門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建設業의 경우도 89.8% 上昇하여 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이 서독지역의 71.8%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一般的인 豫想과는 달리 경제의 원동력인 鑛工業部門의 賃金은 1,182DM로서 1988년의 999DM에 비해 18.3% 상승에 그쳐 全體

2) J. B. Donges, "Arbeitsmarkt und Lohnpolitik in Ostdeutschland," *Wirtschaftsdienst*, 91/6, 1991, p. 286.

3) *Ibid.*

産業의 平均賃金에 훨씬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西獨地域의 水準에 비해서도 30.9% 수준에 그침으로서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鑛工業部門의 賃金上昇率도 全體 平均値를 밑돌고 있고 勞使間의 協約에 의한 賃金上昇率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는 短縮勞動者의 擴大로 근로자의 實質受領額이 契約受領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며 특히 短縮勞動者가 鑛工業部門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表 V-5〉 東獨地域 勞動者의 月平均 賃金水準

(單位: DM, %)

	東獨地域(A)			西獨地域(B)	A / B
	1988 ¹⁾	1991. 1/4	增加率	1991. 1/4	
全體	1,016	1,468	44.5	3,312	44.3
農林業	981	966	-1.5	2,730	35.4
鑛工業	999	1,182	18.3	3,828	30.9
建設業	1,050	1,993	89.8	2,777	71.8
商業	866	1,741	101.0	3,081	56.5
서비스業	993	1,705	71.7	3,068	55.6

註: 1) 동독마르크貨와 DM貨의 교환비율을 1:1로 가정함.

資料: DIW, *Wochenbericht*, 91/30, 1991, p. 428, p. 432.

東獨地域의 賃金은 '經濟·社會·通貨同盟'으로 高評價된 데다가 그 이후의 급격한 賃金上昇으로 單位製品當 賃金費用이 크게 上昇함으로써 東獨地域 企業의 競爭力 喪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表 V-6〉에서 보듯이 1991년 東獨地域의 單位製品當 賃金費用이 전년 동기보다 52.7%나 상승한 반면 西獨地域은 높은 賃金上昇率에도 불구하고 4.2% 상승에 그쳤다. 1992년과 1993년에도 東獨地域의 單位製品當 賃金費用 增加率은 西獨地域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V-6〉獨逸企業의 單位製品當 利潤 및 賃金費用增加率 推移
(1991~93)

(單位：%)

	總資本所得 및 經營所得			總勤勞所得			利 潤			賃金費用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東獨地域	9.3	21.5	11.0	52.7	14.0	7.0
西獨地域	3.4	-0.5	-1.0	7.9	6.0	3.0	-0.2	-1.5	0.0	4.2	5.5	4.0
獨 逸	-4.5	-1.0	2.0	8.1	8.0	4.0	-5.2	-2.0	2.0	7.3	6.3	4.5

資料：DIW, "Grundlinien der Wirtschaftsentwicklung 1993," *Wochenbericht*, 93/1-2, 1993, p. 4.

東獨地域의 1991~92년간 生産性增加率, 賃金上昇率 및 單位製品當 賃金費用上昇率は 〈表 V-7〉과 같다. 賃金上昇率(106%)이 生産性增加率(28%)을 엄청나게 웃돌아 單位製品當 賃金費用도 61%나 상승하여 서독지역의 175%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1994년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 賃金を 西獨地域 水準에 이르도록 하는 合議가 勞使間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企業의 賃金費用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表 V-7〉 生産性, 賃金 및 賃金費用上昇率(1992. 下半年)

(單位：%)

生産性 增加率	賃金上昇率	賃金費用上昇率
28	106	61

註：1990년 하반기 대비 상승률임.

勞働生産性增加率이 賃金上昇率에 미치지 못하여 勞働生産性和 賃金の 乖離가 더욱 커질 경우 東獨地域의 賃金上昇은 東獨地域의 經濟回復에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大部分의 經濟

學者と 經濟部 内の 學術諮問團은 東獨地域의 賃金上昇 趨勢가 抑制되어야 함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經濟諮問委員會(SVR)의 1991/92年 獨逸經濟評價報告書에서도 東獨地域 企業의 競爭力을 確保하고 失業增大를 抑制하기 위해서는 東獨地域의 實質賃金上昇率이 향후 2~3년간 西獨地域 水準으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經濟諮問委員會는 1992년 東獨地域의 適正名目賃金上昇率이 11.5%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수치는 當該年度 동독지역의 豫想物價上昇率에다 當該年度 西獨地域의 豫想勞動生産性增加率을 합한 것이다⁴⁾.

나. 賃金上昇의 原因

東獨地域 勤勞者의 賃金은 ‘경제·사회·통화동맹’으로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경제·사회·통화동맹’ 이후 企業이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賃金上昇을 抑制해야 한다. 현재 東獨地域은 資本이 매우 稀少한 데 반해 勞動力은 남아돌기 때문에 生産要素의 稀少性에 비추어 보아서도 동독지역에서의 임금상승은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이유 때문에 임금은 인하되지 못하고 급격히 인상되기만 하였다. 우선 統一 以前の 舊東獨 住民에게 生活水準의 向上을 약속한 「콜」정부로서는 임금상승을 강력히 억제할 수 없었다. 더욱이 ‘경제·사회·통화동맹’ 당시 東獨地域의 企業은 國家所有 형태였기 때문에 西歐概念의 雇用主가 없었고 勤勞者의 權益만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을 인하시키고자 하는 雇用主의 意志는 薄弱한 반면 勤勞者의 賃金引上 要求는 매우 強力하였다⁵⁾. 賃金協商이

4) 그러므로 東獨地域의 實質賃金上昇率은 西獨地域 水準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Wege- Risiken*, 91/92, November 1991, p. 229).

勞動者 中心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 東獨地域의 賃金協商은 서독지역과 같이 產業部門別로 集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產業部門 全體의 賃金이 一括적으로 上昇하여 經濟 全體의 賃金上昇幅이 加速化되었다. 게다가 西獨地域의 勞動組合은 동독지역 노동자의 서독지역 이주로 인해 자신들의 雇傭市場이 惡化될 것을 우려하여 東獨地域 勞動者의 賃金上昇을 원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경제·사회·통화동맹’으로 東西獨地域間的 勞動者 移動이 完全히 自由롭게 되었기 때문에 獨逸政府는 東獨地域의 經濟와 雇傭市場만을 고려한 低賃金政策을 채택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동독지역 주민의 大規模 西獨地域 移住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 賃金上昇과 雇傭

1992년 東獨地域의 雇傭, 賃金總額, 1人當 給與 등의 產業別 推移를 살펴보면 <表 V-8>과 같다. 1992년 1/4분기는 전년동기에 비해 賃金 및 俸給生活者의 數가 민간서비스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農林業部門과 製造業部門의 就業者數 減少는 總給與의 減少를 가져왔다(각각 30%, 23% 감소함). 취업자수의 감소가 다소 경미한 부문은 총급여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人當 月給與는 크게 증가했다. 產業部門間 賃金格差는 상당히 높으며 1989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賃金이 上昇하면 노동자의 구매력 증대로 有效需要가 創出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 雇傭을 創出한다는 購買力 效果는, 東獨地域의 경우 다음 이유 때문에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賃金上昇으로 費用上昇이 초래되고 製品價格의 上昇으로 연결될 때 勞動者의 實質購買力은 오히려 減少할 수 있다.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

5) L. Bellmann, "Lohn- und Arbeitspolitik in der neuen Bundesländern," *Wirtschaftsdienst*, 91/8, 1991, p. 403.

〈表 V-8〉産業別 雇傭量, 總賃金 및 1人當 給與 推移(1992. 1/4)

(單位: 千名, 億DM, DM, %)

産業	雇傭量		總賃金		1人當 給與	
	人員	增減率 ¹⁾	金額	增減率 ¹⁾	金額	增減率 ¹⁾
産業	5,812	-20.7	35,474	11.9	2,035	41.1
農業 및 林業	300	-45.2	986	-29.9	1,096	27.9
生産業	2,010	-37.4	11,636	-8.1	1,930	46.9
鑛業	99	-28.3	602	6.2	2,027	48.0
에너지·水道	101	-8.2	713	23.1	2,353	34.1
製造業	1,308	-46.2	6,623	-23.1	1,688	42.8
1次商品	271	-48.3	1,496	-19.6	1,840	55.4
投資財	674	-44.3	3,267	-24.5	1,616	35.5
消費財	260	-48.3	1,335	-21.9	1,712	51.1
食·飲料品	103	-46.4	525	-26.4	1,699	37.3
建設業	502	-6.2	3,698	27.4	2,456	35.8
流通·輸送業	1,061	-9.2	6,786	29.8	2,132	42.9
都小賣業	565	-9.3	3,395	29.4	2,003	42.7
運輸·通信	496	-9.0	3,391	30.2	2,279	43.1
서비스業	2,441	1.6	16,066	29.4	2,194	27.3
公共서비스	1,525	-12.8	10,635	11.0	2,325	27.3
民間서비스	916	40.1	5,431	91.4	1,976	36.7

註: 1)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資料: J. Kühl, "East-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FES and KIEP, Seoul, October 2, 1992, p. 19.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生産性 向上을 超過하는 賃金上昇은 生産費用의 增大와 이로 인한 企業의 競爭力 喪失을 초래한다. 이 경우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더욱 資本集約化하게 되는데 현재 東獨地域의 大量失業은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이다. 그 결과 東獨地域 住民 全體의 實質所得이 감소하여 賃金上昇의 購買力效果는 오히려

줄었다. 賃金上昇分이 上品購買보다는 貯蓄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상승에 의한 구매력 효과는 相殺될 수 있다. 특히 '경제·사회·통화동맹' 이후 東獨地域 住民은 增大된 所得을 동독지역 상품의 구매보다는 西歐商品의 購買에 사용했기 때문에 구매력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東獨地域 經濟의 崩壞는 케인즈理論에서와 같은 有效需要의 不足보다는 東獨地域의 生産設備가 老朽化되었거나 現代化되지 못하여 서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한 供給的 要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동독지역의 경우 임금상승이 구매력 효과를 가져올지라도 이것이 雇傭創出로 이어지기에는 供給的 隘路要因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⁶⁾.

라. 統獨과 西獨地域의 賃金政策

西獨地域의 賃金水準은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勞使協約에 의해 결정되므로 統獨은 西獨地域의 賃金水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統獨은 西獨地域의 生産성과 物價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독지역의 賃金政策에 間接的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1990년에 협약된 賃金上昇率은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5.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 전반의 生産性增加率은 3%에 그침으로써 1990년의 임금상승률은 生産성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單位製品當 賃金費用은 1989년의 0.9% 상승에 비해 1990년에는 3%나 상승하였다. 1991년에는 이러한 상승추세가 더욱 심화되어 4.2%나 증가하였다⁷⁾. 이러한 수준은 1992년의 5.4%, 1993년의 4.0%로 유지될 전망이다⁸⁾.

西獨地域의 이와 같이 높은 賃金上昇率은 統獨에 따른 物價上昇

6) 裴眞永, 『統獨 1年の 經濟的 評價와 展望』, 정책연구 92-0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 70.

7) DIW, *Wochenbericht*, 91/46, 1991.

8) 〈表 V-6〉을 참조하기 바란다.

期待가 노사협약시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獨逸聯邦銀行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金融政策을 緊縮的으로 운용하였으나 勞使協商에서는 이러한 점이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큰 폭의 賃金引上案이 타결되었고 이는 獨逸聯邦銀行의 強力한 緊縮基調에도 불구하고 다시 큰 폭의 物價上昇을 야기시켰다.

賃金上昇率은 勞動生産性的 豫想增加率 외에도 物價上昇率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그러나 豫想物價上昇率을 감안, 물가상승보다 임금이 먼저 결정된다는 점에서 賃金引上은 物價上昇을 刺戟할 수 있다. 예컨대, 1990년의 物價上昇率이 2.7%이므로 3%의 勞動生産性增加率을 감안한다면 5.7%의 協約賃金上昇率은 정확히 책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5.7% 이하에서 결정되었다면 물가상승률도 2.7% 이하에 그칠 수 있다.

3. 勞動市場政策

‘경제·사회·통화동맹’과 함께 西獨地域의 社會保障制度가 고스란히 東獨地域에 도입됨에 따라 西獨地域의 제반 失業救濟策도 東獨地域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西獨地域에서는 연방노동청, 각 州의 노동청, 지방의 노동사무소 등에서 失業救濟策을 주관하고 있다.

統合 以後의 大量失業은 ‘경제·사회·통화동맹’ 이전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동서독지역간의 統一條約에서는 이에 대한 特別對策이 마련되어 있다. 失業救濟를 위한 主要 特別對策으로서는 短縮勞動手當 지급, 職業 再教育 및 轉換教育, 公共就業 알선, 早期隱退에 대한 年金支給 등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그 중 勞動力의 供給側面에 관한 것으로는 早期退職補助金制度, 職業訓練, 需要側面에 관한 것으로는 公共就業養成制度和 短期勤勞制度, 其他 手段으로서는 失業補助金制度和 公共職業仲介制度 등을 들 수 있다.

勞働供給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早期退職(정상직일 경우 대개 65세가 퇴직연령임)에 대한 年金支給이다. 早期退職金, 老人年金 등의 명목으로 補助金이 지급되었는데 1992년 7월 말 현재까지 80만명 이상에게 조기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이들은 失業者로 분류되지 않으며 거의 勞動力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의 경우 노동력의 평균 9%가 조기퇴직하였다.

(表 V-9) 勞働市場政策의 手段 및 規模

(單位：千名, %)

	1990		1991		1992 ⁴⁾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 勞 働 力	9,151	100	9,008	100	8,921	100
早期退職勤勞者	200	2.2	555	6.2	800	9.0
訓練 및 再訓練 參與	5	0.1	196	2.2	500	5.6
公共就業養成	5	0.1	183	2.0	400	4.5
短期勤勞者	380	4.2	900	10.0	225	2.5
公共部門 待機勤勞者 ¹⁾	100	1.1	200	2.2	50	0.6
通勤勤勞者 ²⁾	45	0.5	357	4.0	500	5.6
登録 失業者	240	2.6	913	10.1	1,300	14.6
正常就業者 ³⁾	8,176	89.3	5,704	63.3	5,146	57.6

註：1) 대기상태에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임.

2) 동독지역 거주외 서독지역 근로자임.

3)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지원대상이 아닌 취업자임.

4) 1992년 9월 기준임.

資料：J. Kühl, "East-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FES and KIEP, Seoul, October 2, 1992, p. 12.

또 相當 規模의 인원이 職業訓練 및 再訓練에 參與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1992년 7월에 50만 3,700명이나 參與함으로써 1992년 초부터 총 58만 3,100명이 參與하게 되었는데 이 규모는 總勞働供

給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需要側面의 勞動政策 手段으로서 1992년도의 40만명에 대한 公共 就業養成(총노동의 4.5%)과 22만 5,000명에 대한 短縮勞動(총노동의 2.5%)에 대한 手當支給을 들 수 있다.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단축노동 근로자들 중 完全 勤勞時間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한 숫자는 1991년 7월의 약 90만명에서 1992년 7월에는 약 16만명으로 1년 사이에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短縮勞動 制度⁹⁾는 企業의 經營與件이 惡化되면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줄었다. 이는 企業이 短縮勞動者를 위한 社會保障保險 支出費用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갖기 때문인데 단축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보험료가 正常賃金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正常勤勞者들에 비해 높다.

統一條約에 의하면 短縮勞動手當額의 범위는 구서독에서 적용되었던 63~68%의 비율과 동일하나 受惠期間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短縮勞動者는 노사협약에 의해 봉급의 63~68% 이외의 追加手當을 기업측으로부터 받게 되어 實受額은 거의 봉급의 90%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화학, 금속 및 전자산업의 경우 단축노동자는 노사협약에 따라 기업측으로부터 봉급의 22%를 추가수당으로 받게 되어 실수령액은 봉급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¹⁰⁾.

9) 短縮勞動制度는 多數의 勞動者가 公式的인 失業者로 지정되었을 때 발생하기 쉬운 政治·社會的 問題와 勞動市場 攪亂과 같은 經濟的 問題 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短縮勞動者란 休業이 불가피할 경우 就業狀態를 維持하면서 勤務時間을 10% 이상 줄여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短縮勞動者에 대한 手當은 休業을 하지 않았을 때 받은 가장 最近의 給與에서 法定稅金을 제외한 純額基準의 63% 내지 68% 수준에서 결정된다. 68%의 경우는 1名 以上の 扶養家族이 있을 때의 지급기준이다. 短縮勞動 手當의 受惠期間은 최고 6개월이나 노동청의 규정에 의해 최고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철강산업과 같이 1987~89년 3년간 特別措置에 따라 단축노동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Gabler Wirtschaftslexikon*, Wiesbaden: Gabler Verlag, 1988, p. 3114).

10)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Auf dem Wege zu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 90/91, November 1990, p. 76.

그러나 東獨地域의 勞働者나 企業 모두가 失業保險料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失業手當이나 短縮勞働手當은, 西獨地域의 勞働者와 企業이 납부한 失業保險料가 연방노동청을 통해 동독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社會保障機構를 통한 移轉支出도 社會保障機構 全體의 赤字를 초래함으로써¹¹⁾ 國家財政의 큰 壓迫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측이 부담하는 22%의 追加手當은 실제로는 거의 일을 하지 않는 데도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企業으로서도 큰 資金壓迫 要因이 되고 있다.

독일정부의 東獨地域 經濟再建을 위한 支援對策은 雇傭創出보다 投資促進 中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投資促進策에 의한 資本蓄積이 生産과 雇傭創出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게다가 기존의 실업수당, 단축노동수당, 직업훈련, 조기퇴직수당 등은 失業者 또는 豫想失業者의 生計維持에 필요한 조치들이며 雇傭創出 등과 같은 積極的인 失業救濟策은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雇傭解雇 속도가 신규투자예 의한 雇傭創出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勞働市場이 그 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雇傭創出을 위한 政府의 直接的인 介入 없이는 大量失業에 따르는 위기를 제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獨逸政府는 東獨地域의 經濟復興策과 함께 雇傭創出을 위한 措置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정부의 積極的 雇傭創出 措置로서 公共就業알선(ABM;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의 강화를 들 수 있다¹²⁾. ABM 措置는 실

11) 자세한 내용은 第Ⅶ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Gemeinschaftswerk "Aufschwung-Ost"*, 1991. 3, p. 38. ABM 措置는 州, 市, 郡, 團體 또는 敎會가 주도하며 이러한 ABM 修行者는 정부지원의 반대급부로서 事業結果를 반드시 남길 필요는 없다. ABM 사업에서 소요되는 材料費用에 대해서도 補助金の 2배까지 無利子融資를 받을 수 있고 용자일로부터 2년간은 償還負擔이 전혀 없으며 그 후부터는 매년 용자액의 4%를 상환하기만 하

업대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直接的인 失業救濟策이다. 따라서 失業對象者는 우선 기존업체에서 단축노동자로서 근무하다가 ABM 措置에 따라 政府支援 事業體에서 계속 일자리를 갖게 되며 여의치 않을 경우 公式失業者로서 登錄하게 된다. 이 過程, 즉 단축노동자로서의 근무과정과 ABM에 의한 취업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職業教育 또는 職業轉換 教育을 받아 再就業의 기회를 갖게 된다¹³⁾.

ABM 措置는 당초 1991년 6월 30일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東獨地域再建對策'의 일환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ABM 措置에 의한 就業者는 1991년 6월 30일까지는 賃金の 90%만을 지급받았으나 延長措置와 함께 100%를 지급받게 되었다¹⁴⁾.

東獨地域의 雇傭事情이 더욱 惡化될 경우 生産보다 雇傭을 主目的으로 하는 雇傭企業(Beschäftigungsgesellschaft)의 設立과 賃金補助金(Lohnsubvention: wage subsidy) 支援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면 된다. 그러므로 償還期間은 27년이다. 既存 ABM 制度에 의하면 6개월의 失業期間이 있어야만 ABM으로 취업될 수 있으나 東獨地域의 경우에는 失業期間이 없이 即時 就業될 수 있으며 無能力 失業者도 ABM으로 취업될 수 있다. ABM 취업자는 주택, 도로, 운하, 교통, 통신, 사회, 복지시설 등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復舊와 擴張 등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서의 生産活動은 失業手當과는 달리 東獨地域 經濟의 構造調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M이 失業者 問題의 解決이라는 當面課題 외에도 東獨地域의 經濟回復에 조금이나마 寄與하기 위해서는 地方行政部署나 團體 외에도 企業이 ABM 수행자로서 ABM 政策에 積極 參與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老朽施設이나 環境汚染 誘發施設의 除去, 工場附屬 建物の 補修와 같은 單純作業에 기업은 ABM 就業者들을 투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일부 기업은 이를 실천하고 있거나 이러한 雇傭計劃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ABM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企業, 地方政府 및 其他 團體들이 함께 모여 ABM 就業者가, 生産의 이면에서도 東獨地域의 經濟再建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ABM 措置로 인한 資源의 非效率的 配分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東獨地域의 經濟回復에 있어서의 副作用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ABM 措置를 限時的으로 運營해야 하고 受惠者 數도 制限해야 할 것이다.

13) *Ibid.*, p. 34.

14) *Ibid.*, p. 38.

적극적인 노동정책 수단에도 불구하고 失業者는 급격히 증가, 1990년은 24만명, 1991년은 91만 3,000명이었고, 1992년은 130만 명으로서 公式失業率이 15%, 男性失業率은 10%, 女性失業率은 20%이다. 失業人口의 3분의 2는 生産·技能職 勤勞者들이다¹⁵⁾.

4. 失業과 勞働政策 手段의 財政費用

1992년에 각종 勞働政策 手段을 통해 지출된 財政規模는 〈表 V-10〉

〈表 V-10〉 失業과 勞働政策 手段의 財政費用¹⁾(1992)

(單位: DM, 千名, 億DM)

	月平均 1人當 受 惠 額	年 平 均 受 惠 人 員	年 間 總 費 用
登録失業者 支援 ²⁾	309
失業手當	2,332	9,380	262
失業補助	2,256	1,000	27
基礎生計費 支援	2,703	630	20
短期勤勞者 支援	1,879	2,800	63
訓練 및 再訓練	3,423	2,950	121
公共就業養成	2,219	4,000	107
早期退職 I (早期停年)	2,559	2,940	90
早期退職 II (老人年金)	2,689	4,500	145
計	835

註: 1) 추정치임.

2) 1992년 현재 125만명임.

資料: J. Kühl, "East-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FES and KIEP, Seoul, October 2, 1992, p. 16.

15) J. Kühl, "East-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rganized by FES and KIEP, Seoul, October 2, 1992, p. 13.

과 같다. 즉, 失業手當과 早期退職에 대한 財政支出 規模가 각각 262억DM와 235억DM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職業訓練과 公共就業 養成에 대한 支出로서 각각 121억DM와 107억DM를 기록하고 있다.

財政費用의 4분의 3 정도가 所得支援을 위한 消費的 勞動政策 手段에 활용된다. 職業訓練과 公共就業 養成만이 소비적 노동정책 수단이 아닌 人的資本 投資 및 直接的인 雇傭創出 手段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밖의 정책수단들은 消費的 勞動政策 手段들로 보여진다.

5. 勞動市場政策과 政策代案들에 대한 評價

가. 經濟活性化 및 勞動市場政策 手段으로서의 賃金補助金 支給 方案

1) 賃金補助金과 投資補助金

東獨地域 經濟를 回復시키기 위해 政府의 財政 金融支援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舊東獨의 經濟的 沒落이 어디에 기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간적으로 보아 短期的 處方이 필요한지 아니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長期的·動態的 處方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政治的 決定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生産要素費用, 즉 勞動費用과 資本費用 中 어디를 重點的으로 支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일반적으로 勞動費用의 減少를 통한 支援을 주장하는 견해는 동독 지역 경제의 붕괴를 재촉하고 그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을 生産性 增加率을 웃도는 賃金上昇率에 따른 企業競爭力 喪失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東獨地域의 經濟回復을 위해서는 賃金上昇 抑制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통합으로 인한 勞動力的 自由로운 移動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賃金補助金으로 企業의 賃金費用 壓迫을 덜어 주는 것이 東獨地域의 經濟回復에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와 같은 失業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도 賃金支援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버클리 대학교의 학자들이 개발한 「버클리모델」(Berkeley model)¹⁶⁾이 이에 해당하며 그 밖의 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이에 반해 投資補助金 支援을 옹호하는 견해는 현재 동독지역 경제가 붕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技術 및 設備投資 側面에서 찾고 있다. 舊東獨 體制下의 모든 산업은 高級技術이 體化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設備마저도 老朽化되었기 때문에 製品의 質도 서방제품에 크게 뒤지는 한편 大量生産 體系도 구비하지 못해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舊東獨 企業의 設備들은 서독지역 기준에서 볼 때 50~70%가 廢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그러므로 東獨地域의 經濟復興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舊東獨 企業의 老朽設備를 代替 또는 現代化하고 新規投資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貯蓄과 이를 위한 投資活性化를 위해서는 賃金補助金보다 投資補助金 支援이 優越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賃金補助金

「버클리모델」에 의하면 舊東獨 企業에게 賃金水準이 勞動生産性和 같을 정도로 賃金補助金を 支援해 주면 기업에게 生産費用의 壓迫을 덜어주어 기업의 競争力이 回復되고 이에 따라 大量失業도 防止할 수 있다. 이 모델은 政府部門과 農業部門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해 賃金費用의 75%를 賃金補助金으로 지급할 경우 全體

16) G. A. Akerlof and others, *East-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1991.

17) E. Kantzenbach, "Lohnsubvention für Arbeitsplätze," *Wirtschaftsdienst*, 91 /7, 1991, p. 326.

18) *Handelsblatt*, January 19, 1992.

노동력의 약 78%에 대해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賃金補助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8%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델은, 補助금이 永久化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賃金補助금이 限時的으로 支援되어야 하며 最終 支援時點에는 支援規模가 거의 零에 가깝도록 지원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보조금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 對象企業은 設備의 現代化와 經營合理化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보조금이 없어 大量失業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지출해야 할 막대한 失業手當을 代身하여 賃金補助금이 支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表 V-11) 「버클리모델」에 따른 賃金補助金の 雇傭創出效果와 財政負擔規模(1992)

(單位：千名, 億DM)

	規 模
雇 傭 效 果	970
失業人口 減少效果	530
短縮勞動人口 減少效果	440
總 賃 金 補 助 金 費 用	1,650
社會保障制度 支出節減	160
稅收增大	70
失業保險機構 支出節減	80
純 賃 金 補 助 金 費 用	1,340

註： 추정치임.

資料：DIW, *Wochenbericht*, 91/26-27, 1991, p. 359.

그러나 DIW연구소는 이러한 「버클리모델」에 의한 賃金補助금이 短期的으로는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費用負擔 輕減效果가 있으나 賃金補助金の 限時性에 대한 강한 疑問과 政府의 財政支援 能力의 限界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¹⁹⁾. 이 모델에 따른 賃金補助金 支

援은 製造業部門뿐만 아니라, 農業 및 政府部門을 제외한 全部門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財政的으로 뒷받침하기 힘들다는 것이 DIW연구소의 견해이다. DIW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버클리모델」에 따라 임금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1992년 한 해에만 1,340억DM가 소요되며 100만명 정도의 勞動力을 追加로 雇傭시키는 효과를 지닌다²⁰⁾. 이 규모는 同年 西獨地域이 東獨地域을 支援하기 위한 全體 支出規模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²¹⁾.

3) 投資補助金

많은 經濟學者들과 經濟部 內 學術諮問團은 投資補助金 支援方案을 옹호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정부의 동독지역 경제부흥을 위한 財政支援 方案도 賃金補助보다는 投資補助를 위주로 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주요 投資補助金 支援方案은 다음과 같다²²⁾. 1992년 6월 30일까지 設備投資額의 12%(1992년 7월 1일~1994년 말까지는 8%)를 稅額控除한다. 1995년 6월까지, 企業創立의 경우 최고 투자액의 23%, 企業擴張의 경우 최고 투자액의 20%, 合理化 投資의 경우 최고 투자액의 15%,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경우 최고 투자액의 90%까지 지원한다. 1994년 12월까지, 生産設備에 대해 50%의 特別減價償却法을 적용한다. 1992년 12월까지, 財產稅(Vermögenssteuer) 및 資本去來稅(Kapitalverkehrsteuer)를 免除하고 中小企業에 대한 去來收益稅(Gewerbeertragsteuer)를 減免한다. 또한 유럽 復興計劃(European Recovery Program), EC地域開發基金(EC Regional Development Fund), 獨逸調整銀行(Deutsche Ausgleichsbank), 再建銀行(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등으로부터 低

19) DIW, *Wochenbericht*, 91/36, 1991, pp. 512~513.

20) *Ibid.*, p. 513.

21) 第Ⅷ章과 비교하기 바란다.

22) Bunde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 *Die Neue Bundesländern als Wirtschaftspartner*, Köln, 1991, pp. 167~179.

利子 信用貸出이 제공된다.

投資補助金 支援을 강력히 옹호하는 견해는, 투자보조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임금보조금 지원의 경우와 같이 雇傭創出 등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投資補助金이 生産段階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産業間의 前後方 聯關效果 등으로 加速的인 投資와 이에 따른 大規模 雇傭創出이 기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단기적인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資本蓄積을 통해 競爭力 있는 生産設備 投資基盤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納稅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장은 임금보조금이 투자보조금보다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으나 長期的으로는 賃金補助金을 통한 기업지원이 투자보조금 지원보다 納稅者의 負擔을 加重시킴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賃金補助金이 지원될 경우 大量失業이 防止됨으로써 서독 지역의 東獨地域에 대한 移轉支出이 줄게 되며 따라서 統獨 初期에는 納稅者의 負擔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보조금 지원을 통한 동독지역의 경제회복이 투자보조금 지원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長期的으로는 賃金補助金 支援이 투자보조금 지원보다 納稅者의 負擔을 加重시키게 되기 쉽다.

4) 賃金補助金과 投資補助金의 並行 方案

그러나 현재 각종 제도가 미비하고 社會主義의 遺産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 市場機能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東獨地域의 經濟與件下에서 投資支援制度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短期的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賃金補助金이 없이는 信託管理廳 소속의 많은 企業들은 生存 可能性이 희박하므로 투자보조금에 의한 자본축적보다 賃金補助金에 의한 企業의 正常化가 오히려 더 效率的일 수도 있다²³⁾.

최근 DIW研究所의 보고서에서도 임금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이 混

用된 形態의 補助金 支援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案도 임금 보조금보다는 投資補助金에 우선하고 있으나 賃金補助金의 重要性도 많이 감안하고 있다. 賃金補助金에 대해서는 限時性和 支援規模의 漸進的 減縮, 投資補助金에 대해서는 限時性を 적용하는 등, 이를 통해 補助金의 濫用을 防止하고자 한 것이다²³⁾.

나. 勞動力 移動(移住)의 制限

東獨地域 企業들의 國際競爭力이 급속히 약화된 원인으로서는 生産性增加率을 웃도는 賃金上昇率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데 이는 舊東西獨의 國境開放과 勞動力의 自由로운 移動이 가져다 준 필연적인 귀결이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國境統制에 의한 勞動力 移動의 制限을 통해 賃金上昇을 抑制하는 것이 하나의 政策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인 1989년에 이미 국경이 개방되어 구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고 거주이전도 곧 가능하게 되었다. 일단 허용된 자유를 다시 제한한다는 것은 政治的으로 實現 不可能했기 때문에 統一過程中에는 勞動力 移動의 制限에 대한 論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韓半島의 경우에는 勞動力 移動의 制限이 政策代案이 될 수 있다. 이 政策代案이 意味가 있음은 EC의 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EC는 '關稅同盟'에서 출발하여 商品市場을 개방한 후 상당한 시간을 두고 資本市場과 勞動市場을 개방하였다. 南北韓 統合의 경우 勞動力 移動의 統制를 당분간 維持함으로써 北韓地域에 대한 投資誘致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는 低賃金의 利點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勞動力에 대한 國境統制가 없을 경우 남북한간의 賃金隔差가 줄어들고 北韓地域에 대한 投資의 利點이 사라지게 된다.

23) Kantzenbach, *op. cit.*, p. 327.

24) 裴眞永, 前揭書, p. 82.

政治的 反對를 最小化하고 國民의 自由를 最大한 保障하기 위해 통합 이후 勞動力 移動 制限期間을 5년 정도로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老弱者 및 年少者의 移動은 自由롭게 하며 勞動年齡層이라고 할지라도 연수교육, 관광 등의 목적을 지나는 경우에 한해 방문을 허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北韓住民의 南韓移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反對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또한 노동력 이외에 資本 및 商品의 교류는 제한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支援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綜合評價

體制統合 以後에 발생할 수 있는 大量失業은 勞動市場政策 手段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이는 民間投資 및 綜合的인 經濟活性化 政策으로 再産業化와 産業構造 調整이 이루어지면서 同時에 달성될 수 있는 長期課題이다.

理論的으로는 통합되는 두 국가 사이의 國境統制를 잠정적으로 延長하여 勞動力의 移動을 制限함으로써, 吸收統合되는 地域의 賃金上昇이 加速化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賃金上昇이 生産性向上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속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東獨地域 經濟活性化의 核心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國境統制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서독지역간의 實質賃金 隔差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實質的인 反對給付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勞組에 대한 自制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그 대안으로서는 企業民營化 方式을 從業員參與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종업원들이 賃金引上 要求를 自制하는 代價로 企業의 持分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投資補助金과 賃金補助金の 상대적 優越性을 비교해 본다면, 長期的으로는 投資補助金 지원이 賃金補助金 지원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으나 短期的인 어려움들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長期的인 觀點의 經

濟回復도 어려우므로 이 두 가지 지원제도를 並行하는 것이 勞動市場 問題의 解決에 필요하다.

VI. 巨視經濟政策

1. 統一 後 巨視經濟指標의 變化

가. 獨逸의 經濟成長率 推移

獨逸聯邦統計廳은 1992년 獨逸의 實質GDP成長率을 1.9%, 西獨地域 및 東獨地域의 실질GDP성장률은 각각 1.5%와 6.1%로 발표했다¹⁾. 이와 같은 西獨地域의 實質GDP成長率은 1990년의 5.1%, 1991년의 3.7%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1980~90

〈表 VI-1〉 獨逸의 經濟成長率 推移

(單位: %)

	1990	1991	1992			1993. 1/4
			獨逸	西獨地域	東獨地域	西獨地域
實質 GDP	5.1	3.7	1.9	1.5	6.1	-3.2
實質 GNP	4.9	3.6	1.3	0.8	6.4	-3.7
消費支出	5.0	3.5	-	0.9	5.1	-1.0
公共支出	2.5	0.5	-	2.5	5.7	-1.4
設備投資	13.5	9.0	-	-2.1	13.7	-14.8
建設投資	5.0	4.0	-	5.5	30.4	-0.7
輸 出	11.5	12.5	-	3.4	17.8	-5.4
輸 入	12.5	12.0	-	2.8	12.3	-6.3

註: 전년동기 대비임. 1990년, 1991년은 구서독 기준임.

資料: 韓國銀行 調査第1部, 「주간해외경제」, 1993, p. 8.

1) 獨逸聯邦統計廳은 GNP보다는 GDP가 國內의 生産活動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1992년부터는 GDP를 重視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년간 舊西獨의 平均GDP成長率이 1.9%였음에 비하면 西獨地域의 成長率 1.5%는 그다지 낮은 수치는 아니다. 다만 1990년과 1991년에 東獨地域 特需의 영향으로 GDP成長率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3년 들어서는 成長率에 있어 커다란 變化를 보이고 있다. 高金利의 持續 등으로 1992년의 設備投資가 대폭 감소(-2.1%)함으로써 1993년의 成長率이 대폭 낮아질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1992년에는 消費支出增加率도 둔화되어 전년보다 크게 낮은 0.9%를 기록하였다. 東獨地域은 建設 및 設備投資를 중심으로 投資需要가 확대되면서 1992년에 6.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獨逸聯邦統計廳은 1993년 1/4분기중 西獨地域의 實質GDP成長率이 전년 동기 대비 -3.2%(전기 대비 -1.5%)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992년까지의 安定的 低率成長 趨勢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變化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75년 1/4분기의 -3.5% 이후 가장 큰 폭의 減少勢이다. 이와 같이 西獨地域 經濟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設備投資가 14.8%나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需要部門이 減少勢를 나타내었기 때문인데 이는 統一 以後의 企業家 投資마인드를 대변한다. 또한 같은 기간중 西獨地域의 實質GDP가 전기 대비 1.5% 감소하여 1992년 2/4분기 이후 4분기 동안 계속 減少 또는 停滯狀態를 보여 왔다. 獨逸의 經濟沈滯가 이와 같이 우려되는 가운데 現 景氣局面에 대한 政策當局者의 診斷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렉스로트」(Rexrodt) 독일 경제부 장관은, 현재 西獨地域의 景氣沈滯가 지난 30년 이래 最惡의 상태인바 東獨地域의 經濟再建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景氣回復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抑制, 財政赤字 減縮 등을 통해 金利引下 與件을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슐레징거」(Schlesinger)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동 기간의 產業生産이 지난 1973~75년 및 1980~82년과 같은 경기침체기의 産業生産보다는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서독지역 경제의 현 상황을 지나치게 悲觀함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싱」(Issing) 독일연방은행 이사는, 금번 서독지역 경제의 成長率 急落은 1992년 1/4분기의 異例的인 景氣好況, 4/4분기 부가가치세 인상(1993년 1월 시행) 이전의 一時的인 民間消費支出 擴大 등으로 다소 歪曲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獨逸聯邦統計廳은 獨逸의 GDP에서 차지하는 西獨地域과 東獨地域 GDP의 比重을 각각 92.3%, 7.7%(GNP 기준으로는 92.0%, 8.0%)로 발표하였다.

나. 東獨地域의 經濟狀況

東獨地域 經濟는 GDP 기준으로 볼 때 1991년 중반에 最低點에 도달했다가 점차 回復局面에 접어들고 있으나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年 末에 비하면 그 經濟規模는 아직도 당시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製造業部門은 1992년 2/4분기의 생산량이 1990년 1/4

〈表 VI-2〉 東獨地域의 産業別 附加價值生産

(單位: 億DM)

	1990		1991		1992			
	1/4	3/4	1/4	3/4	1/4	2/4	3/4	4/4
總附加價值生産	792	586	454	519	477	512	546	558
農林水産業	10	25	-2	20	3	7	23	7
鑛工業	351	236	172	175	168	178	190	201
에너지·鑛業	71	59	61	49	44	41	46	52
製造業	223	108	64	70	69	73	78	85
建設業	57	70	47	56	56	64	67	65
貿易 및 交通	172	113	77	85	78	89	92	104
서비스業	114	86	102	119	122	127	131	128
政府活動	144	126	105	120	98	104	106	110
GDP	810	584	425	487	452	480	512	531

註: 총부가가치생산은 GDP에서 판매세와 관세를 제한 부분임.

資料: DIW, *Wochenbericht*, 93/13, 1993, p. 132.

분기의 3분의 1 수준인바, 전반적으로 西獨地域 製品에 대한 價格競爭力을 갖춘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東獨地域의 地方市場에 유통되는 식료품 및 기호품 산업과 建築景氣에 힘입은 건축 자재 산업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建設業과 서비스業部門은 생산량이 1992년 2/4분기 현재 1990년 1/4분기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經濟構造로의 調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 西獨地域의 經濟狀況

서독지역의 産業生産은 1992년 들어 전년 대비 -1.5%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0年來 最初の 마이너스 成長을 경험하였으며 1993년에는 -7.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表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西獨地域의 實質GDP成長率은 1.9%, 實質GNP成長率은 1.3%로서 1991년 중반 統一特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西獨地域의 經濟成長은 急激히 鈍化되기 시작했다. 1992년의 경제성장은 대부분이 1/4분기에 이루어졌고 2/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成長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成長勢의 萎縮은 1991년 12월과 1992년 7월에 실시된 대폭적인 金利引上和 物價上昇率을 상회하는 賃金上昇率로 企業의 投資가 減退되었고 獨逸의 高金利政策으로 인한 마르크貨의 強勢가 獨逸製品의 輸出競爭力을 弱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表 VI-3> 西獨地域의 産業生産 推移¹⁾

(單位：%)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年間	11	12	年間 ²⁾	1	2
産業生産增加率	3.6	4.9	5.2	3.0	-1.5	-1.7	-2.1	-7.0	0.6	-1.0

註：1) 전년동기 대비임.

2) Ifo연구소의 전망치임.

資料：韓國銀行 調査第1部, 「주간해외경제」, 93/14, 1993, p. 10.

1992년 9월의 通貨危機 이후 파운드貨와 리라貨의 유럽換率調整機構(ERM) 脫退 및 동년 11월의 페세타貨 및 에스쿠도貨의平價切下로 DM貨는 主要 유럽通貨에 비해 약 7% 정도平價切上됨으로써 輸出競爭力은 더욱 弱化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國內의 企業環境이 劣惡해짐에 따라 西獨地域의 主要 企業들은 國內投資를 制限함과 동시에 海外로 눈을 돌리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 失業率 및 物價上昇率 推移

經濟沈滯로 인한 雇傭事情의 惡化로 1992년 12월 말 현재 西獨地域의 季節調整 失業人口는 12만명(비계절조정 실업인구는 14만명)이 증가하여 總失業人口가 200만명대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失業率은 6.5%로 상승하였다. 東獨地域의 失業率은 1992년 12월 말을 고비로 점차 하락하였다가 1993년 들어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產業基盤의 回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政府의 雇傭維持政策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西獨地域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은 1992년에 4% 내외를 맴돌다가 1993년 들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5~92년 8년간의 평균 2.1% 정도보다는 다소 높으나 ‘經濟·社會·通貨同盟’ 과정에 잠재되었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要因들을 고려할 때

〈表 VI-4〉 獨逸의 失業率 推移

(單位: %)

	1992				1992		1993	
	1/4	2/4	3/4	4/4	11	12	1	2
西 獨 地 域	5.6	5.8	6.0	6.3	6.4	6.5	6.7	6.8
東 獨 地 域	—	14.4	14.2	13.5	13.4	13.5	14.7	14.5

資料: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93/3, March 1993, p. 7*.

〈表 VI-5〉獨逸의 消費者物價上昇率 推移

(單位：%)

	1992				1992		1993	
	1/4	2/4	3/4	4/4	11	12	1	2
西 獨 地 域	4.3	4.5	3.4	3.6	3.7	3.7	4.4	4.2
東 獨 地 域	15.6	14.2	12.9	2.8	2.6	2.8	8.9	-

資料：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93/3, March 1993, p. 7*.

獨逸聯邦銀行의 인플레이션 抑制政策이 대체로 成功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東獨地域의 消費者物價上昇率は 1992년 3/4분기까지 14%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동년 4/4분기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東獨地域 勞組의 賃金引上 要求가 누그러든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마. 展 望

獨逸 經濟部の 『年次經濟報告書』에 따르면 1993년 東獨地域의 實質GDP成長率は 建設投資 등 經濟再建을 위한 投資支出의 擴大에 힘입어 5.0~7.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西獨地域은 景氣不振

〈表 VI-6〉獨逸經濟의 展望(1993)

(單位：%)

	獨 逸	西 獨 地 域	東 獨 地 域
實質GDP成長率	0.0	-1 ~ 0.0	5.0 ~ 7.0
物 價 上 昇 率	4.0	3.5	6.0 ~ 8.0
失 業 率	9.0	7.0 ~ 7.5	15.0 ~ 16.0
賃 金 上 昇 率	3.5 ~ 4.5	2.5 ~ 3.0	10.0 ~ 12.0

註：독일 경제부의 전망치임.

資料：韓國銀行 調査第1部, 「주간해외경제」, 93/7, 1993, p. 4.

및 失業增加에 따른 消費萎縮 등으로 $-1.0\sim 0.0\%$ 정도에 머물러 獨逸全體의 實質GDP成長率は 0.0% 에 그칠 전망이다. 物價上昇率을 볼 때 西獨地域은 賃金引上抑制, 財政健全化의 進展 등에 힘입어 3.5% 로 낮아지겠으나 東獨地域이 $6.0\sim 8.0\%$ 에 달해 獨逸全體로는 전년 수준(4.2%)을 약간 밑도는 4.0%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失業率은, 國內需要의 鈍化에 따른 産業生産의 萎縮 때문에 獨逸全體로 보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9.0%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經濟沈滯의 原因

東獨地域의 急激한 賃金上昇과 함께 統一費用 調達을 위한 財政赤字로 獨逸聯邦銀行이 高金利政策을 維持함에 따라 統一獨逸의 經濟는 沈滯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資本市場에서의 統一費用 調達は 利率 上昇을 야기, 民間投資를 저해함으로써 經濟成長率의 下落을 가져왔다. 附加價値稅 등의 인상을 통한 統一費用 調達과 함께 賃金引上은 物價上昇을 야기함으로써 經濟의 不安定을 초래했다. 또한 東獨地域의 經濟構造調整 過程에서 生産性 向上 수준을 넘어선 賃金引上으로 企業의 競爭力이 減退되었다.

현재 東獨地域 企業의 民營化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獨逸의 資本市場 規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企業이 民營化되어야 하며, 설비·건물 등에 대한 財產權 重複, 財產權 記錄의 不充分 등으로 財產權 解決이 遲延되고 있고 수많은 財產權 請求訴訟으로 인한 行政積滯와 非效率的 行政機構 등으로 시간 및 비용에 있어서 浪費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독지역 경제의 신속한 전환에 반하는 投資障礙 要素가 상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社會間接資本의 극심한 부족, 交通·遞信 施設의 열악, 行政能力 및 經驗의 부족 등 投資與件이 未備되어 있

으며 東獨地域 資本財의 老朽化 및 주력시장인 東유럽市場의 崩壞 등으로 제품시장의 개척이 어려워지고 있음과 아울러 東獨地域 消費者와 企業들은 西獨地域 製品을 選好하는 경향이 있다.

3. 統一 後 獨逸의 財政政策

구동서독간 經濟的 統合 및 政治的 統一이 예상 외로 급속히 진전된 데다가 東獨地域의 產業競爭力도 예상 외로 취약하여 經濟統合以後 東獨地域 經濟는 急速히 崩壞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東獨地域 經濟를 支援하기 위해 莫大한 財政資金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獨逸 政府部門의 財政赤字 規模는 1989년의 54억DM에서 1990년의 1,240억DM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1

〈表 VI-7〉 獨逸政府의 財政赤字 累積現況

(單位：億DM)

	1980	1989	1990 (A)	1991 (B)	1992 (C)	B-A	C-B
聯邦政府	2,300	4,910	5,420	6,020	6,530	600	510
州政府	1,360	3,080	3,270	3,490	3,740	220	250
西獨地域	1,360	3,080	3,270	3,410	3,550	140	140
東獨地域	—	—	—	80	190	80	110
基礎自治團體	850	1,100	1,130	1,220	1,350	90	130
西獨地域	850	1,100	1,130	1,170	1,200	40	30
東獨地域	—	—	—	50	150	50	100
ERP基金	30	70	100	170	250	70	80
獨逸統一基金	—	—	200	510	750	310	240
負債清算基金	—	—	280	330	400	50	130
計	4,540	9,160	10,400	11,740	13,020	1,340	1,340

資料：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각 연도.

DIW, *Wochenbericht*, 91/38, 1991, p. 547.

1,340억DM로 소폭 늘었고 1992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1,280억DM에 머물렀다.

이리하여 西獨地域 政府는 當初 增稅를 통하지 않고서도 統一費用의 調達이 가능하다고 천명했었으나 1991년 3월 8일 增稅措置를 단행하였다. 個人 및 法人所得에 대해 1991년 7월부터 1년간 7.5%의 附加價值稅를 한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220억DM의 세수증대 효과를, 石油稅·담배稅·保險料 등을 인상함으로써 매년 160억DM의

〈表 VI-8〉 獨逸 財政再建計劃의 主要內容

	實施時期	主 要 內 容
增 稅	즉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세율 30%)를 외국투자로부터 이전된 내국인의 이자수입에 대하여도 확대전용
	1995. 1	1991년 7월에서 199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할증부가제(부가율 7.5%) 재도입
	1994. 1	도로통행세 신설
	1994. 1	유류세 인상
	1993. 7	보험세(Versicherungsteuer)세율 인상(10% → 12% ; 1995년 이후 15%로 추가 인상)
	1995. 1	개인재산세(Vermögensteuer) 인상(0.5% → 1%)
政 府 支 出 削 減	즉 시	여타 부문의 지출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신규 지출은 1994년 말까지 중단
		농업 및 석탄채굴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실업수당 3% 삭감(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 삭감)
		외국난민에 대한 지출 25% 삭감

資料：韓國銀行 調査第1部, 「주간해외경제」, 93/1~2, 1993, p. 7.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했다²⁾. 또 서독지역 정부는 1993년부터 附加價值稅를 14%에서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長期的으로 獨逸의 財政赤字는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적인 재정적자 운용은 公共部門의 資本市場 借入으로 利率率 上昇을 자극함으로써 投資環境을 惡化시킬 뿐 아니라 國民經濟에도 負擔을 가중시켜 東獨地域의 經濟再建에 障礙要因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獨逸 聯邦財務部는 統獨 以後 惡化된 財政의 健全化를 도모하기 위해 財政再建計劃(federal consolidation programme)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이는 增稅와 政府支出 削減으로 聯邦政府 및 公共部門의 財政赤字 減縮을 도모함을 골자로 한다.

獨逸經濟의 回復을 위해서는 獨逸聯邦銀行의 利率率 緩和 誘導(인플레이션 위험의 제거가 전제됨), 公共借入 抑制를 통한 民間投資의 活性化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財政赤字의 縮小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表 VI-9〉 獨逸 政府財政의 展望

(單位：億DM)

		1992	1993	1994	1995	1996
聯邦政府	歲 出	4,270	4,400	4,700	4,890	5,040
	歲 入	3,860	3,870	4,240	4,330	4,560
	收 支	-410	-530	- 460	-560	-480
公共部門	歲 出	10,600	11,040	11,520	12,130	12,530
	歲 入	9,410	9,700	10,440	11,140	11,780
	收 支	-1,190	-1,340	-1,080	-1,000	-750

資料：韓國銀行 調查第1部, 「주간해외경제」, 93/1~2, 1993, p. 8.

2) 자세한 내용은 第七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 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公共部門 赤字規模는 1993년에 1,335억DM(GNP 대비 4.5%)로서 頂點에 달한 뒤 1995년에는 1,000억DM(GNP 대비 3%)로 줄어들 전망이다.

4. 統一 後 獨逸의 金融政策

가. 利子率政策

통화통합 이후 獨逸은 通貨膨脹에다가 統獨特需에 따른 景氣過熱, 賃金上昇 등이 가세함으로써 극심한 物價上昇 壓力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獨逸聯邦銀行은 通貨統合 以後 다섯 차례에 걸쳐 金利引上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자율 및 총통화량 조정 등을 이용한 금융정책의 목표인 物價安定과 景氣活性化 중 獨逸聯邦銀行은 독일의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物價安定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獨逸聯邦銀行은 物價安定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高金利政策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냉각된 경기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國際輿論과 EC國家 및 美國 등의 壓力으로 인해 1992년 9월 小幅의 金利引下를 시행한 후 1993년 3월 18일까지 세 차례의 金利引下 조치를 단행하였다.

〈表 VI-10〉 獨逸의 利子率 推移¹⁾

(單位: %)

	89.10	90.11	91.2	91.8	91.12	92.7	92.9	93.2	93.3
再 割 引 率	6.00	6.00	6.50	7.50	8.00	8.75	8.25	8.00	7.50
롬바르트金利 ²⁾	8.00	8.50	9.00	9.25	9.75	9.75	9.50	9.00	9.00

註: 1) 연율 기준임.

2) 독일연방은행의 민간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담보대출금리임. 재할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추가대출해 주는 금리로서 벌과금이 가산되므로 재할인금리보다 높음.

이러한 金利引下 조치는, 獨逸聯邦銀行의 繼續的인 金利引上에 따라 여타 EC國家들이 ERM 內의 DM貨 對比 換率變動幅을 維持하고자 경기침체를 무릅쓰고 金利引上을 거듭해 왔으나 이에 한계를 느껴 獨逸의 金融緩和를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獨逸聯邦銀行의 高金利政策은 物價安定은 물론, 海外의 流動資金을 유인하여 국내재원만으로는 부족한 統一費用을 충당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에서 나온 것인바, 資本輸出國이었던 獨逸은 統一 以後 資本輸入國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DM貨가 더욱 강세를 보임으로써 獨逸의 經常收支는 흑자에서 赤字로 반전되었다.

나. 通貨量政策

한편 獨逸聯邦銀行은 1990년의 總通貨 管理目標를 M₃ 기준으로 4~6%(서독지역 기준)로 정하였고 1991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독일연방은행의 M₃ 概念은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정기예금(4년 미만) 및 법정통지예금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중반부터 物價가 急騰하고 이런 추세가 199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자 1991년 7월 독일연방은행은 緊縮政策의 일환으로 總通貨管理 目標를 3~5%로 하향조정하였다. 1991년 말에는 이러한 관리목표가 재수정되어 1992년에는 3.5~5.5%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表 VI-11〉 獨逸의 國際收支 動向

(單位: 億DM)

	1989	1990	1991	1992
經常收支	1,080	761	-329	-391
貿易收支	1,346	1,054	219	328
資本收支	-1,356	-901	144	1,348

註: 1990년 7월 이전은 구서독 기준, 그 이후는 통일독일 기준임.

資料: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93/3, March 1993, p. 85*.

〈表 VI-12〉獨逸의 總通貨(M₃) 推移

(單位 : 10億DM, %)

	目標規模(A)	(增加率)	實質規模(B)	超過比率($\frac{B}{A}$)
1989. 4/4	..	(..)	1,218	..
1990. 4/4	1,398	(14.80)	1,460	4.4
1991. 4/4	1,476	(5.55)	1,535	3.9
1992. 4/4	..	(..)	1,604	..

註 : 말잔액 기준임.

資料 :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93/3, March 1993, pp. 5~7, pp. 6*~7*.

1993년 1월의 M₃(평잔)增加率は 1992년 4/4분기 대비 -23%를 기록하였다. 1992년에 管理目標(3.5~5.5%)를 계속 상회하던 M₃增加率が 이렇게 급속히 둔화된 것은 1993년부터 실시되는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課稅(30%)로 資本의 海外流出이 크게 늘어난 데에다 매년 1월이 資金非需期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總通貨增加率が 이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독일중앙은행은 위와 같은 利子率 引下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Ⅶ. 統一費用 推計와 費用調達方案

1. 統一費用的 概念

상호 異質的인 體制下에 있던 두 國家가 統合된 후 이 統合國家의 經濟가 正常的으로 기능할 때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措置들에 수반되는 費用 및 犧牲을 統一費用이라 정의한다면 이에는 매우 多樣한 種類의 費用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吸收統合 方式을 취했던 統一獨逸에 있어서의 統一費用이란 흔히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舊西獨의 정부와 민간이 舊東獨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制度整備, 社會福祉 및 經濟開發에 필요한 財源을 조달해 주기 위한 經濟的 費用을 일컬으며, 아주 넓은 의미로는 舊東獨이 갑작스레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함에 따라 주민들이 겪게 된 精神的 衝擊, 適應의 어려움, 文化와 教育의 異質性 등으로 인한 社會的 費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統一費用은 統合過程에 있는 두 나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概念이지만 일반적으로는 體制轉換을 시도해야만 하는 國家(구동독 또는 북한)를 支援하는 國家(舊西獨 또는 南韓)에서 統一로 인해 追加的으로 支出해야만 하는 費用을 일컫는다¹⁾. 또한 統一費用을 누가 負擔하느냐에 따라 政府和 個人 또는 企業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으며 종종 政府의 財政的 負擔을 統一費用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統一費用은 多樣하게 定義할 수 있고 그 推計도 추정목적에 따라 相異한 假定下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推定結果는 추정자에 따라서 큰 差異를 보일 수 있다. 統一費用 推計方法으로는

1) 裴眞永, 「社會的 費用 等 具體的 算出 必要」, 『시사저널』, 1992. 10. 22.

일반적으로, 각 항목별 推定値를 合算하는 방법과 計量모델에 의해 投資所要額을 推定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推定방법이든지 統合後 兩國 經濟水準의 一致基準과 目標, 그리고 一致期間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南北韓과 獨逸의 統一費用을 推計해 보려는 노력이 <表 VII-1> 및 <表 VII-2>에서와 같이 여러 기관 및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表 VII-1> 南北韓 統一費用 推計結果 比較

(單位: 億US\$)

	推計方法	所要期間	推計額
日本 長銀總合研究所 (1990)	구동독 통일비용 기준	향후 10년	2,000
안두순 (서울市立大: 1990)	GNP 기준	1990~2000년	3,380
KDI(1991)	항목별 누계	1991~2000년	2,500~3,000
Euro-Asian Business Consultancy (1992)	항목별 누계	1993~2000년	3,280
英國 EIU(1992)	—	향후 10년	1,500~2,600
裴眞永(KIEP: 1992)	GNP 기준 계량추정	1993~2000년	2,120~4,480

經濟統合은 한 國家 內에서만 일어나는 體制轉換과는 달리 두 國家의 合議下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統一費用과 같은 經濟的 論理보다는 政治的 側面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게다가 통일비용에는 制度·社會·歷史的 要素와 같이 數量化할 수 없는 여러 측면이 무시되기 때문에 統一費用 概念을 신중히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통일비용은 그 定義 및 推定에 필요한 假定에 따라 서로 다른 推計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政治的, 心理的 誤解의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統一費用이라는 抽象的인 概念보다는 具體的 概念,

〈表 VII-2〉獨逸 統一費用 推計結果 比較

(單位: 億DM)

推計機關	推計內容	推計額
DIW研究所 (1990. 6)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사회보장지원 계	6,000~9,000 1,000~4,000 10,000
Time紙 ¹⁾ (1990. 10)	민간투자부문 재정부담 계	2,325 7,490~8,495 9,815~10,820
Wirtschaftswoche 紙 ¹⁾ (1991. 2)	기업의 자본력강화 주택 및 공공부문 환경정화부문 계	15,000~19,000(10,000~13,000) ³⁾ 5,000 2,000 22,000~28,000(17,000~20,000) ³⁾
킬(Kiel)大學 附 設 世界經濟研究 所(1991. 10)	기업부문 주택부문 사회간접자본 계	11,500 11,100 5,000 27,600
L. Hoffmann (1991. 10)	공공부문 민간투자부문 계	15,000~20,000 10,000 25,000~30,000
J. P. Morgan (1991. 9/10)	730만명 ²⁾ 의 동독지 역 노동자가 완전 고용상태에서 서독 지역 노동자와 동 일한 자본장비율을 보유할 경우	15,000

註: 1) 재인용함.

2) 2000년 동독지역의 경제활동추계인구임.

3) 서독지역 수준임. 단, () 안은 서독지역의 80% 수준임.

資料: 獨逸 經濟社會統合研究를 위한 短期調査團, 『獨逸經濟社會統合에 관한 研究』, 1990. 12.

『內外經濟新聞』, 1991. 10. 8.

『東亞日報』, 1991. 10. 15.

Time, August 10, 1990.

Wirtschaftswoche, February 22, 1991.

예컨대 投資規模, 社會的 費用, 政府의 財政負擔과 같이 보다 명료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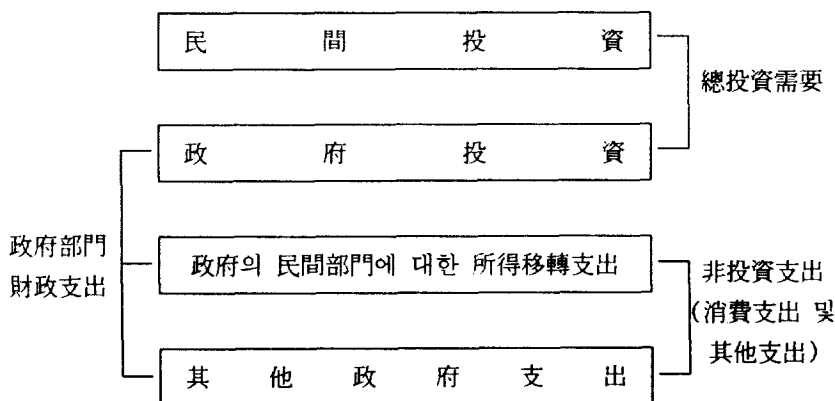
統一을 對備한 經濟政策 樹立에 基礎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統一費用 關聯 概念은 投資需要와 政府財政需要라고 볼 수 있다. 投資需要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새로이 編入되는 地域의 生産水準이 이러한 경제체제하에 있는 既存地域의 生産水準과 같아질 때까지 필요한 民間 및 政府의 總投資需要를 뜻하며 政府財政需要는 통일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보,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한 재정이전, 행정기구의 개편을 위한 비용 등 政府部門의 措置에 必要한 財政需要를 말한다.

2. 統一費用의 推計

가. 統一費用의 構成

統一費用은 〈表 VII-3〉과 같이 크게 民間投資, 政府投資,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所得移轉支出, 其他 政府支出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所得移轉支出이란 失業,

〈表 VII-3〉 獨逸 統一費用의 構成



〈表 VII-4〉 總統一費用 內譯

(單位：億DM)

內 譯	規 模
統一에 必要한 基本的인 直接經費	약 3,800
신탁관리청의 기업관리 부담액	2,500
구동독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차액의 보전	1,000
구동독체제 희생자 복권·보상 (형사처벌자 보상 7, 미반환재산 보상 150)	157
소련군 철수비용	130
東獨再建 및 生活水準 隔差 解消費用	약 6,400
(과거 구서독의 빈곤한 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	(약 24,000) ²⁾
환경정화시설 투자	2,000
교통망 개선(철도 480, 도로 700, 항만 80, 공항 10)	1,270
에너지산업 설비현대화	1,000
교육환경 격차해소	700
우편·통신분야 설비투자	550
주택분야 보수·유지 및 현대화	500
의료시설 확충	300
농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금	70
社會保險機關을 통한 東獨地域으로의 移轉支出 (실업·의료·연금보험)	2,500 ³⁾
東獨地域 勞働者(750만)의 勞働生産性を 西獨地域水準 으로 向上시키기 위한 資本現代化 또는 新規投資 ¹⁾	약 10,000
計	약 22,700 (약 40,000) ²⁾

- 註：1) 1991년 말 현재 동독지역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지역의 28.7%임.
 2) OECD의 추계에 의하면,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만을 위해서도 서독지역의 GNP에 필적하는 2조 4,000억DM가 소요됨.
 3) 1992년의 이전지출액 500억DM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 0DM가 됨을 가정함.

資料：統一院, 『統獨 2週年 報告書』, 1992. 10, p. 33.

OECD,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Paris, 1991.

獨逸 聯邦財務部 提供資料 등을 참고로 자체 작성함.

醫療, 年金保險 등 社會保險機關을 통한 이전지출로서 民間部門의 消費支出로 연결되며 其他 政府支出은 독일의 경우 통화통합으로 인한 銀行의 債權·債務差額 補填費用, 舊蘇聯軍 撤收費用 등 투자지출도 아니며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도 아닌 기타지출을 나타낸다.

한편 1991~2000年間の 總統一費用 推定內譯을 살펴보면 <表 VII-4>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00년까지 약 4조DM, 연평균으로는 4,000억DM(또는 2조 2,700억DM, 연간 2,270억DM)의 재원이 필요하다.

東獨地域 勞動者의 生産性을 西獨地域 水準으로 向上시키는 데 드는 投資規模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총 750만명의 노동자 중 250만명이 失業狀態에 있다고 본다. 西獨地域의 경우 하나의 일자리

<表 VII-5>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需要

(單位: 億DM)

	投資需要額
民間設備投資	10,000
500만명의 일자리 현대화	5,000
250만명의 일자리 창출	5,000
住宅建設投資	4,700
600만호의 주택개량	1,200 ¹⁾
1억 4,000만m ² 의 주택건설	3,500 ²⁾
環境淨化投資	2,110
에너지分野投資	500
交通分野投資	2,100
通信分野投資	600
計	20,010

註: 1) 단위주택당 개량비용을 2만DM로 가정함.

2) m²당 주택건설비용을 2만 4,000DM로 가정함.

資料: J. Prieue and R.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Frankfurt: Fischer Verlag, 1991, p. 123.

를 創出하는 데 약 20만DM의 資本이 소요되므로 失業者 250만명의 일자리를 創出하기 위해서는 5,000억DM가 필요하며, 하나의 일자리를 現代化하기 위한 資本이 하나의 일자리를 創出하기 위한 資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노동자 500만명의 일자리를 現代化하기 위해서는 다시 5,000억DM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총 1兆DM의 新規資本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까지 東獨地域에 필요한 民間 및 政府部門 投資需要額을 살펴보면 <表 VII-5>와 같다.

2000년까지 民間投資(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지역 기업의 투자)는 1兆DM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1991~92年間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지역 기업의 製造業部門 投資가 실제로는 총 350억DM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表 VII-6> 民間投資 需要額과 投資額

(單位: 億DM)

	1991	1992	1993
需 要 額	1,000	1,000	1,000
投 資 額	128	222	276 ¹⁾

註: 1) Ifo연구소의 추정치임.

資料: Ifo, *ifo Schnelldienst*, 93/11-12, 1993, p. 4.

나. 政府部門 統一費用

1991년 및 1992년 西獨地域 政府部門의 統獨關聯 支出內譯을 지출기관별로 살펴보면 <表 VII-7>과 같다.

獨逸 聯邦政府의 統獨關聯 支出額은 1991년에 860억DM, 1992년에는 1,050억DM에 달하는데 이는 獨逸 聯邦豫算의 20~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表 VII-7〉西獨地域 政府部門의 統一費用 內譯

(單位: 億DM)

	1991	1992
1. 聯邦 豫算支出	860	1,050
A.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세입	230	290
B. 분단관련 세출 삭감	40	50
C. 순지출(1-A-B)	590	710
2. 西獨地域 州·自治團體 豫算支出	75	90
3. '獨逸統一基金'을 위한 信用借入	310	240
4. 유럽復興計劃(ERP)基金에 의한 支援	210	250
5. 債務清算基金	25	165
6. 公共機關 支出(C+2+3+4+5)	1,210	1,455
7. 社會保險機關(실업·의료·연금) 移轉支出	220	500
8. 公共部門 總支出(6+7)	1,430	1,955

資料: 三星經濟研究所, 『世界經濟』, 1993. 5. 25, p. 73.

獨逸 聯邦經濟部 제공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체 작성.

〈表 VII-8〉獨逸 聯邦政府의 統獨關聯 支出 比重

(單位: 億DM, %)

	統獨關聯支出額(A)	聯邦 豫算(B)	A / B
1991	860	4,070	약 21.1
1992	1,050	4,251	약 24.7

資料: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Wege-Risiken*, 91/92, November 1991, pp. 330~331.———, *Für Wachstums-orientierung-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p. 320~321.

그러나 政府部門 統一費用은 통일로 인한 세수증대 또는 통일로 인해 지출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純統一費用과 總統一費用으로 구분될 수 있다. 〈表 VII-9〉 및 〈表 VII-10〉에

〈表 VII-9〉東獨地域에 대한 財政支援 內譯(1991)

(單位: 億DM)

支出 및 歲入	財 源					計
	聯邦	西獨地域 州·市	統一 基金	EC· ERP	勞動廳·社 會保障機構	
統一關聯支出	890	80	350	100	300	1,720
동독지역 州정부예산을 위한 이전지출	180 ¹⁾	50 ²⁾	350	10	—	590
동독지역주민 위한 이전 지출	240 ³⁾	—	—	90	300	630
동독지역에서의 기타지출 (기술 및 인적원조)	470 ⁴⁾	30 ⁵⁾	—	—	—	500
統一關聯 歲入(狹義)	330	—	40 ⁶⁾	30 ⁶⁾	70	470
동독지역에서의 세금 및 각종 보험료 징수	300	—	—	—	60	360
동독지역에서의 기타수입	30	—	—	—	10	40
統一關聯 純支出(廣義)	560	80	310	70	230	1,250
統一關聯 歲入(廣義)	90	30	—	—	—	120
동독지역으로 인한 추가 성장 1%에 의한 추가징수	30	30	—	—	—	60
세출절감	40	—	—	—	—	40
조세감면절감	10	—	—	—	—	10
주정부의 통일기금 이차 지불 및 대부상환	10	—	—	—	—	10
統一關聯 純支出(狹義)	470	50	310	70	230	1,130

註: 1) 지역경제 구조개선, 취약지구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중앙재원 배분액임.

2) 1991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배분의 새로운 규정에 의한 추가부담액임.

3) 연금보험에 대한 보조금, 양육보조비, 아동교육보조비, 실업보조금 등의 합계임.

4) 동독지역 철도청, 도로건설분야, 기술개발분야 등에 대한 지원액임.

5) 독일통일기금의 이차부담 중 서독지역 州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임.

6) 통일로 인한 독일통일기금(연방으로부터의 재정이전) 수입과 EC 보조금의 합계임.

資料: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 - Wege - Risiken*, 91/92, November 1991, p. 136.

〈表 VII-10〉東獨地域에 대한 財政支援 內譯(1992)

(單位: 億DM)

支出 및 歲入	財 源					計
	聯邦	西獨地域 州·市	統一 基金	EC· ERP	勞動廳·社 會保障機構	
統一關聯支出	790	100	340	160	950	2,340
동독지역 州정부예산을 위한 이전지출	160 ¹⁾	60 ²⁾	340	50	—	610
동독지역주민 위한 이전 지출	280 ³⁾	—	—	10	940	1,330
동독지역에서의 기타지출 (기술 및 인적원조)	350 ⁴⁾	40 ⁵⁾	—	—	10	400
統一關聯 歲入(狹義)	410	—	—	—	430	840
동독지역에서의 세금 및 각종 보험료 징수	390	—	—	—	430	820
동독지역에서의 기타수입	20	—	—	—	—	20
統一關聯 純支出(廣義)	380	100	340	160	520	1,500
統一關聯 歲入(廣義)	95	30	—	—	—	125
동독지역으로 인한 추가 성장 1%에 의한 추가징수	15	15	—	—	—	30
세출절감	50	—	—	—	—	50
조세감면절감	20	15	—	—	—	35
주정부의 통일기금 이자 지불 및 대부상환	10	—	—	—	—	10
統一關聯 純支出(狹義)	285	70	340	160	520	1,375

註: 1)~5) 〈表 VII-9〉와 동일.

資料: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Für Wachstumsorientierung-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 146.

서와 같이 統一로 인한 聯邦, 州, 各種 基金, 社會保障機構別 財政支出은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1,720억DM와 2,340억DM에 달하나 統一로 인한 稅收增大나 支出削減 效果 등을 감안하면 政府部門의

(表 VII-11) 統一關聯 國家財政 負擔額 및 新設 5個 州 交付金(1991)

(單位: 億DM)

	總財政負擔	純財政移轉		
		計	所得支援	投資
聯邦政府	984	1,028	588	440
관련부서 사업	812 ²⁾	506	295	211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	120	120	28	92
독일통일기금	70	350	245	105
투자촉진조치에 따른 조세감면	32	32	—	32
동독지역 의료보험 적자보전금	20	20	20	—
信託管理廳	210	250	125	125
지원금	—	250	125	125
적자보전금	210	—	—	—
州政府 및 基礎自治團體	68	58	44	14
인적·기술적 지원	10	10	10	—
부가가치세	48	48	34	14
독일통일기금	10	—	—	—
勞動廳(失業保險, 年金保險)	190	190	190	—
國家財政 負擔總額	1,452	1,526	947	579
聯邦政府·州政府·自治團體 負擔額 ¹⁾	1,262	731	390	341
控除額	224	—	—	—
동독지역 세수 연방할당액	200	—	—	—
통일관련 수입	24	—	—	—
純 額	1,038	731	390	341

註: 1) 독일통일기금, 신탁관리청, 노동청 제외.

2) 독일통일기금 70억DM를 포함한 수치임.

資料: J. Priewe and R.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Fischer Verlag, 1991, p. 134.

純統一費用은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1,130억DM와 1,375억DM로 집계된다.

각 公共部門別 統一關聯 財政負擔額 中 實際로 東獨地域에 移轉되

는 財政規模別로 구분하면 〈表 VII-11〉과 같다. 聯邦政府, 州政府, 基礎自治團體의 總財政負擔 1,262억DM 중 純財政移轉은 58% 정도인 731억DM이다. 그러나 公共部門의 純財政移轉(1,526억DM)은 總財政負擔(1,452억DM)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는 그 일부가 기금이나 신탁관리청을 통해 資本市場에 借入되어서 國家財政에 당장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1년의 統一關聯 財政負擔額은 總額 基準으로도 1,452억DM에 달했으며, 동독지역 세수의 연방할당금 및 통일관련 수입을 공제한 純額 基準으로도 독일통일기금, 신탁관리청, 노동청을 제외한 정부부문의 재정부담액이 1,038억DM나 된다. 재정부담액 가운데 關聯部署의 事業支出金이 812억DM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信託管理廳의 赤字補填金 210억DM, 勞動廳의 失業關聯 費用 190억DM 순으로 되어 있다.

1991년 公共豫算에서 新設 5個 州로 이전지출된 交付金은 1,526억DM에 달하고 있으며 獨逸統一基金, 信託管理廳, 勞動廳 등을 통해 이전지출된 금액도 795억DM에 달한다. 또한 用途別로는 所得支援 支出額이 947억DM인 반면 投資目的 支出額은 579억DM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東獨地域의 社會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短期的 處方의 일환으로서 投資보다는 소모적인 社會福祉 支出이 統一關聯 公共財政支出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社會福祉 支出 가운데 關聯部署의 事業支出, 獨逸統一基金, 勞動廳 및 信託管理廳의 支出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投資 支出의 경우 관련 부서 사업, 신탁관리청, 독일통일기금,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1990년도 財政政策의 問題點을 인식한 獨逸聯邦政府는 1991년 部門別 事業에 중점을 둔 ‘東獨地域 再建 共同事業’(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을 신설하여 雇傭促進, 社會間接資本 構築, 住宅建設, 環境保護 및 產業化 促進 方案을 마련하였다. 1991/92년

도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에 聯邦政府가 출연한 財源規模는 매년 120억DM에 달한다. 1991년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의 支出構造를 보면 社會間接資本 投資에 60억DM, 雇傭促進 措置에 25억DM, 住宅建設에 11억DM, 그리고 投資促進 措置에 4억DM가 지출되었다.

〈表 VII-12〉 東獨地域 再建 共同事業의 聯邦政府 財政負擔

(單位：億DM)

內 容	主務部處	1991	1992
지역적 투자 프로그램	재 무 부	50.0	—
직업창출 조치	노 동 부	25.0	30.0
도로건설과 철도산업 투자보조	교 통 부	14.0	49.0
주택건설 및 도시정비	건 설 부	11.0	11.0
기업투자 지원	재 무 부	3.9	6.5
지역경제 지원	경 제 성	6.0	6.0
항만시설투자	경 제 성	1.3	2.6
환경정화투자	환 경 부	4.1	4.0
대학 지원	교 육 부	2.0	5.0
연방건물 관리	여러부처	2.7	1.5
교회건축물 관리 지원	내 무 부	..	0.8
해운회사 지원	교 통 부	..	0.3
난방시설 정비 보조	경 제 부	..	1.5
경제연구소 지원	경 제 부	..	1.8
농림업 보조	농 립 부	..	0.04
기타 조치	재 무 부	..	1.02
計		120.0	120.0

資料：BMF, *Finanzbericht 1992*, Bonn, 1991, p. 31.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정부가 1990년도 財政政策의 問題點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비로소 財政政策의 基本方向이 본궤도에 진입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사업의 施行期間은 2年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이는 東

〈表 VII-13〉獨逸統一基金에 의한 年度別 財政移轉 規模

(單位: 億DM)

		1990下半年期	1991	1992	1993	1994	計
支 援 額		220	350	339	364	288	1,561
財源 調達 方案	借 入	200	310	240	150	50	950
	聯 邦 豫 算	20	40	40	50	50	200
	其他 基金으로 부터의 轉用	—	—	59	59	59	177
	附加價値稅의 配分率 變更 ¹⁾	—	—	—	105	129	234
利子 負擔	計	—	20	52	76	90	238
	聯 邦	—	10	26	38	45	119
	西獨地域州	—	10	26	38	45	119

註: 1) 추정치임.

資料: R. Hickel, "Sozialökonomische Strategien zur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R. Hickel, E.-U. Huster and H. Kohl(eds.), *Umverteilen; Schritte zur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Köln: Bund-Verlag, 1992, p. 88.

獨地域의 再建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최소한 5年 以上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을 위한 基金 中 1991년 雇傭創出을 위한 財源 25億DM가 중도에 모두 소진되어 30億DM 정도가 追加投入되는 등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 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財源規模 역시 增額되어야 한다.

獨逸聯邦政府는 동독지역을 州政府間 財政調整制度에 편입시키지 않는 대신 '獨逸統一基金'을 신설하였으며, 동독지역의 州政府와 自治團體는 이 基金의 財政支援을 一般會計에 편입시켜 豫算不足을 充當하였다.

'獨逸統一基金'에 의한 財政移轉은 1991년에 310億DM, 1992년에 240億DM로서 政府部門 統一費用 中 큰 비중을 차지한다.

〈表 VII-14〉 東獨地域 州政府의 支出 및 收入構造(1992)¹⁾

(單位: 億DM, %, DM)

	規 模	比 重	國民1人當 規 模	東獨地域
				西獨地域
支 出	877	100.0	5,992	125
인 적 지 출	213	24.3	1,455	76
물 적 지 출	65	7.4	444	113
이 자 지 출	6	0.7	41	10
공공투자지출	44	5.0	301	170
투자지원금지출	216	24.6	1,476	318
收 入 ²⁾	713	100.0	4,871	109
조 세 수 입	221	31.0	1,510	43
독일통일기금	186	26.1	1,271	—
교 부 금	155	21.7	1,059	—
일 반 목 적	73	10.2	499	—
투 자 목 적	82	11.5	560	—
財 政 赤 字	164	—	1,120	339

註: 1) 1991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임.

2) 차입은 제외함.

資料: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Für Wachstumsorientierung-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 145.

‘獨逸統一基金’에 의한 財政移轉은 주로 舊東獨 政府로부터 위임 받은 債務에 대한 利子支給 및 元金償還, 그리고 東獨地域 州政府和 基礎自治團體가 財政需要를 충당하면서 이루어진다.

동독지역에 대한 이러한 財政移轉 中 거의 절반 이상이 消費目的으로 사용되며 投資目的으로는 30% 미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경제수준이 현저히 악화되는 東獨地域 住民들의 所得補填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東獨地域 州政府의 財政收入에서 차지하는 聯邦政府 交付金 比重

과 獨逸統一基金을 통한 西獨地域의 財政移轉金 比重의 合計는 50%를 넘는다.

3. 統一費用 調達方案

가. 統一費用으로 인한 獨逸政府의 財政赤字 規模

統一以後의 政府支出은 〈表 VII-1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9년의 1조 189억DM에서 1990년에는 1조 1,182억DM, 1991년에는 1조 3,932억DM, 1992년에는 1조 5,186억DM로서 각각 전년 대비 9.7%, 12.5%,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통계치가 東獨地域을 포함한 것임을 감안할 때 統一以後 매년 9%를 조금 상회하는 규모로 獨逸의 政府部門 財政支出이 增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87년, 1988년, 그리고 1989년의 財政支出 增加率이 각각 4.0%, 4.4%, 그리고 2.8%였음에 비하면 거의 2~3배에 달하는 증가폭임을 알 수 있다.

政府支出 內譯은 〈表 VII-16〉과 같다. 部門別로 政府消費는 거의 비슷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1991년과 1992년 들어 投資支出은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利子支出은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企業에 대한 移轉支出은 1990년에 이미 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991년 들어서는 60% 정도까지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1992년 상반기 들어서는 증가세가 중단되었다. 이는 급속한 景氣冷却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기피, 정부가 마련중인 投資支援 支出分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과 1991년의 企業에 대한 移轉支出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統一로 인해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의 赤字補填額, 失業手當 등에 支出되는 費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家計에 대한 移轉支出의 증가세는 완만한데 이는 東獨地域의 家計에 대한 이전지출 增加가 西獨地域의 家計에 대한 이전지출 減少로써 相殺되기 때문이다. 財産移轉(Vermö-

〈表 VII-15〉 政府部門의 財政收入과 財政支出¹⁾

(單位 : 億DM, %)

	舊 西 獨				統 一 獨 逸			
	1989		1990		1991	1992		1993
	規模	增加率	規模	增加率	規模	規模	增加率	增加率 ²⁾
支 出	10,189	2.8	11,182	9.7	13,932	15,196	9.0	4~5
정 부 소 비	4,188	1.6	4,444	6.1	5,543	6,053	9.2	2.5~3.5
가계와기업에 대한이전지출	5,477	3.4	6,178	12.8	7,644	8,301	8.6	5~7
정 부 투 자	524	7.2	560	6.9	746	842	12.8	3~4
收 入	10,216	8.0	10,687	4.6	13,042	14,260	9.3	3~4
조 세	5,601	9.3	5,732	2.3	6,908	7,537	9.1	3~4
사회보장료액	3,832	4.6	4,106	7.2	5,153	5,545	7.6	5~6
기타수입 ³⁾	784	17.4	850	8.4	980	1,178	20.2	-4~-6
財 政 黑 字 (GNP대비비율)	27 (0.1)	94.0	-495 (2.0)	-1933.3	-891 (3.4)	-931 (3.5)	-4.6	12~24
G N P	22,244	6.1	24,178	8.7	26,126	26,518	1.5	

註 : 1)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함.

2) 목표치임.

3) 독일연방은행수익금, 연방채신청수익금, 주화발행수익금 등임.

資料 : Bundesregierung, *Jahreswirtschaftsbericht 1993 der Bundesregierung*, Bonn, February 1993, p. 69;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Für Wachstumsorientierung-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 275, pp. 320~321 등을 참고로 자체 작성함.

gensübertragung)은 政府의 海外援助, 國際機構 財政負擔金 등이 포함되는 지출항목으로서 1991년의 경우 95.5%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舊蘇聯軍 撤收支援金이 새로 編入되었기 때문이다.

公共部門 中 社會保障機構의 財政赤字 規模는 〈表 VII-17〉과 같다.

각종 社會保險 中 失業保險의 財政赤字 規模가 가장 큰데 1991년 말에도 동독지역 적자분 253억DM를 서독지역 흑자분 236억DM로

〈表 VII-16〉政府支出 內譯

(單位：億DM,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¹⁾ 上半期
政府支出	8,753	9,122 (4.2)	9,496 (4.1)	9,911 (4.4)	10,189 (2.8)	11,182 (9.7)	12,925 (15.6)	6,461 (3.5)
政府消費	3,657	3,826 (4.6)	3,973 (3.8)	4,124 (3.8)	4,188 (1.6)	4,444 (6.1)	4,681 (5.3)	2,305 (6.7)
家計 移轉支出	3,070	3,190 (3.9)	3,352 (5.1)	3,506 (4.6)	3,642 (3.9)	3,834 (5.3)	4,075 (6.3)	2,119 (6.9)
企業 移轉支出	730	762 (4.4)	810 (6.3)	897 (10.7)	922 (2.8)	1,375 (49.1)	2,190 (59.3)	1,106 (-0.5)
利子支出	553	572 (3.4)	578 (1.0)	598 (3.5)	605 (1.2)	635 (5.0)	719 (13.2)	425 (16.8)
投資支出	429	473 (10.3)	480 (1.5)	489 (1.9)	524 (7.2)	560 (6.9)	609 (8.8)	294 (10.5)
財產移轉	314	300 (-4.5)	303 (1.0)	297 (-2.0)	308 (3.7)	333 (8.1)	651 (95.5)	213 (-40)

註：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資料：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Für Wachstumsorientierung 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p. 320~321.

〈表 VII-17〉社會保障機構의 財政赤字 規模

(單位：億DM)

	1991			1992		
	東獨地域	西獨地域	計	東獨地域	西獨地域	計
年金保險	7	112	119	-33	3	-30
醫療保險	28	-56	-28	-5	-148	-153
失業保險	-253	236	-17	-399	271	-128
其他	46	31
計	120	-280

資料：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Für Wachstumsorientierung 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 151.

증당하므로써 社會保障機構 全體로는 1991년의 경우 두 지역을 합해 120억DM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는 東獨地域의 雇傭保險 赤字規模가 399억DM로 더욱 확대되고 西獨地域의 醫療保險 赤字規模도 148억DM로 확대됨으로써 두 지역을 합한 全體 社會保障機構의 赤字規模가 280억DM에 이르렀다.

나. 稅收增大를 통한 財源調達

〈表 VII-18〉 稅收增大를 위한 政府施策과 稅收增大效果

(單位：億DM)

	1991	1992
社會保障保險料 引上(1991. 4. 1) ¹⁾	121	111
失業보험료 2.5% 인상 ²⁾	202	221
연금보험료 1.0% 인하 ³⁾	-81	-110
租稅引上	177.5	282.5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 가산세 ⁴⁾	112.5	106.5
석유세 인상(1991. 7. 1)	58	140
보험세 3% 인상(1991. 7. 1) ⁵⁾	7	20
연초세 개당 1Pfg. 인상(1992. 1. 1)	-	16
부가가치세율 15%로 인상(1993. 1. 1)	-	-
計	298.5	393.5

註：1) Ifo연구소의 추정치임.

2) 요율이 6.8%로 인상됨.

3) 요율이 17.7%로 인하됨.

4) 1년간(1991. 3. 1~1992. 6. 30) 한시적으로 부과하며 최근 들어 1995년부터 재부과하기로 결정되었음.

5) 세율이 10%로 인상됨.

6) EC통합과 더불어 EC국가들 간에 부가가치세율의 최저한계가 15%로 규정됨에 따라 독일은 14%였던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시키게 됨. 독일의 1991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714억DM이므로 세율인상으로 인한 소비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이로 인한 1993년의 세수증대 효과는 50억DM 정도로 추정됨.

資料：Ifo, *ifo Schnelldienst*, 91/7, 1991, p. 24.

〈表 VII-19〉聯邦政府, 州政府, 基礎自治團體의 稅收總額

(單位: 億DM)

	1990			1991			1992		
	總額	西獨 地域	東獨 地域	總額	西獨 地域	東獨 地域	總額	西獨 地域	東獨 地域
共同稅	4,164	4,026	138	4,785	5,250
소득세원천징수분	1,811	1,776	35	2,142	2,046	96	2,450	2,285	165
소득세연말정산분	365	365	-	415	412	3	410	420	-10
소득세비정기소득분	108	108	0	114	113	-	115	115	-
법인세	301	301	-	317	314	3	320	325	-5
기타	33	-	33	-	-	-	-	-	-
부가가치세	1,546	1,476	70	1,797	1,955	-	-
關稅	72	72	-	83	80
聯邦稅	698	659	34	936	1,060
석유세	366	346	20	473	555
연초세	183	174	9	196	195
가산세	-	-	-	105	125
州稅	256	254	2	291	271	20	320	295	25
자동차세	84	83	1	110	95	15	135	115	20
재산세	63	63	-	67	67	-	65	65	-
基礎自治團體稅	486	486	-	524	510	14	565	545	20
영업세	388	388	-	413	407	5	445	435	10
토지세	87	87	-	99	92	8	105	95	10
總租稅	5,671	5,497	174	6,619	-	-	7,275	-	-
(GNP대비비중)	-	22.7	-	23.4	24.0

資料: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Wege-Risiken*, 91/92, November 1991, p. 137.

—————, *Für Wachstumsorientierung-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 147.

(表 VII-18)에서 알 수 있듯이 統一財源의 조달을 위해 獨逸聯邦政府는 각종 租稅와 社會保障料率을 引上하였다. 1991년 4월 1일부터 年金保險料率은 1% 인하된 17.7%로 되었으나 失業保險料率이 2.5% 인상된 6.8%가 되어 全體的으로는 社會保障料 負擔額이 上向調整되었다. 이러한 社會보험료 율의 調整에 따라 1991년의 公共收入은 121억DM 증가하였으며 1992년에는 111억DM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加算稅法’은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限時法으로 1991년 초에 聯邦議會에서 通過되었다. 이로 인해 勤勞所得稅, 所得稅 및 法人稅에 7.5%의 ‘加算稅’가 부과되었으며 石油稅, 煙草稅도 인상되었다.

보험료의 7% 수준이었던 保險稅率은 1991년 7월 1일부터 10%로 인상되었는바, 그 중 社會保障保險 部門의 세율은 인상되지 않고 財產保險, 自動車保險 등의 세율만이 上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1991년에 稅入이 약 300억DM 증대되었고 1992년에는 약 400억DM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表 V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獨逸政府(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는 1991년에 6,619억DM, 1992년에 7,275억DM의 租稅를 징수함으로써 GNP 對比 租稅收入, 즉 擔稅率은 각각 23.4%, 24.0%로서 上昇세에 있다.

附加價值稅 徵收額은 1991년 1,797억DM, 1992년 1,955억DM로 각각 總稅收의 27.1%, 26.8%를 차지함으로써 1990년의 27.2%보다 감소하는 추세이나 統一 以前의 약 25%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東獨地域의 높은 消費 및 需要增加에 그 원인이 있으나 이러한 統獨特需는 급속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1991년 所得稅는 西獨地域의 높은 賃金上昇과 雇傭增加로 인해 18% 증가하였으나 1992년 들어 14% 증가에 그쳤다. 7.5%의 加算稅와 높은 物價上昇率(1992년 서독지역 4.0%, 동독지역 11.2%)에

비추어 볼 때 稅收의 自然增加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利潤率 低下로 인해 法人稅는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5% 및 1% 정도 증가하였는데 1992년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加算稅率 7.5%를 감안한다면 稅源인 法人利潤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獨地域의 1991년 및 1992년의 所得稅 및 法人稅는 각각 102억 DM와 150억 DM를 기록함으로써 住民 1人當 稅收는 서독지역의 약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동서독지역간의 經濟力 隔差로 인한 東獨地域 住民들의 낮은 賃金所得과 東獨地域 企業들의 낮은 利潤水準에 기인한다.

1991년 獨逸政府의 각종 稅收增大 措置로 인한 國民의 追加負擔額은 〈表 VII-20〉과 같다.

個人所得 擔稅率의 推移는 〈表 VII-21〉과 같은데, 1991년의 個人所得 擔稅率은 1970년보다 10% 정도, 1980년보다 5% 정도 상승하

〈表 VII-20〉 增稅措置로 인한 國民의 追加負擔額

(單位: DM)

月所得	追加負擔額	
	獨身者家庭	2名의子女가 있는家庭
1,400	32.80	25.50
2,000	41.10	25.60
3,500	84.40	58.50
5,000	118.50	82.80
6,500	158.80	111.60
8,000	223.20	160.60
10,000	294.80	206.50

資料: 統一院, 『統獨 2週年 報告書』, 1992. 10, p. 36.

〈表 VII-21〉 個人所得 擔稅率 推移

(單位: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5 ¹⁾
擔稅率	33.9	36.6	39.3	42.0	41.5	43.0	45.2

註: 1) 전망치임.

資料: 統一院, 『統獨 2週年 報告書』, 1992. 10, p. 36.

였음을 알 수 있다.

다. 政府負債

앞서 〈表 VII-15〉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에는 稅收가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社會保障料는 전년 대비 7.6% 증가함으로써 政府部門 總財政收入도 전년 대비 9.3% 증가한 1조 4,255억DM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財政收入 增加幅은 財政支出 增加幅을 훨씬 밑돌아 統一 元年인 1990년의 財政赤字는 1989년의 20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여 GNP 對比 財政赤字 比率은 0.1%에서 2.0%로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財政赤字 規模는 1991년, 1992년에도 각각 891억DM, 931억DM로 증가하여 GNP 對比로는 3.4%, 3.5%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政府部門 財政赤字에 其他 公共部門 財政赤字, 즉 各種 基金과 特別會計의 支出超過를 합하면 全體 公共部門의 財政赤字 規模는 〈表 VII-22〉와 같다.

1991년의 全體 公共部門 財政赤字 規模는 1,512억DM이고 1992년은 2,145억DM를 기록하여 GNP 對比로는 각각 5.8%와 8.0%를 나타냄으로써 全體 公共部門의 財政赤字가 政府部門 財政赤字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재정적자 규모에서 公共部門의 其他收入을 빼면 民間資本 市場으로부터 借入해야 할 규모가 집계되는데 이는 1991년에 1,300억DM, 1992년에 1,942억DM를 기록하였다.

〈表 VII-22〉全體 公共部門의 財政赤字

(單位: 億DM)

	1991	1992
政府 一般會計	854	850
연방정부	540	410
주정부	210	295
기초자치단체	104	145
各種 基金	366	350
독일통일기금	296	240
채무청산기금	8	10
ERP 특별기금 등	62	100
特別會計	412	665
신탁관리청	199	300
서독지역 철도청	47	87
동독지역 철도청	22	38
연방채신청	106	195
동독지역의 주택건설 특별회계	38	45
社會保障機構	-120	280
總 財 政 赤 字	1,512	2,145
聯邦政府의 社會保障機構에 대한 補助	-	-128
聯邦銀行收益	-12	-75
聯邦의 豫備借入	-200	-
資本市場 負擔	1,300	1,942

資料: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Für Wachstumsorientierung-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p. 149~150.

라. 支出削減을 통한 財源調達

獨逸聯邦政府는 增稅를 통한 統一費用 調達의 社會·經濟的 波及 效果를 縮小하기 위해 歲出을 가능한 한 줄여 통일비용을 조달해 보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이러한 歲出構造 變更 및 支出減縮을 위한

시도는 財政支出 項目當 最少支出을 규정하거나 一定比率로 支出規模를 縮小시키는 機械的인 減縮方式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를린에 대한 補助金 削減, 政治的 狀況變化에 따른 國防費減縮, 脆弱地區에 대한 支援減縮 등 任意的인 方式에 의해 이루어졌다²⁾. 이를 통해 獨逸政府는 1991년에 370억DM, 1992년에 360억DM를 節約하여 統一費用에 轉用시켰다.

그러나 財政赤字 規模가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경기형편상,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인 이유로 增稅規模를 급작스럽게 늘릴 수 없는 독일정부로서는 더욱 많은 支出削減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政府補助金 削減을 주된 지출삭감 분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表 VII-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總支出削減 豫定額의 절반 이상이 社會保障部門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表 VII-23> 聯邦緊縮프로그램에 의한 緊縮目標(1993~96)

(單位: 億DM)

	1993	1994	1995	1996
支 出 削 減	59.50	116.10	126.45	124.40
정부보조금	4.20	4.80	7.45	5.75
사회보장분야	39.70	77.00	83.50	83.00
기타분야	15.60	34.30	35.50	35.65
租 稅 支 援 削 減	0.00	11.65	14.75	17.20
計	59.50	127.75	141.20	141.60

資料: A. Boss and others, "BRD: Wirtschaftspolitik dämpft Konjunktur und Wachstum," *Die Weltwirtschaft*, 93/2, 1993, p. 23.

2)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Für Wachstumsorientierung-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pp. 156.

4. 獨逸政府의 統一費用 調達政策 選擇의 可能性과 展望

가. 概括的 統一費用 調達現況

1991년 및 1992년 獨逸政府가 각종 手段을 통해 統一財源을 마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表 VII-24>와 같다. 통일로 인해 公共部門 財政需要가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增稅나 支出削減 노력이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公共部門 財政需要의 大部分(1991년 68.9%, 1992년 73%)이 民間借入에 의해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公共部門의 財政赤字 擴大에 따라 公共部門 公債發行額은 1989년의 700억DM에서 1990년에 1,400억DM, 1991년에 1,500억DM, 그리고 1992년에 2,000억DM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政府에

<表 VII-24> 全體 公共部門의 財源調達 內譯

(單位: 億DM)

	1991	1992
增稅 (보험료포함)	296.5 (13.6)	282.5 (10.6)
支出削減	370.0 (17.0)	360.0 (13.5)
聯邦銀行收益等	12.0 (0.6)	75.0 (2.8)
民間借入 ¹⁾	1,500.0 (68.9)	1,942.0 (73.0)
計 ²⁾	2,178.5	2,659.5

註: () 안은 총규모에 대한 해당 재원조달 수단의 비중임.

1) 정부, 사회복지장기금, 각종 기금, 신탁관리청 등의 특별회계 포함.

2) 이 수치는 事後에 각 수단별 재원조달규모를 합산한 것으로서 정부부문 통일비용 규모와 일치하지 않음.

資料: 앞의 표들을 참고로 자체 작성함.

의한 公共部門 公債發行의 增大는 獨逸聯邦銀行의 高金利政策과 함께 海外로부터의 大量 資金流入을 초래했다.

〈表 VII-25〉는 獨逸의 資本收支 推移를 보여 주고 있다. 1990년은 662억DM의 長期資本收支 出超, 239억DM의 短期資本收支 出超로

〈表 VII-25〉 獨逸의 資本收支 推移

(單位: 億DM)

	總資本收支	長期資本收支	短期資本收支
1985	-54,564	-12,865	-41,699
1986	-82,551	+33,416	-115,967
1987	-38,997	-21,973	-17,024
1988	-127,523	-86,751	-40,772
1989	-135,599	-22,534	-113,065
1990	-90,113	-66,178	-23,935
1991	+14,406	-27,887	+42,293
1992	+134,780	+45,367	+89,413
1990.	1/4	-37,693	-36,848
	2/4	-23,123	-16,756
	3/4	-18,086	-20,904
	4/4	-11,211	+8,330
1991.	1/4	-4,242	-16,470
	2/4	+10,655	-23,396
	3/4	+13,226	-1,308
	4/4	-5,232	+13,287
1992.	1/4	+13,041	-11,617
	2/4	+12,959	-15,645
	3/4	+99,011	+46,735
	4/4	+9,769	+25,894
1993.	1/4	+19,620	+15,540
			+4,080

註: -는 자본수출, +는 자본수입을 의미함.

資料: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93/3, 1993, p. 85*.

총 901억DM의 資本去來 出超가 있었음에 비해 1991년은 長期資本收支 279억DM 出超, 短期資本收支 423억DM 入超로 144억DM의 資本輸入이 이루어졌다. 1992년에는 이러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長期資本收支 454억DM 入超, 短期資本收支 894억DM 入超로 1,348억DM의 資本收支 黑字를 기록하였고 1993년 1/4분기에도 196억DM의 資本輸入 超過를 기록하였다. 1992년의 資本輸入 超過規模는 당해 년도의 特別會計를 제외한 公共部門(정부, 사회보장기구, 각종기금) 財政赤字 規模인 1,480억DM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獨逸의 長期資本收支 內譯을 살펴보면 <表 VII-26>과 같다.

<表 VII-26> 獨逸의 長期資本收支 內譯

(單位: 億DM)

	1990	1991	1992	1993. 1
總 海外投資	-1,068	-929	-1,140	-153
직접투자	-370	-357	-269	-20
증권투자	-235	-263	-691	-113
기 타	-458	-309	-180	-20
外國人 總投資	+406	+650	+1,593	+309
직접투자	+37	+48	+46	+51
증권투자	+171	+640	+1,322	+321
주식투자	-32	+36	-30	-8
채권투자	+203	+604	+1,352	+329
공 채	+156	+471	+844	+252
기 타	+198	-38	+225	-63
長期資本收支	-662	-279	+454	..

註: -는 자본수출, +는 자본수입을 의미함.

資料: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93/3, 1993, p. 88*.

外國人の 對獨逸 證券投資 現況을 살펴보면, 1990년의 171억DM에서 1991년 및 1992년에는 각각 640억DM, 1,322억DM로 급증하

였는데 그 중 政府公債 買入額은 1991년 471억DM, 1992년 844억DM로서 外國人의 對獨逸 證券投資總額에 대한 比重으로 볼 때 1991년과 1992년 모두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外國人의 對獨逸 公債買入額은 1991년 471억DM, 1992년 844억DM로서 1991년과 1992년의 全體 公共部門 財政赤字額 1,512억DM와 2,145억DM의 각각 31%와 3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다시 말해서 1991년과 1992년의 全體 公共部門 財政赤字 規模의 3분의 1 정도가 外國人의 政府債券 買入에 의해 承擔되었던 것이다. EC國家들의 對獨逸 證券投資가 1991년까지 310억DM 증가한 반면 餘他 國家들의 證券投資가 90억DM 증가에 그쳤음에 미루어 볼 때 政府部門 財政赤字의 상당 부분은 EC國家들로부터의 資本輸入으로 承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³⁾.

나. 政策選擇의 可能性과 限界

1) 東獨地域 國營企業의 賣却代金

統一 初期에는, 東獨地域의 國營企業을 賣却하여 상당 규모의 賣却收益⁴⁾을 올림으로써 東獨地域 住民들에 대한 移轉所得을 비롯한 統一費用을 상당 부분 承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信託管理廳의 企業賣却 收益 規模보다 信託管理廳의 企業整備 및 環境淨化를 위한 補助金支出 規模가 더 크므로 國營企業 賣却收益이 統一費用 調達을 위한 政策代案이 더이상 될 수 없게 되었다.

2) 統一費用의 國民分擔을 위한 特別法의 制定

統獨으로 인해 經濟的 利得을 누리게 되는 계층으로부터 일정액의 連帶 寄與金を 징수하는 負擔調整(Lastenausgleich) 方案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물수재산을 返還 또는 補償받는 사람들, 그리고

3) 三星經濟研究所, 『世界經濟』, 1993. 5. 25, p. 73.

4) 第IV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동산, 주식, 저축, 보험 등의 분야에서 收益을 올리는 부유층에 대해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법이다.

戰後 1952년 舊西獨에서는 戰爭被害分擔法(Kriegslastenausgleichsgesetz)을 입법화하여 戰爭에도 불구하고 財産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一定額을 징수, 舊蘇聯 占領地에서 財産을 잃고 쫓겨난 실항민이 舊西獨에서 잘 定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다⁵⁾.

그러나 現實적으로 이러한 政策的 發想(특정 계층에 대해 통일비용 부담을 요구하는)을 實現시킴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많은 反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는 所得稅 및 法人稅에 7.5%의 限時的인 加算稅를 부과하는 방안이 보다 現實性이 있는 代案일 것이다.

3) 支出削減

東獨地域 支援을 위한 財政調達 方法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副作用을 最小化할 수 있는 것은 豫算項目의 支出額을 節減하여 이를 동독지역의 재정지원에 轉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豫算項目의 優先順位가 再調整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이루어질 支出削減 對象은 企業補助金과 租稅支援 분야인데 이에 대한 獨逸政府의 支出現況을 살펴보면 <表 VII-27>과 같다.

다음 대상인 社會福祉費, 防衛費 분야의 支出比重을 살펴보면 <表 VII-28>과 같다.

企業補助金(조세지원금 포함), 社會福祉費 및 防衛費 분야들의 규모를 모두 합하면 總財政支出의 절반 수준을 약간 밑돌므로 이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支出削減 餘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企業補助金은 기존 政府補助金이 西獨地域의 構造的 脆弱地區의 제조업, 교통 및 주택, 대량실업의 발생이 우려되는 구조조정기 산업 등과

5) 負擔調整基金에서 법제정 이후 1989년 말까지 총 1,390억DM가 지불되었다 (통일원, 『통독 2주년 보고서』, 1992. 10, p. 37).

〈表 VII-27〉 聯邦政府的 補助金 및 租稅支援 現況

(單位：億DM)

	1989			1990			1991			1992		
	計	F	S	計	F	S	計	F	S	計	F	S
農·林·食品業	56	42	14	58	44	14	96	80	15	67	61	5
製造業	143	65	78	145	59	86	176	92	84	171	88	83
交通分野	17	9	8	20	11	8	10	1	10	11	1	10
住宅分野	43	18	25	46	23	23	64	37	27	69	37	31
貯蓄 및 財産 形成支援分野	25	8	17	18	5	12	21	8	12	19	8	12
其他	16	-	16	15	-	15	18	-	18	19	-	19
計	299	141	158	301	142	159	385	218	166	356	195	160
東獨地域	-	-	-	-	-	-	109	85	24	110	67	43
西獨地域	-	-	-	-	-	-	276	134	142	246	128	118

註：F는 보조금액, S는 조세감면액을 나타냄.

資料：BMF, *Subventionsbericht 1991*, Bonn, 1991, p. 6.

〈表 VII-28〉 社會福祉費 및 防衛費 支出 比重

(單位：億DM)

	1987	1988	1989	1990
總財政支出	6,275	6,437	6,747	7,199
社會福祉費	1,767 (28.2)	1,832 (28.5)	1,961 (29.1)	2,098 (29.1)
防衛費	530 (8.4)	531 (8.2)	545 (8.1)	578 (8.0)

註：() 안은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임.

資料：BMF, *Finanzbericht 1993*, Bonn, 1992, pp. 284~285.

같은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東獨地域 産業이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削減을 감행할 名分은 충분하나 그 規模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防衛費는 統獨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現代化된 裝備의 구입 및 除隊兵力에 대한 年金支援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大規模 減縮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社會福祉費의 支出削減에 관해서는 認識의 大轉換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舊西獨의 경우 매년 總財政支出의 많은 부분(1990년의 경우 30% 정도)이 社會福祉를 위해 지출되는 등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손꼽혀 온 만큼, 이 분야의 支出削減은 低所得層의 生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큰 反對에 부딪혀 왔고 따라서 支出이 削減되기보다는 오히려 支出比重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져 왔다. 그러나 餘他 部門에서는 大規模 支出削減이 어려울 뿐 아니라 東獨地域의 産業이 危機에 처해 있고 大量失業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西獨地域에서만 높은 社會保障 惠澤을 누리는 것은 衡平性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東獨地域의 經濟가 西獨地域 수준에 근접하고 東獨地域의 雇傭이 西獨地域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의 支援費用을 調達하기 위해서는, 苦痛을 分擔하겠다는 西獨地域 住民들의 認識轉換을 바탕으로 東獨地域의 生活水準이 西獨地域 수준에 근접할 때까지 西獨地域의 社會保障 惠澤水準이 減少되어야 할 것이다.

4) 西獨地域 政府資産의 賣却

統一費用 마련이 시급한 만큼 西獨地域 政府가 보유하고 있는 公企業의 持分을 賣却함으로써 財源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政府가 公共性이 있는 企業의 運營에 參與하거나 失業發生이 우려되는 분야의 企業株式을 보유함으로써 이 분야 기업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것은 理論的인 차원에서는 論爭의 여지가 있다고 보나 지금과 같이 심각한 財源調達의 必要性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논쟁은 무시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賣却을 통해 財源調達が 가능하다면 이러한 재산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것이 서독지역 경제에 큰 副作用이 없이 東獨地域을 支援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政府保有 財産의 賣却이 民間市場에서의 資金梗塞을 가져와 投資를 萎縮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다.

참고로 1991년 말 현재 聯邦政府의 各 部處, 特別會計로 분류되는 鐵道廳, 遞信廳 등의 獨逸 國內企業에 대한 資本參與 規模는 총 214개 기업(107개 기업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에 帳簿價格을 기준으로 110억DM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⁶⁾.

5) 犯則金과 公共施設 使用料의 引上

교통위반 등에 대한 犯則金이나 각종 公共施設의 使用料 引上을 통해 小規模의 政府財政 收入增大를 기대할 수 있다.

6) 增 稅

統一費用으로 인한 西獨地域 住民의 稅金負擔은 없으리라는 舊西獨 政府의 統一 以前 約束과는 달리, 예상보다 惡化된 東獨地域 經濟의 復興을 위해서는 經濟成長으로 인한 稅收增大만으로는 늘어나는 政府財政 負擔을 충분히 充당할 수가 없었다.

政府資產 賣却이나 支出削減 등을 통한 財政收入 增大의 限界性에 비추어 볼 때 增稅는 불가피하나 이는 國民生活과 企業의 國際競爭力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稅目을 통해 어떠한 規模로 稅收增大를 도모하느냐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1991年 後半期 以後 增稅措置를 통한 獨逸政府의 租稅政策的 特徵을 살펴보면, 세목을 크게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個人所得稅, 企業所得稅, 財産稅 분야로 나누어 볼 때 特別消費稅 분야의 인상은 가장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石油稅, 保險稅, 煙草稅를 引上함으로써 1992년에 약 180억DM 정도의 稅收增大 효과를 보았고

6) BMF, *Beteiligungen des Bundes im Jahre 1991*, Bonn, 1992, p. 3.

環境保護와 國民保健 측면에서 이 부문의 세율인상은 國民的 抵抗이 거의 없이 이루어졌다. 勤勞稅, 所得稅, 法人稅에 7.5%의 加算稅를 부과함으로써 個人所得과 企業所得에 다 함께 부담지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企業의 負擔이 되어 왔던 營業稅 資本割⁷⁾을 1993년부터 廢止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오히려 營業稅 所得割과 財產稅의 賦課基準을 上向調整함으로써 企業負擔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企業의 稅負擔 輕減措置는 投資意慾을 鼓吹시켜야 할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肯定的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西獨地域의 產業生産도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東西獨地域 企業에 공히 적용되고 있는 現 規定이 合理的이라고 여겨진다. 東獨地域 投資에 대한 金融 財政手段을 통한 投資支援制度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與件이 서독지역에서의 여건과 平準化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增稅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서는 財產稅 및 附加價值稅 분야를 들 수 있다. 財產稅 分野(재산세, 토지세)는 總稅收에서 차지하는 政府比重(1992년, 2.3%)은 미미하나 統一과 같이 國家의 例外的인 重大事인 경우 限時的으로 財產課稅를 높여 稅收增大를 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野黨인 社民黨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附加價值稅는 1993년 초부터 14%에서 15%로 인상되었으나 追加的인 需要가 있을 경우 稅率을 보다 引上시킬 수 있는 餘地가 있다. 독일주변 EC國家들의 附加價值稅率은 <表 VII-29>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주변 EC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은 대체로 독일보다 높다. 그러므로 附加價值稅率만 감안하면 18% 수준까지의 稅率引上도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獨逸은 附加價值稅 負

7) 이는 企業의 資本規模에 比例하여 부과되는 基礎自治團體의 세목이며 營業稅 所得割과 더불어 彈力課稅로서 운용된다. 이 세목과 영업세 소득할을 합한 세수규모는 1992의 경우 442억DM 정도였다.

〈表 VII-29〉 EC國家들의 附加價值稅率

(單位：%)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英國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페인
稅率	22.0	21.0	19.0	19.0	18.6	18.5	18.0	17.5	17.0	12.0	12.0

註：1993년 이전의 세율임.

資料：J. Grünwald, "Eine Anhebung der Umsatzsteuer ist unansweichlich," *Wirtschaftsdienst*, 91/11, 1991, p. 548.

擔이 낮은 대신 直接稅 負擔이 높으므로 이를 감안할 때 16% 수준까지 附加價值稅率을 引上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7) 資本市場 借入

資本市場에서의 借入은 그 經濟的 影響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統一費用 調達方案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利率率 上昇을 통해 民間投資를 萎縮시키고 未來의 利率支給 및 元金償還 負擔으로 인해 國家財政의 運用幅을 극히 制限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現實的으로는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 統一費用 調達方案에 의해서도 統一 財政需要의 一部밖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殘餘分은 資本市場 借入을 통해 調達할 수밖에 없으나 가능한 한 그 規模를 줄여야 한다.

결국 政府支出 削減, 增稅, 그리고 資本市場 借入을 어떻게 適切히 調和시키느냐가 關鍵이라고 할 수 있다. 政府支出 削減은 中·短期 및 長期的으로 꾸준히 실행해 나가고 增稅도 適切한 稅目을 選定하여 中·단기 및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資本市場 借入은 이미 適正 規模를 넘어섰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短期에 있어서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5. 統一費用 調達方案의 理論的 比較

가. 增稅와 資本市場 借入

統一費用 調達方案 中 資本市場 借入方案은 直接的으로 民間家計 部門의 消費水準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으나 資本市場에서 利子率을 上昇시켜 民間投資를 萎縮시키게 된다. 그 반면에 稅率引上 方案은 주로 民間消費에 부담을 안기고 民間投資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안김으로써 資本形成과 經濟成長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資本市場 借入은 政府에 利子支拂 負擔을 안기고 政府는 결국 增稅를 통해 利子支拂 費用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未來 可處分所得의 減少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未來의 可處分所得에 대한 負擔이 現在의 民間 消費行態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야기된다. 이에 대해 「리카도」(D. Ricardo)는 增稅와 政府借入을 통한 통일재원 조달방안은 經濟主體들의 時間別 租稅負擔만이 다를 뿐 그 現在價値는 같다고 보고 經濟主體들의 情報歪曲이 존재치 않을 경우 民間 消費行態에 미치는 영향은 兩者가 同一하다고 주장하였다⁸⁾. 그러나 現實的으로 經濟主體들은 未來의 利子支拂로 인한 增稅를 고려하지 않고 現在의 消費水準을 결정하므로 稅率引上 방안은 政府借入 방안과 비교할 때 民間消費에 보다 많은 부담을 안기고 民間投資에 대해서는 적은 부담을 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資本市場 借入이 國內 資本市場이 아니라 外國 資本市場에서 이루어질 경우나 外國資本家가 國內에서 公債를 買入할 경우 國內 資本市場의 利子率이 변하지 않으므로 民間投資가 萎縮되지 않는다고 할

8) 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P. Sraffa(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1, 1970, p. 245.

수 있다. 固定換率制度下에서는 資本輸入이 外換市場에서의 國內通貨에 대한 需要를 增大시키므로 中央銀行이 外國通貨를 國內通貨로써 買入해야 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 變動換率制度下에서는 資本輸入이 國內通貨의 平價切上을 가져옴으로써 輸出이 減少하거나 輸入이 增大되어 貿易收支가 惡化된다.

政府借入으로 조달되는 자원은 본래 民間投資에 소요될 자금이고 稅率引上으로 조달되는 자원은 본래 民間消費에 소요될 자금이며 國民經濟의 資本스톡은 民間投資와 政府投資가 蓄積되어 형성되므로 成長效果面에서는 稅率引上 방안이 우월하다.

‘大規模 財政支出을 수반하는 歷史的 事件의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數世代에 걸쳐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財政支出 負擔을 여러 世代가 部分的으로 分擔하는 政府借入을 통한 財源調達이 적합하다’는 논리는 財政學 理論에 비추어 볼 때 問題가 있다. 이 논리는 근본적으로 現在의 投資는 未來에도 效用이나 利潤을 가져다 주므로 未來世代도 投資負擔을 分擔해야 한다(pay as you use)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⁹⁾. 閉鎖經濟를 가정할 때 財源調達 方案에 관계 없이 特定 時期에 使用될 수 있는 財貨는 그 時期에 生産된 財貨뿐이다. 다시 말해서 未來에 償還되어야 하는 現在의 政府借入에 대한 利子支給도 未來世代 構成員들 간의 所得移轉에 지나지 않는다. 現在의 政府借入이란 단지 現在 民間投資에 使用될 財源을 政府消費나 政府投資로 轉用하는 것(we pay it to ourselves)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未來의 利子支給을 위해 未來世代에게 增稅를 통한 負擔이 부과되나 未來世代 中 政府公債證書 所有者에게 利子支給이 이루어짐으로써 未來世代 全體는 負擔을 지지 않게 된다. 즉, 個別經濟主體間的 分配는 영향을 받으나 世代間的 分配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9) D. Brümmerhoff, *Finanzwissenschaft*, 2nd Ed., München, 1987, pp. 373~384.

반면에 政府借入이 外國資本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現在의 政府借入 負擔이 未來世代의 利子償還 負擔으로 나뉘어져 世代間 財政負擔의 分配가 가능해진다.

나. 直接稅와 間接稅

가장 代表的인 直接稅와 間接稅인 所得稅와 附加價値稅를 대비해 볼 때 우선 價格引上 效果는 附加價値稅가 지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附加價値稅 引上을 통해 通貨價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물론 附加價値稅 引上을 통한 價格上昇이 賃金과 價格을 競爭的으로 上昇시켜 持續的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所得稅 引上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능성은 존재한다.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附加價値稅는 一般消費稅로서 消費를 억제하고 貯蓄을 장려하여 資本스톡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附加價値稅를 成長效果面에서는 肯定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勞動보다 餘暇를 選好하게 하는 효과와 人的 資本의 形成을 阻害하고 暗市場 去來를 助長하는 효과도 있다¹⁰⁾. 그렇지만 所得稅의 경우에도 勞動供給을 줄이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分配政策的 관점에서 볼 때 附加價値稅가 一般所得稅보다 消費性 向이 높고 所得水準이 낮은 家計에 더욱 많은 부담을 안기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附加價値稅와 所得稅가 엄밀한 의미의 一般附加價値稅와 一般消費稅가 아닌 한, 그리고 이러한 一般性에 대한 例外가 늘수록 양자를 分配政策的 觀點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 附加價値稅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초생활품, 건축, 도서 및 문구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10) G. Kranse-Junk, "Eine bessere Alternative ist nicht in Sicht," Wirtschaftsdienst, 91/11, 1991, pp. 552~553.

VIII. 政府構造 改編과 社會經濟制度 整備

15個 區(Bezirk)로 나뉘어져 있던 東獨地域의 行政區域은 統一과 더불어 서독지역과 같이 州(Land)단위로 편성되었다. 즉, 舊東獨 以前の 行政區域대로 5個 州(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브란덴부르크, 튀링겐, 작센)가 다시 誕生한 것이다. 이로써 統一獨逸은 舊西獨의 11個 州를 합쳐 16個 州로 형성되는 聯邦共和國이 되었다.

統一條約 第20條에 따라 東獨地域 公共機關 從事者들은 전원 재심사를 받은 후 再任用하도록 되어있는바, 舊西獨 體制의 迅速한 확산과 過多人力의 減縮을 위해 舊東獨 體制에 積極 協助하였거나 行政需要가 사라진 분야의 종사자는 우선적으로 감축하였다. 과거 200만명에 달하던 舊東獨 公務員 중 현재는 140만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추계된다. 能率的인 行政體制 構築을 위해 聯邦, 州 및 地方自治團體에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구동독 공무원에 대해 聯邦 및 東獨地域 州들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西獨地域 州들의 公務員研修院 주관으로 研修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體制에 필요한 知識을 갖춘 公務員이 東獨地域에 不足함에 따라 西獨地域 公務員들의 新設 5個 州에 대한 과건 및 전보를 장려하기 위해 과건에 따르는 각종 補助金을 지급하고 進級上 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退職한 서독지역 공무원들도 지원자에 한해 1992년 말까지 限時的으로 東獨地域에 과건하였다.

1. 州政府間の 水平財政移轉制度(逆交付金制度)

가. 1994년까지의 水平財政移轉制度

舊西獨에는 財政力이 豊富한 州가 재정력이 貧弱한 州에 대해 交付金を 제공함으로써 地域間 財政均等化를 꾀하는 逆交付金制度가 있었다. 이러한 逆交付金制度는 聯邦政府의 財政支援이 없이 州政府間에 財政移轉이 이루어지는 水平的 財政調整 裝置이다.

逆交付金の 負擔 및 受取團體 구분은 課稅基準額과 調整基準額의 比率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비율이 1.02 以上인 州政府가 역교부금을 負擔하고 1.0 未滿인 州政府는 역교부금을 受取한다. 그 課稅基準額은 州에 歸屬되는 稅收額과 該當 州 內의 市·邑·面 稅收額의 合이 되며 調整基準額은 聯邦 全體의 1人當 平均稅收와 그 州의 住民數를 곱한 액수가 된다.

〈表 VIII-1〉 舊西獨의 逆交付金 負擔 및 受取 基準

課稅基準額(x)	0.92 未滿	0.92 以上 ~ 1.00 未滿	1.00 以上 ~ 1.02 未滿	1.02 以上 ~ 1.10 未滿	1.10 以上
調整基準額(y)					
負擔·受取	受取	受取	中立	負擔	負擔
負擔·受取規模	$(0.92y - x) + 0.08y \times 0.375$	$(y - x) \times 0.375$	0	$(x - 1.02y) \times 0.7$	$0.08y \times 0.7 + (x - 1.1y)$

資料 : D. Biehl, "Die Entwicklung des Finanzausgleichs in der BRD,"
Handbuch der Finanzwissenschaft, Vol. 4, Tübingen, 1983, p. 106.

이때 역교부금을 負擔하는 단체와 受取하는 단체는 課稅基準額과 調整基準額의 比率에 따라 각각 2段階로 나뉘며 재정력이 매우 豊富하거나 脆弱한 단체는 더욱 많은 역교부금을 부담 또는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모든 州는 課稅基準額과 調整基準額의 比率이 0.92~1.1 사이에서 逆交付金制度에 의해 保障된다.

〈表 VIII-2〉 水平財政移轉制度를 통한 州間的 財政移轉 推移

(單位：100萬DM)

	1987	1988	1989	1990	1991
총재정이전	3,199	3,360	3,515	4,024	3,946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16	+28	-99	-63	-
바이에른	-	-	-65	-36	-
바덴-뷔르덴베르크	-1,913	-1,920	-1,413	-2,472	-2,531
헤센	-1,228	-1,440	-1,927	-1,446	-1,307
함부르크	-58	-	-12	-8	-109
니더작센	+1,116	+1,578	+1,674	+1,927	+1,741
라인란트-팔츠	+478	+312	+304	+490	+592
쉴레스비히-홀스타인	+599	+596	+579	+602	+626
자르란트	+337	+333	+329	+366	+383
브레멘	+504	+513	+630	+640	+604

註：-는 수평재정이전제도를 통한 재정지출, +는 이를 통한 재정수입을 나타냄.

資料：BMF, *Finanzbericht 1993*, Bonn, 1992, pp. 131~132.

나. 1995年 以後의 水平財政移轉制度

獨逸의 現行 逆交付金制度는 통일 후 財政力이 몹시 脆弱한 東獨地域 州들을 포함시키지는 않고 1995년까지 猶豫시키고 있는데, 1995年 以後 이 제도로 인해 많은 財政負擔이 뒤따를 西獨地域 州 政府들의 反撥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水平財政移轉制度를 修正하지 않고 당장 東獨地域의 新設 5 個 州에 적용시킨다면, 東獨地域 州들의 稅收規模가 그들의 財政需要에 비해 매우 劣惡하므로 西獨地域 州들이 東獨地域 州들에 대해 260억DM 규모의 財政移轉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¹⁾. 그 중

1)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

145억DM는 州政府들의 割當分이면서 共同稅에 속하는 附加價值稅가 州政府들 간에 分配되는 過程에서 財政力이 脆弱한 州政府들에게 人口比例 以上으로 附加價值稅 稅收를 割當하는 등의 재정이전이 이루어지고 115억DM는 그 후에 다시 순수히 州政府들의 財源으로 州政府들 간의 財政力 隔差를 줄이는 過程에서 재정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西獨地域 州政府들의 財政負擔이 過重하여 지금까지 서독지역 州정부들이 제공하던 公共서비스의 수준을 維持하는 데 큰 支障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독지역 州정부들은 최근 現行 水平財政移轉制度의 規程을 그대로 둔 채 東獨地域의 新設 州들을 이 制度에 編入시키는 데 強力히 反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代案으로서 우선 聯邦政府가 自體財源으로 東獨地域 州政府들의 財政力이 平均 85%가 될 때까지 이들을 재정지원한 후 財政力 隔差의 縮小은 州政府들 간의 水平的 財政移轉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²⁾.

2. 稅務行政機構의 統合

가. 舊東獨의 稅務行政機構

舊東獨에서는 稅收入이 總國家財政收入의 10%에 불과하고 國家所有 企業의 義務納付가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 租稅는 社會主義化되지 않은 生産分野와 個人들에게만 부과되었는데 稅目別로는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土地稅, 相續稅, 財產稅, 그리고 販賣稅(다단계 판매세)가 존재하였고 그 중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던 세목(法

lung,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 Wege- Risiken*, 91/92, November 1991, p. 214.

2) *Ibid.*; M. Hüther, "Reform des Finanzausgleichs," *Wirtschaftsdienst*, 93/1, 1993, pp. 43~52; DIW, *Wochenbericht*, 92/52, 1992, pp. 322~324.

人稅)도 있었다.

國家財政에 차지하는 租稅比重이 舊東獨에서 미미하였던 것은 稅務行政機構가 獨立的인 機關으로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구동독의 세무행정기구는 행정구역인 地區(Kreise) 및 區(Bezirk)의 행정기구에 속했고 전국적으로 稅法에 대한 專門知識이 不足한 3,000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財政 및 價格調整部에서는 모두 20명 정도로 구성된 稅制팀이 이 분야의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表 VIII-3〉 舊東西獨의 稅務公務員 1人當 人口規模

(單位：名)

		稅務公務員 1人當 人口規模
舊	西 獨	약 600
舊	東 獨	약 5,500

資料：K. Manke, *Steuerverwal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Aufbau*, Hefte zur internationalen Besteuerung, Vol. 83, Hamburg: 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Finanz- und Steuerwesen, 1992, p. 6.

나. 統合過程의 主要 爭點(租稅制度의 單純化)

1990년 상반기 들어 일부 稅目을 없애는 방법 등으로 西獨地域의 租稅制度보다 單純化된 租稅制度를 東獨地域에 실현시키자는 주장이 대두했다. 이는 稅務行政機構가 거의 原始的이고 租稅制度에 대한 一般人的 認識이 不足한 東獨地域에 複雜한 西獨地域 租稅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동독지역 세무공무원의 數 및 水準과 조세 제도에 대한 住民들의 認識度 등에 맞게 單純化된 租稅制度를 당분간 시행하는 것이 現實的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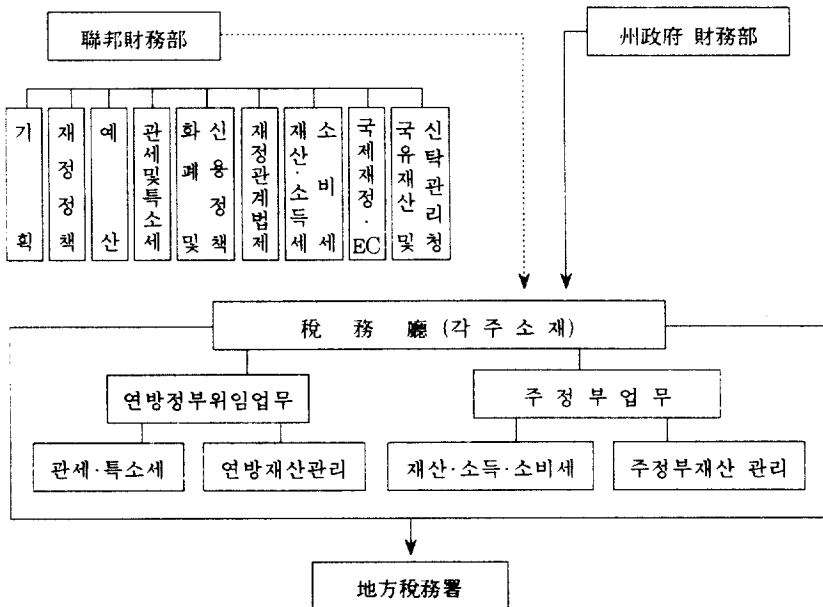
早速한 期間 內에 現代化된 租稅制度를 동독지역에 도입한다는 것은 현지 住民과 企業, 그리고 稅務行政機構의 努力과 함께 西獨地域

의 持續的인 協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서독지역의 협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西獨地域 州政府들의 稅務官廳에서 주관하는 東獨地域 稅務公務員들에 대한 敎育인데 이 敎育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單純化된 租稅制度를 습득하고 다시 敎育하는 것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早速한 期間 內에 동독지역의 조세제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當爲에 어긋난다. 稅額의 算定과 確定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서독지역과는 다른 조세제도를 동독지역에 실현시키는 것은 技術的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開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 東獨地域의 稅務行政機構 構築

이러한 이유에서 1990년 7월 1일에 우선 西獨地域과 同一한 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 制度가 동독지역에 도입되었고 其他 稅目들은

[圖 VIII-1] 西獨地域의 稅務行政機構圖



대개 1991년 초부터 시행되었다. 聯邦政府 財務部의 役割은 稅務行政機構의 組織, 自動化, 稅務公務員 教育 등에 관한 部門別 會議을 調整하는 데 그쳤고, 동독지역 세무행정기구의 구축을 위한 서독지역의 도움은 주로 西獨地域 州政府의 稅務官廳이 담당해야 했는데 이는 [圖 VIII-1]에서와 같이 서독지역의 세무행정기구를 州政府가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西獨地域의 주정부와 東獨地域의 신설 주정부는 結緣을 맺어 서독지역의 경험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동독지역의 각 稅務署(125개소)에 평균 10여명 정도 파견되어 業務를 指導한다. 東獨地域의 稅務行政機構 構築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人員과 自動化設備가 기능할 수 있는 物理的 空間을 마련하는 일이었으며 동독지역의 일선 세무서가 필요한 人力規模를 豫測하고 경험 있는 서독지역 세무공무원을 불러들이며 또 自體人力을 養成하는 것이었다. 中間管理者級 稅務公務員을 養成하기 위해 下級職을 448(224×2)시간 정도 교육한 후 下級管理者로, 그리고 또다시 448(224×2)시간 정도 교육한 후 中間管理者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數週間의 서독지역 세무서 現場教育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현재 이러한 管理者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東獨地域에서는 2~3年の 근무경력 이 필요한데 西獨地域의 경우 약 10年の 근무경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독지역 주정부는 경험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東獨地域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西獨地域 근무시보다 월 2,000~2,500DM가 높은 稅後收入을 보장하고 한 職級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特典을 부여하기도 했다.

라. 問題點

1) 納稅義務者의 把握

稅務行政體系의 틀이 거의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體系가 확립될 때 가장 먼저 당면하게 되는 課題 中の 하나는 納稅義務

者를 把握하는 일이다. 특히 法人稅와 附加價值稅의 納稅義務者를 把握하기 위해 세무관청은 東獨地域 州政府들로부터 信託管理廳의 管理下에 있거나 관리를 거쳐서 民營化된 舊東獨 國營企業들의 名簿와 이들에 대한 其他 情報들을 제공받는다. 또한 多樣한 部門의 行政官廳들로부터의 情報과 言論의 報道資料를 활용하기도 한다.

2) 稅額判定

稅務官廳이 納稅義務者들의 書面提出 情報만으로 稅額判定을 내리기에 不明確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990년도 營業 및 所得 實績에 대한 稅額判定이 1992년 3월까지도 겨우 3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不明確한 情報를 再調査·處理하는 데 많은 時間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991년도 營業 및 所得 實績에 대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의 稅法規定이 最初로 適用되어 稅額判定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에는 보다 많은 西獨地域 稅務官廳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聯邦財務部는 東獨地域 稅務官廳의 稅額判定을 돕기 위해 '判定指針書'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稅務調査

稅務行政體系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한 西獨地域 投資者들의 租稅回避 움직임이 많이 포착됨으로써 稅務調査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人力 및 組織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稅務調査는 販賣稅(부가가치세)의 경우 納稅義務者가 稅法規定을 상세히 익힐 수 있는 機會로 이용하기도 한다.

4) 營業稅 및 財產稅의 免除

稅務行政과 住民 및 企業의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1991~92년간 營業稅(자본금에 부과됨)와 財產稅의 納稅義務를 免除하였고 이는

다시 1993~94년간으로 延長되었다. 財産稅 免除對象은 東獨地域 居住者의 全體財産(서독지역과 동독지역에 소재한 모든 재산)과 東獨地域 非居住者의 東獨地域 內 財産이다. 그러나 租稅回避를 위해 居住地를 移轉하는 등의 問題點이 노정되고 있다.

3. 東獨地域 銀行制度의 改編

가. 舊東獨의 銀行制度

1) 基本構造

舊東獨의 金融制度는 計劃經濟體制의 一部로서 中央의 統制를 받는 單一銀行制度였다. 그러므로 中央銀行 機能과 商業銀行 機能이 모두 東獨國立銀行에 集中되어 있었다. 이 은행은 產業部門別로는 產業體支店, 地域別로는 地域支店을 두고 있었으며, 산하에 貯蓄銀行, 農業食糧經濟銀行, 信用協同組合 등을 두고 있었다. 이 傘下機關들은 國立銀行의 直接的인 監督을 받았고 獨立性이 거의 없었다. 한편 對外去來와 관련해서는 獨逸對外貿易銀行이 있었다.

2) 個別銀行

가) 東獨國立銀行

이는 發券機關, 國家經濟의 最終的인 會計 및 支給決濟 機關, 商業銀行 등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組織으로는 東베를린에 本店을 두었고 15개의 區域管理事務所, 41개의 產業體支店, 180개의 地域支店, 그리고 100여개의 出張所 및 換錢所를 두고 있었다. 東獨國立銀行은 金融部門에 관한 政府의 決定事項을 다른 모든 銀行에 指示·監督하였다.

나) 貯蓄銀行

이는 주로 個人的 貯蓄, 支給去來 또는 消費信用 업무를 취급하였는데 貯蓄預金 利子率은 3.25%였다. 1989년 말 현재 總貯蓄預金の

80% 정도가 貯蓄銀行에 예금되었고 저축은행은 이를 다시 國立銀行에 예치하였다. 貯蓄銀行의 貸出은 個人住宅 建設, 消費財 購入 및 新婚夫婦 貸出 등과 같이 個人用途에 限定되어 있었으며 196개 기관이 3,000여개의 支店을 갖고 있었다.

다) 信用協同組合

이는 수공업 및 판매업 부문에 대해 協同組合 機能, 個人預金の受取 및 貸出業務, 支給去來 決濟業務 등을 담당하였는데 3만여개 生産協同組合의 主去來銀行으로서 95개 信用協同組合이 있었다.

라) 農業食糧經濟銀行

이는 農業, 林業, 食料品産業에 대한 財政政策 支援業務를 수행하였는데 이 분야의 콤비나트, 協同組合 등에 대한 主去來銀行으로서 預金, 貸出, 支給去來 決濟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獨逸對外貿易銀行

이 은행의 주요 업무는 對外資本去來에 관한 計劃·執行·統制와 外國銀行과의 協力, 海外支給去來, 借款 및 元利金償還, 國際外換市場 參與, 輸出業體의 資金統制 및 外貨資金 貸出 등이었다. 이 은행은 여타 은행에 비해 비교적 높은 裁量權을 가지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항상 國家經濟委員會, 海外貿易部, 財務部, 國立銀行 등과의 調整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株式會社 形態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주식을 國立銀行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일부만을 海外貿易機關이 소유했다.

나. 東獨地域 銀行制度의 改編

1990년 7월 1일 구동서독간에 通貨統合이 이루어짐에 따라 獨逸聯邦銀行이 東獨地域에서의 通貨主權 및 通貨信用 業務를 행사하게 되었고 東獨地域의 金融制度 改編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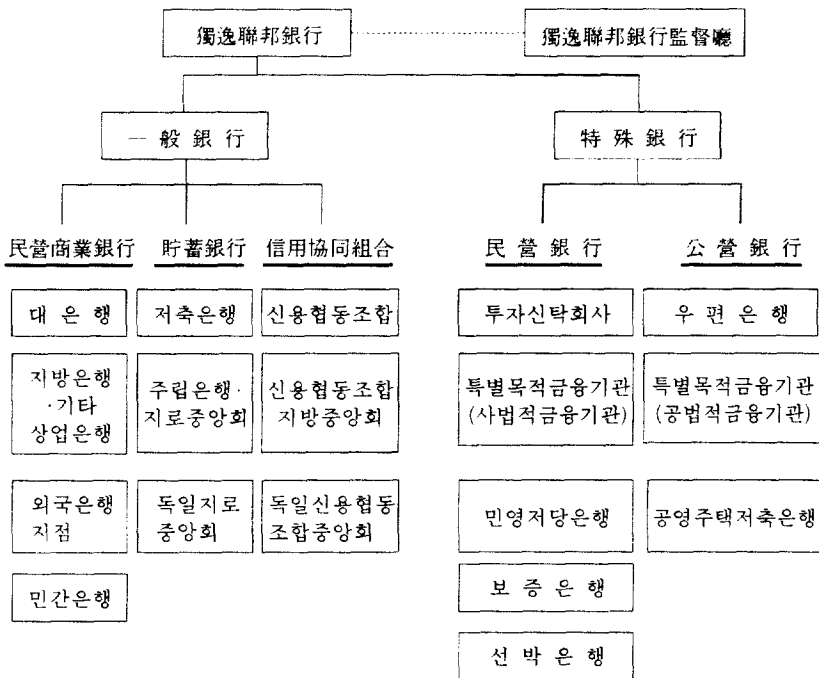
獨逸聯邦銀行은 東獨地域의 銀行監督, 制度改編 및 通貨管理를 위해 1개의 臨時管理所와 15개의 事務所를 설치·운영하였다. 그러나

臨時管理所는 1992년 10월 말을 끝으로 임무를 다하고 獨逸聯邦銀行의 支店이 동독지역에 확대·개편되었다.

1) 東獨地域 銀行制度 改編의 基本原則

市場經濟原理를 근간으로 하는 新經濟體制의 도입은 金融部門에서도 資金의 흐름이 市場經濟原理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각 金融主體의 貯蓄, 投資 또는 貸出行爲가 收益, 리스크 및 코스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圖 VIII-2] 獨逸의 金融機關 體系圖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新金融體系로서는, 商業銀行 및 여타 金融仲介機關의 활동영역과, 傳統의인 中央銀行 機能을 制度的으로 分離하는 二元的 金融體系(two-tier banking system)가 바람

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第1次 國家條約에서도 東獨地域은 이원적 금융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西獨地域의 金融關聯法과 監督體系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구동서독 通貨統合으로 東獨國立銀行의 中央銀行 機能은 舊西獨의 獨逸聯邦銀行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東獨國立銀行은 州의 中央銀行 자격으로 獨逸聯邦銀行 理事會에 참석하게 되었다. 商業金融 部門에서는 家計 및 企業의 資金需要 增大에 따라 東獨地域의 投資 및 金融서비스 형태가 西獨地域과 유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西獨地域의 兼業主義(universal banking system)가 도입될 것이다. 外國金融機關의 進出에 대해서는 EC의 金融關聯 法規 및 規定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東獨地域 銀行制度의 基本構造

종전과 같이 東獨國立銀行이 中央銀行과 商業銀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單一銀行制度는 시장경제원칙에 적합하지 않아 東獨國立銀行은 구동서독 統合 以前에 이미 베를린國立銀行과 獨逸信用銀行으로 분리·해체되었다. 즉, 발권업무, 통화관리업무 등의 中央銀行 機能은 獨逸中央銀行이 인수하고 베를린國立銀行은 東獨國立銀行의 조직을 변경하여 東獨地域 內의 저축은행을 비롯한 용자기관의 交換決濟 機能을 수행하면서 경제재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주택건설 지원 등에 따른 公共部門 資金需要를 支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獨逸信用銀行은 商業銀行 業務, 즉 기업, 주택건설업체, 보험회사, 가계 등을 대상으로 한 一般銀行 業務를 인수했다.

동독지역의 貯蓄銀行과 信用協同組合은 변화된 경제체제에 대응하여 營利追求를 본격화함에 따라 기존조직과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통합을 추진하였다.

한편 西獨地域 銀行들은 通貨統合 以前인 1990년 4월부터 東獨地域 內에서 事務所 또는 合作銀行의 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하였고 通貨統合 以後에는 기존 은행을 흡수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으

로 업무를 확대하였다. 도이체銀行(Deutsche Bank)은 이미 10억 DM(85% 지분)를 출자하여 東獨信用銀行과 合作銀行을 설립함으로써 東獨信用銀行의 기존 영업소(122개) 및 직원(8,500명)을 인수하는 한편 1억DM를 별도로 투자하여 東獨地域에 18개 支店을 개설한 바 있다. 드레스너銀行(Dresdner Bank)도 이미 東獨地域의 南部를 중심으로 35개 지점을 개설하는 한편 東獨信用銀行과 合作投資하여 총자산 5억DM의 드레스너信用銀行(Dresdner Kreditbank)과 72개 지점을 신설하면서 동독지역 주민 3,500명을 고용하고 새로운 營業戰略과 金融技法에 대해 再教育을 실시하였다. 商業銀行(Commerzbank)은 동독지역에 26개 지점과 12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직원 중 460명은 西獨地域에서 파견하고 나머지는 現地 銀行從事者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자본금 1억 9,000만DM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3) 東獨地域의 金融機關 現況

〈表 V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화통합 당시 총 565개였던 東獨地域의 金融機關數는 1992년 6월 말 현재 554개로 줄었다. 貯蓄銀

〈表 VIII-4〉 東獨地域의 金融機關 現況

(單位: 個)

	1990. 7. 1	1991. 6. 30	1992. 6. 30
民營 商業 銀行	4	79	76
貯 蓄 銀 行	196	195	182
信用 協 同 組 合	361	320	281
其 他 ¹⁾	4	19	15
計 ²⁾	565	613	554

註: 1) 부동산 금융기관 등 특별목적 금융기관에 해당함.

2) 동독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됨.

資料: 韓國銀行 調査第1部, 『獨逸의 金融制度』, 업무참고자료 93-2, 1993, p. 119.

行과 信用協同組合은 통화통합 후 활발한 통폐합을 통해 그 수가 각각 7% 및 22% 정도 줄어든 반면 民營商業銀行은 통화통합 당시 4개이던 것이 1992년 6월 말 현재 76개로 크게 늘었다.

이와 같이 東獨地域에서는 모두 554개의 金融機關이 약 4,500개의 支店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西獨地域 金融機關이 약 1,300개를 차지하고 있다. 東獨地域의 銀行密度(bank density)는 西獨地域의 약 2분의 1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독지역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약 8.3개의 금융기관 및 지점이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동독지역은 약 3.8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4) 東獨地域 金融機關의 營業規模

東獨地域 金融機關의 與·受信 實績은 통화통합 당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民間與信은 통화통합 당시의 2,000억DM에서 1992년 6월 말 현재 900억DM로 대폭 줄어든 반면 民間受信은 통화통합 당시의 1,830억DM에서 1992년 6월 말 현재 1,620억DM로 소폭 줄었다. 이는 西獨地域의 民營商業銀行들이 東獨地域에 진출하여 民間與信 業務를 적극적으로 해오다가 통일 이후 現地の 投資마인드가 점차 위축되자 民間與信을 대폭 축소시킨 데 기인한다.

통화통합 당시 東獨地域의 貯蓄銀行 및 信用協同組合의 與信業務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2,000억DM 규모의 與信 중 절대다수가 東獨信用銀行과 베를린國立銀行에 의한 것인데 이는 東獨國立銀行의 國營企業에 대한 貸出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통화통합 이후 貯蓄銀行과 信用協同組合이 統廢合되어 본격적인 對顧客 營業活動을 강화함에 따라 民間與信이 서서히 증가, 1992년 6월 말 현재 總與信規模의 각각 31.5%와 13.1%를 수용하면서 地域銀行으로서의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1992년 상반기 들어 貯蓄銀行과 信用協同組合은 與信規模를 각각

〈表 VIII-5〉東獨地域 金融機關의 民間 與·受信 規模 推移

(單位：億DM)

	民間 與 信		民間 受 信	
	1990. 7. 1	1992. 6. 30	1990. 7. 1	1992. 6. 30
民營商業銀行	1,500	450	480	370
貯蓄銀行	100	280	1,020	980
信用協同組合	30	120	200	270
其 他 ¹⁾	370	50	130	00
計 ²⁾	2,000	900	1,830	1,620

註：〈表 VIII-4〉와 동일.

資料：韓國銀行 調査第1部, 『獨逸의 金融制度』, 업무참고자료 93-2, 1993, p. 120.

〈表 VIII-6〉東西獨地域 金融機關의 民間與信 成長規模 比較(1992. 6. 30)

(單位：億DM, %)

	東 獨 地 域		西 獨 地 域	
	與 信 規 模	成 長 率	與 信 規 模	成 長 率
貯蓄銀行	46	19.3	251	3.9
信用協同組合	18	18.0	156	4.3
計	134	15.9	990	3.4

註：1991년 12월 31일 대비.

資料：Deutsche Bundesbank, *Abschlussbericht;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Berlin, 1992, p. 47.

〈表 VIII-7〉東西獨地域 金融機關의 民間與信 規模 比較(1992. 6. 30)

(單位：億DM)

	東 獨 地 域		西 獨 地 域		計	
	與 信 規 模	比 重	與 信 規 模	比 重	與 信 規 模	比 重
貯蓄銀行	283	4.1	6,601	95.9	6,884	100.0
信用協同組合	118	3.0	3,756	97.0	3,874	100.0
計	899	2.9	30,057	97.1	30,956	100.0

資料：Deutsche Bundesbank, *Abschlussbericht;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 Berlin, 1992, p. 46.

19.3% 및 18% 확장하였는데 동 기간에 西獨地域에서 同種의 銀行集團이 각각 3.9% 및 4.3%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東獨地域 金融機關의 與信規模는 〈表 VIII-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 西獨地域 金融機關의 3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 銀行制度 改編過程의 主要 爭點

1) 東獨地域 經濟에 대한 資金供給

가) 通貨信用政策의 隘路要因

東獨獨立銀行에 따르면 1989년 말 현재 통화통합 이후의 東獨地域 金融資產은 약 1,500억DM에 달할 전망이므로 規模面에서는 西獨地域 獨逸聯邦銀行의 通貨政策을 攪亂시킬 수준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동독지역 금융자산의 通貨性 程度를 과약하기가 어렵더라도 이러한 규모가 인플레이션 壓迫要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通貨政策과 관련한 不確實性은 오히려 東獨地域에 있어서 金融制度의 改革과 새로운 金融商品의 導入, 그리고 物價改革이 通貨需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서독지역의 獨逸聯邦銀行은 金融市場 動向에 민감하게 대응하더라도 適正通貨量 水準을 모색하기까지는 몇 차례의 施行錯誤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經濟規模를 감안할 때 東獨地域의 適正通貨量 水準은 西獨地域의 10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獨逸 全體의 經濟攪亂 要因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동독지역의 M_3 가 20% 증가하더라도 독일연방은행의 全體 通貨圈域에서는 2%에 불과하다.

나) 再割引政策

舊東獨 計劃經濟下의 金融制度에 있어서는 中央銀行 再割引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獨逸聯邦銀行은 東獨地域에 過渡期的인 措置를

취해야만 했다. 우선 西獨地域과 같은 正常的인 再割引方式(자기자본 규모, 개별 은행의 영업구조, 再割引適格어음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 방식)을 적용시키지 않고 東獨地域에 대해서는 特別適用 方式을 취했다. 1990년 7월 1일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새로이 편입되는 東獨地域 經濟에 充分한 資金을 공급하기 위해 東獨地域 金融機關에 총 250억DM의 再割引限度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서독지역의 재할인한도 총 590억DM와 비교할 때 큰 규모이다. 個別 銀行으로의 再割引限度는 각 은행의 總資産規模에 따라 분배된다.

1991년 2월 1일 이후 환매채(RP)의 취급을 허용함에 따라 再割引限度를 1991년 7월 1일부터는 180억DM, 1991년 1월 2일부터는 100억DM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992년 6월 30일부터는 이러한 特別限度를 廢止, 西獨地域과 同一한 再割引方式을 적용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동독지역 금융기관들이 聯邦銀行 再割引適格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獨逸聯邦銀行의 再割引時에 필요한 擔保어음으로서 商業어음 외에 銀行의 自體어음도 허용했다. 다만 自體어음의 割引限度는 각 은행의 平衡請求權 以內로 제한하여 餘他 適格어음에 적용되는 第三者保證을 免除하는 대신 平衡請求權으로 支給을 保證한다. 재할인한도의 축소와 병행하여 擔保어음에서 차지하는 自體어음 比率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1991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自體어음을 25%만 허용하다가 1992년 6월 30일부터는 商業어음만 허용하고 있다.

다) 公開市場操作政策

東獨地域 金融機關은 初期에 證券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므로 聯邦銀行이 제공하는 資金供給方法 中 公開市場操作 方式에는 참여치 못하고 再割引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에만 의존하였다(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할인한도가 허용된 것임). 1990년 11월 29일 서독지역 獨逸聯邦銀行 理事會의 결의로 東獨地域 金融機關의 公開市場操作 參與가 허용된 후, 독일연방은행이 最初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證券買入을 공고하였을 때 參與意思를 밝힌 금융기관은 60개 사였으며 그 規模는 약 65억DM였으나 1992년 8월 말 현재는 359 개사가 약 350억DM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表 V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독지역의 資金供給 方式은 1992년 8월에 이르러 1991년 2월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公開市場操作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表 VIII-8〉 東獨地域의 資金供給 規模

(單位: %)

	1991. 2	1992. 8
再 割 引	83	29
公開市場操作	16	70
롬바르드貸出	1	1

라) 支拂準備率政策

1990년 4월 17일 獨逸聯邦銀行 理事會의 결정에 따라, 西獨地域 金融機關에 적용되는 支拂準備率 規定이 1990년 7월 1일의 通貨統合 以後 東獨地域 金融機關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다만 적용시기는 약 1개월의 猶豫期間을 둔 1990년 8월 1일 이후부터이다.

2) 通貨統合 및 銀行制度 改編으로 인한 東獨地域 金融機關의 負擔

독일연방은행은 동독지역의 商業銀行制度 確立을 위해 우선 'DM貨表示 開始貸借對照表 및 資本金 精算法(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을 제정하여 은행이 새로운 대차대조표를 만들도록 하였다. 통화통합과 더불어 信託管理廳은 東獨地域 企業이 通貨統合 以前부터 지닌 負債를 減免해 주었고 이로써 이 기업들과 거래관계에 있던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손실분은 연방정부가 平衡請求權³⁾(Ausgleichforderung: equalization bond)을 발행하여 보상토록 하였다. 이 평형청구권은 1995년 7월부터 40년간 分割償還토록 되어 있다. 또한 독일연방은행은 동독지역 은행의 資本金을 현행 銀行法 및 國際決濟銀行의 規程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資本金 規模를 總資產의 4%가 되도록 하고 危險資產 및 自己資本의 比率도 西獨地域의 18배보다 낮은 13배 이내로 규제, 각 은행의 資本金이 이에 未達할 경우 不足分은 平衡請求權으로 보충토록 하였다.

銀行들의 'DM貨 表示 開始貸借對照表' 제출과 監督院의 檢사는 은행들의 지식부족으로 記載上의 誤謬가 많아 1992년 3월 중순까지 8건의 平衡請求權(1억 200만DM 규모)만이 처리될 정도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銀行業務의 負擔을 줄여주기 위해, 신청된 平衡請求權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債務證書로 잠정교환해 주고 있다.

3) 東獨地域 金融機關에 대한 獨逸聯邦銀行의 監督

통화통합과 더불어 동독지역이 銀行監督 領域에 편입됨에 따라 베를린에 설치된 獨逸聯邦銀行 臨時管理所가 동독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독지역 금융기관은 새로이 적용되는 金融機關 關聯法 規定과 市場經濟體制下의 銀行經營에 대한 理論的, 實務的 知識이 不足하기 때문에 독일연방은행과 은행감독원에

3) 東獨地域 銀行制度의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대차대조표상의 平衡請求額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예컨대 貯蓄銀行과 信用協同組合의 경우 通貨交換의 不均衡(대변 2:1, 1인당 일정액에 대한 차변 1:1, 기타 2:1)으로 인해 제기될 평형청구액이 매우 높다. 또한 외국과의 상품 또는 재정거래를 승인해야 하는 對外貿易機構의 경우 對外負債는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差額補償請求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獨逸信用銀行의 경우 國內會社 全體를 담당하기 때문에 借·貸邊間의 交換比率이 거의 동일하다(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e, 90/7, 1990, pp. 25~27).

〈表 VIII-9〉 統合條約에 따른 東獨마르크貨 對 DM貨의 交換比率을 想定한 貸借對照表

貸 邊	億東獨마르크	交換比率	億DM	借 邊	億東獨마르크	交換比率	億DM
1. 國內債務者에 대한 信用貸付 合計	3,975	—	1,807	1. 國內 非銀行機關의 預置金 合計	2,499	—	1,566
국 가	606	2 : 1 ¹⁾	123	국 가	108	2 : 1	54
대외부채 가치수정 신용대부	312	—	—				
1948년 통화개혁시 기초자금	49	—	—				
마련에 따른 대국가 청구권							
기 업	2,317	2 : 1	1,158	기 업	570	2.05 : 1 ³⁾	278
주택부문	1,026	2 : 1	513	민 간			
민 간(주택건축 신용대부 제외)	25	2 : 1	13	민간인의 지로 및 저축예금			
				내국인예치 외화	1,656	1.44 : 1 ⁵⁾	1,150
				외국인예치 외화	23	2.05 : 1 ⁶⁾	11
				생명보험	142	2 : 1	71
2. 對外債權	450	—	363	2. 對外負債	1,525	—	550
a. CMEA 회원국 ¹⁾	174	—	87	a. CMEA 회원국 ¹⁾	11	—	6
b. 서방산업국 및 개발도상국 ²⁾	276	—	276	b. 서방산업국과 개발도상국 ²⁾	550	— ²⁾	550
				c.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 ^{3) 4)}	964	— ⁷⁾	—
3. 資本出資	11	1 : 1	11	3. 流通現金(은행잔고 제외)	136	2 : 1	68

〈表 VIII-9〉의 繼續

貨 邊	億東獨마르크	交換比率	億DM	借 邊	億東獨마르크	交換比率	億DM
4. 其 他	31	2 : 1	15	4. 累積受益 · 準備基金 · 保證金	234	1 : 1	234
				5. 其 他	72	2 : 1	36
小 計	4,466	—	2,196	小 計	4,466	—	2,460
貨 邊 調 整 項 目	—	—	264	借 邊 調 整 項 目	—	—	—
總 計	4,466	1.81:1	4,460	總 計	4,466	1.18:1	2,460

- 註 : 1) 245억동독마르크의 잔고에 대한 교환으로서 이 잔고는 대외부채에 대한 가치조정을 거친 신용대부(312억동독마르크)와 1948년 통화 개혁 당시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포함)에 따른 채권(49억동독마르크)을 차감계정했을 때 대외부채정산준비금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게 됨.
- 2) 本表의 대외채권(대변 2b)과 대외부채(차변 2b)는 1989년 말 현재의 시세로 평가됨. 최종 교환시에는 1990년 6월 30일의 시장시세가 적용됨. 이때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차변 2b에는 내국인의 외화예치금도 포함됨).
- 3) 19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외국인 예치금 외화에 대한 교환비율은 3 : 1, 그 밖에는 2 : 1이 적용됨.
- 4) 이는 원래 국가에 대한 은행의 부채로서, 차변 1에도 해당 가능함. 2의 대외부채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독마르크화로 낮게 평가된 대외부채의 가치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 5) 64억DM(2,000동독마르크×320만명), 404억DM(4,000동독마르크×1,000만명), 180억DM(6,000동독마르크×300만명)의 합계인 648억DM가 1 : 1의 비율로 교환됨. 나머지 1,800억동독마르크는 2 : 1의 비율로 교환됨.
- 6) 1989년 말 현재의 총예치금액 21억동독마르크는 2 : 1의 비율로, 나머지는 3 : 1의 비율로 교환됨.
- 7) 대외부채의 가치수정에 따른 신용대부(312억동독마르크)와 1948년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 포함)에 따른 채권(49억동독마르크) 중 일부는 차감계정됨. 수치상 잔액(601억동독마르크)은 조정항목의 삭감명목으로 처리됨.

資料 :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e, 90/7, 1990, p. 26.

서 요구하는, 은행감독에 필요한 각종 申告를 일정 기간 동안 免除받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은 매월 금융기관의 總與·受信高를 신고만 하면 되었다(현재 이 기간은 지났음).

통화통합과 더불어 동독지역 금융기관들은 서독지역 금융기관의 지점들과 경쟁해야만 했는데 與信業務 能力이 不足했으므로 독일연방은행과 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서독지역 금융기관보다 더 심도있는 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은 동독지역 금융기관들이 결연을 맺고 있는 서독지역 금융기관들의 협조로 銀行業務에 대한 知識이 축적되어 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獨逸聯邦銀行도 銀行監査, 支拂準備金 및 銀行業務와 外換 및 貿易에 관한 統計 등의 부문에 대한 敎育을 통해 동독지역 은행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

4) 東獨銀行의 不實債權 問題

구서독과의 경제통합 이후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貸出債權(1989년 말 현재 약 2,600억 동독마르크로 추정됨)은 貸損處理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주택건설 자금대출을 포함한 家計部門 貸出이 1989년 말 현재 총 1,100억 동독마르크에 달하고 있어 그 규모로 보아 문제의 소지가 많다.

不平等交換(통화통합시 금융기관 자산에 대해서는 2:1 교환, 부채에 대해서는 1:1 교환원칙 적용)에 따른 금융기관 貸借對照表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對政府 平衡請求權에 대해서는 1995년 7월부터 40년간 分割償還토록 되어 있을 뿐 동 청구권의 충당을 위한 財源造成 計劃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資産 및 負債 갭은 個別 金融機關의 과실이 되기보다는 不合理한 計劃經濟體制의 產物로도 볼 수 있으므로 政治的으로 이를 正當化시켜 줌으로써 그 부담을 貯蓄者에게 轉嫁시키지 않도록 공공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表 VII-10〉 金融機關別 店鋪數, 營業規模 및 市場占有率(1991年 末)

(單位: 個, 10億DM, %)

	銀行數	總店鋪數 ¹⁾	營業規模 ²⁾ (比率)	與信(比率)
一般銀行	4,239	49,270	4,287(76.9)	3,941(76.1)
민영상업은행	342	7,317	1,454(26.1)	1,324(25.6)
대은행 ³⁾	4	3,629	524(9.4)	470(9.1)
지방은행	199	3,195	783(14.0)	713(13.8)
외인지점	59	96	75(1.3)	74(1.4)
개인은행	80	397	71(1.3)	66(1.3)
저축은행군	746	20,688	1,994(35.8)	1,853(35.8)
지로중앙회(지방,독일)	12	469	829(14.9)	797(15.4)
저축은행	734	20,221	1,165(20.9)	1,056(20.4)
신용협동조합군	3,151	21,265	839(15.1)	764(14.8)
중앙회(지방,독일)	4	59	201(3.6)	178(3.4)
신용협동조합	3,147	21,206	638(11.4)	586(11.3)
特殊銀行	230 ⁴⁾	461 ⁴⁾	1,287(23.1)	1,238(23.9)
부동산금융기관	35	105	654(11.7)	640(12.4)
민영저당은행	28	78	488(8.8)	477(9.2)
공영저당은행	7	17	167(3.0)	163(3.1)
특별목적금융기관	16	123	562(10.1)	541(10.4)
우편은행	16	16	71(1.3)	57(1.1)
計	4,469	49,731	5,574(100.0)	5,179(100.0)

註: 1) 은행수, 국내지점, 해외지점, 해외자회사를 포함함. 해외자회사란 은행, 팩토링, 리스회사 등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임.

2) 총자산에다 재할인어음 배서에 따른 보증채무, 자기어음발행잔액, 추심 중인 할인어음 등을 합한 금액임.

3) 독일은행, 드레스너은행, 상업은행과 그 베를린 자회사임.

4) 건축대부조합, 주택저축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결제은행, 보증은행 등을 포함한 수치임.

資料: 韓國銀行 調査第1部, 『獨逸의 金融制度』, 업무참고자료 93-2, 1993, pp. 52~53.

먼저 企業 및 家計部門의 自體保有 資金 600억 동독마르크와 東獨 國立銀行의 대차대조표상에 기업부문을 위한 充當金 명목으로 조성해 온 資金을 企業負債와 相計시켜 金融기관的 對政府 調整基金請求權을 최소화하더라도, 平衡請求權은 약 570억DM에 달할 전망이다.

4. 社會保障制度의 確立

가. 東獨地域에 實施할 社會保障의 原則

‘經濟·社會·通貨統合條約’ 第18條에 의거 동독지역에 다음과 같은 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되었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의 社會保險은 국가의 법적 감독하에 각각 公的인 自治機構를 保險料에 의하여 운영하며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의 保險料率은 서독지역의 요율을 적용한다. 年金保險料와 失業保險料는 피용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產災保險料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保險金 支給額數는 피보험자의 報酬水準을 기초로 결정된다. 우선 연금, 의료, 산재보험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이 담당토록 하되 收支決算은 保險別로 처리한다. 1991년 1월 1일까지 연금, 의료, 產災保險機關을 각각 설립하는데 이는 西獨地域의 각 保險制度와 同一한 보험기구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다.

동독지역에서 保險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 義務條項은 暫定的으로 계속 維持한다. 自營業者나 自由業者의 경우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 危險分散이 가능할 때에는 社會保障保險의 義務에서 免除될 수 있다.

나. 年金制度

‘經濟·社會·通貨統合條約’ 第20條에 의거 동독지역의 年金法이 서독지역과 같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동독지역에서 새로이 산정 지급되는 年金(DM貨로 지급함) 수준은 동독지역의 平均所

得 階層으로서 45년간 연금에 가입한 자가 현 동독지역 평균소득의 70%가 되도록 하고 保險期間에 따라 加減한다. 그러나 새로 산정된 年金額이 종전의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從前의 年金額을 지급한다. 最低年金額(1988년 495동독마르크)에 未達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年金 및 最低年金額의 差額을 社會扶助 補助金으로 지급한다(1996년 말까지). 향후 東獨地域의 賃金上昇率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한다.

年金管理機關을 설치 운영한다. 地域年金保險 組織으로서 1991년 1월 1일 동독지역의 新設 5個 州에 州保險事務所(임금노동자, 철도노동자, 선원 등에 대한 연금보험업무를 담당함)가 설치되었다.

聯邦政府는 東獨地域의 年金財政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에 20억 DM를 보조하였다. 1991년 현재까지는 연방정부의 補助計劃이 없었으나(연금기여금으로 충당했음) 1992년 1월 1일부터 年金改革法이 東西獨地域에 동시 발효되어 東獨地域의 年金財政에 190억DM의 赤字가 발생하였다.

年金水準의 向上內譯은 〈表 VIII-11〉과 같다.

〈表 VIII-11〉 東西獨地域 年金生活者 年金受領額의 增加 推移

(單位: DM, %)

	1990.6.30	1990.7.1	1991.1.1	1992.1.1	1992.7.1
西獨地域(A)	1,616	1,667	1,667	1,751	1,798
東獨地域(B)	470	672	773	993	1,120
B / A	29	40	46	57	62

註: 45년간 연금보험 기여금을 불입한 연금수령자가 받는 평균수령액 기준임.
資料: 統一院, 『統獨 2周年 報告書』, 1992. 10., p. 53.

다. 醫療保險制度

‘經濟·社會·通貨統合條約’ 第21條에 의거 다음 原則이 정해졌다.

동독지역은 서독지역의 醫療保險制度를 도입·시행한다. 동독지역은 被僱傭者의 疾病시 6주까지는 僱用主가 賃金을 계속 지급하는 서독지역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年金對象者도 醫療保險에 가입하여 保險料를 납부하며 보험료는 年金總額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서독지역 醫療保險制度의 도입·시행과 함께 聯邦政府, 州政府 및 醫療保險 機關이 국민에 대한 啓蒙 및 弘報 活動을 벌여 制度 施行上의 問題點을 最小化하였다.

동독지역에서는 被僱傭者 및 僱用主 모두에게 6.4%의 保險料率이 적용되고 義務加入의 最高限度 所得은 1991년의 경우 월 2,250DM (서독지역은 월 4,875DM)로 책정되었다. 年金對象者, 失業保險對象者도 각 보험에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라. 其他 社會保障制度

兒童手當(Kindergeld)이 서독지역의 제도로 전환됨과 아울러 동독지역에 被服費 등의 명목으로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게 됨으로써 12세 이하에게는 월 45DM, 13세 이상 16세(직업훈련생은 27세) 이하에게는 월 60DM가 지급되었다.

서독지역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동독지역에 社會扶助(Sozialhilfe)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독지역의 사회부조는 生計扶助額이 가구주당 월 400DM이며 임산부, 편모, 질환자, 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基本給의 20% 정도를 追加로 지급하고 있다.

마. 社會保障 行政體制의 確立을 위한 支援

人力, 技術 등의 支援內譯으로는 동서독지역의 주 및 도시들 간에 結緣을 맺어 행정요원의 상호과견을 통해 東獨地域의 社會保障 分野 擔當公務員을 指導하고 연방부처, 연방사회보험기관에서 소속 공무

원이나 직원을 동독지역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독지역의 주 또는 도시에서 病院經營者, 社會福祉 專門家 등을 동독지역 姉妹州 또는 姉妹都市에 파견하여 지도 및 지원하고 있다.

社會保障 專門教育 및 弘報를 위해서는 뒤셀도르프, 뮌헨 등의 전문 의료교육기관에서 東獨地域의 醫師에 대해 서독지역의 社會福祉 行政一般 및 專門教育을 실시하고 있고 연금 의료보험기구 등 社會福祉 公共機關에서도 동독지역 근무자에 대한 研修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방노동부·보건부 등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社會保障制度를 紹介 및 弘報하는 책자와 팜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5. 住居支援制度

가. 住宅部門의 所有權 確定

‘經濟·社會·通貨統合條約’ 第22條 第4項은 舊東獨人民 公有(國有)財産 中國營企業에 속하면서 住宅用으로 사용되는 財産과 住宅 協同組合(Wohnungsgenossenschaft)에 의해 住居用으로 사용되는 不動産의 所有權은 일단 地方自治團體에 移讓토록 규정하고 있다. 각 地方行政機關[읍(Gemeinde), 시(Städte), 구역(Landkreise)]은 해당 재산에 대해 直接處分權이 있는바, 이 재산을 市場經濟體制의 住宅所有構造에 맞게 완전히 私有化시키거나 地方行政機關이 持分을 가지면서 會社形態로 轉換시킬 수도 있다. 다만 財産法에 의거, 과거의 몰수재산에 대한 返還申請權이 있는 재산은 이 조치와 관계 없이 返還되거나 補償되게 된다.

각 地方行政機關은 市場經濟에 바탕을 둔 住宅建設業의 活性化를 통해 住宅을 現代化하고 보수·유지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시장경제 구조에 맞도록 私有化할 責任이 있으며 각 州政府은 이를 監督하도록 되어 있다. 그 私有化 形態는 지방행정기관이 자본지분을 갖는

個人會社 形態(유한회사, 주식회사), 住宅組合의 소유로 대지와 건물을 이관한 형태, 第3者(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賣却 形態, 그리고 住宅所有權法(Wohnungseigentumsgesetz)에 의거 共同住宅에 거주하는 個人別 住宅財産 形成者에 대한 賣却 形態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第3者에게 完全賣却하는 것은 그 垞地가 社會福祉住宅(Soziale Wohnung) 목적에 사용되거나 住宅組合 또는 個人的 住宅財産 形成 목적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住宅難 解消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制限을 받게 된다.

返還申請權이 있는 과거의 몰수재산은 원칙적으로 原所有權者에게 返還되나, 共同住宅이나 團地(Siedlungsbau)의 구성에 사용되는 재산(재산법 제5조), 주택분양을 위한 구체적 建築施行計劃에 포함된 재산(1990년 10월 3일 이후; ‘경제·사회·통화통합조약’ 제22조 제4항 제2절), 그리고 公共目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학교, 병원 등; 재산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해서는 補償만 이루어진다.

나. 東獨地域에서의 賃貸料 引上

‘經濟·社會·通貨統合條約’에서는 東獨地域에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낮은 住宅賃貸料가 책정되도록 배려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所得水準 上昇에 따라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⁴⁾.

東獨地域의 住宅環境이 너무나 劣惡하므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소유자들의 주택개량 및 현대화 투자를 자극하며 주택시장을 시장경제구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賃貸料 引上이 불가피하여 統獨 以後 두 번에 걸쳐 基本賃貸料를 引上시켰다. 第1次(1991. 8) 인상시에는 기본임대료를 m²당 3DM(평균 기본임대료 1DM와 난방비 2DM의 합)로 인상하고, 第2次(1992년 8월) 인상시에는 1993년 1월 1일부터 목욕탕과 실내화장실을 갖춘 주택에 한해 기본임대료를

4) Einigungsvertrag, Anlage I, Kap. XIV, Abschnitt 2, *Die Verträge zur Einheit Deutschlands*, München: Beck-Verlag, 1990.

m²당 2.1DM로 인상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는 m²당 2.7DM로 인상한다.

그대신 소득수준이 一定額 未滿인 低所得層에 대해서는 정부가 住宅補助金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4인가족의 경우에는 월평균 수입이 1,700~1,800DM이면서 280~320DM의 賃貸料를 지불할 경우 100DM의 住宅補助金을 받는다. 2인가족의 경우에는 월평균 수입이 1,200~1,300DM이면서 240~280DM를 賃貸料로 지불할 경우 100DM의 住宅補助金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 東獨地域의 住宅現代化 및 補修

〈表 VIII-12〉 統獨 直前 舊東西獨의 住宅現況 比較

(單位: m², %, 年, DM)

	平均住宅規模	沐浴湯·샤워 施設 具備率	水洗式便所 具備率	平均住宅年數	平均賃貸料 (m ² 당)
舊西獨	85	99	94	42	6
舊東獨	65	79	72	58	1

資料: 統一院, 『統獨 2周年 報告書』, 1992. 10, p. 57.

〈表 VIII-13〉 東獨地域의 州別 住宅新築·補修 現況(1991)

(單位: 100萬DM)

	住宅建設受注額	
	1/4	2/4
브란덴부르크	276	18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61	148
작센	236	190
작센-안할트	218	178
튀링겐	172	147
동베를린	187	194
計	1,250	1,045

資料: 統一院, 『統獨 2周年 報告書』, 1992. 10, p. 57.

구동독의 주택은 구서독 수준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공간으로서 住居의 質的 側面에서 볼 때 全體 住宅의 약 30%가 당장 補修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統獨 後 동독지역 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聯邦政府는 住宅融資金 100억DM를 책정하였다. 住宅現代化를 위하여 각 개인, 건설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m²당 500DM 범위 내에서 6.75%의 低利로 5년 거치 25년 상환 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6. 醫療·保健分野

‘經濟·社會·通貨統合條約’ 第22條는 醫療·保健分野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독지역 주민의 의료 및 간호를 위해 現行 東獨地域 醫療體系를 계속 유지함과 아울러 國營醫療機關의 私有化를 추진하여 西獨地域式 醫療體系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東獨地域 政府는 統獨 以前에 개업의, 개업치과의, 약국, 자영 독립의료기관, 민영 공익병원 등의 개설에 관한 許可業務를 실시한다.

가. 醫療·保健體系의 構造整備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종합병원, 응급병원, 국영진료실, 직장 내 보건의료실을 醫療機關으로 活用할 수 있게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의사들이 開業醫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施設資金을 融資·支援하거나 既存施設을 賃貸할 수 있다. 과거 국가에 고용되었던 의사 중 3분의 2 정도가 開業하였고 노령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개업이 곤란한 의사들도 각 의료기관에 종래와 다른 형태로 僱傭되고 있다. 既存 綜合病院이나 應急病院도 종교계 등 公益團體 運營權者(또는 민간회사)가 引受토록 하고 融資 또는 投資補助金을 지원한다.

〈表 VIII-14〉 東獨地域 病院의 病床數 및 從事者數 現況

(單位: 個, 名)

	病 床		看 護 師		醫 師	
	1989	1991	1990	1991	1990	1991
브란덴부르크州	24,596	25,237	4,369	4,498	1,064	1,19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州	20,256	15,524	5,752	5,488	1,036	1,018
작센州	49,447	43,275	6,749	7,854	3,435	3,561
작센-안할트州	28,903	25,808	8,560	8,556	2,240	2,332
튀링겐州	25,388	21,312	4,705	4,839	1,628	1,720
東 베를린	14,715	14,958	-	-	-	-
計	163,305	146,114	30,135	31,235	9,403	9,821

資料: DIW, *Wochenbericht*, 92/12-13, 1992, p. 155.

동독지역의 의료기관이 서독지역과 平準化되도록 하기 위해 地域別 綜合病院 整備計劃을 수립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약 300억DM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지역 景氣浮揚 共同對策 支援金 중 50억DM를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각 州에서는 地域産業의 促進, 道路·住宅分野의 整備 등에 주로 사용하고 경미한 액수만을 종합병원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綜合病院의 高位級 및 中間級 經營者들을 서독지역에서 채용하거나 서독지역 結연주 종합병원의 專門家가 限時的으로 派遣勤務하고 있다.

나. 醫藥品 供給 擴大 및 補助金 支援

國營藥局의 私有化 추진과 함께 藥品供給이 擴大되고 있다. 구동독에서 거래되어 오던 약 2,000종의 약품을 7만여종으로 확대하고 중앙집권체제하의 單一都賣商이 공급해 오던 약품공급 체계를 多數 都賣商들에 의한 供給體系로 전환하였다.

동독지역의 醫療保險 赤字를 지원하기 위해 제약회사, 도매상, 약국 등에서 1991년 4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2억DM를 지원키로 했다.

IX. 韓半島와 獨逸의 統一與件 比較

1. 經濟力 比較

南北韓의 經濟力 隔差는 舊東西獨의 經濟力 隔差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舊東獨과 北韓에 관한 經濟統計의 기준 및 산출방식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다르고 그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있기는 하나, 1人當 GNP를 비교해 보면 舊西獨 對比 舊東獨의 比率이 68.0%

〈表 IX-1〉 舊東西獨과 南北韓의 經濟力 隔差 比較

(單位: US\$, 億US\$, 萬Km², 100萬名, %)

	舊東獨	舊西獨	北韓	南韓	$\frac{\text{舊東獨}}{\text{舊西獨}}$	$\frac{\text{北韓}}{\text{南韓}}$
1人當 GNP	12,500	18,370	1,038	6,498	68.0(89)	15.9(91)
經常 GNP	2,070	11,200	229	2,808	18.5(89)	8.1(91)
總交易規模	470	6,111	27.2	1,534	7.7(89)	1.8(91)
國土面積	108.3	248.6	122.8	99.3	43.6(89)	123.6(90)
人 口	16.43	61.99	22.0	43.3	26.5(89)	50.8(91)
財政規模 ¹⁾	846	1,568	166	388	54.0(88)	42.8(90)
經濟成長率	1.9	3.8	-3.7	9.3	50.0(89)	-39.8(90)
外債總額 ²⁾	233	-	92.8	391.3	-(89)	23.7(91)
外債/GNP	112.6	-	40.5	13.9	-(89)	29.4(91)

註: 1) 동독마르크貨 對 DM貨의 1989년 교환비율 1.815 : 1과 US\$貨 對 DM貨의 1988년 교환비율 1 : 1.7562를 적용함.

2) 1990년 7월 2일 현재 US\$貨 對 DM貨의 교환비율 1 : 1.6538을 적용함.

資料: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1992, p. 1.

駐獨大使館, 『數字로 본 獨逸統一』, 1992, pp. 3~5.

(1989년)이나 北韓 對比 南韓의 比率은 15.9%(1991년), 經常GNP의 比率은 각각 18.5%, 8.1%이고 總交易規模의 比率은 각각 7.7%, 1.8%이다.

또한 舊東獨은 世界 第15位の 產業國으로서 동구권에서 최고의 생활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北韓은 國際信用도가 1991년 기준으로 129개국 중 118위일 뿐 아니라 1989년과 1990년에도 각각 5.7%와 3.7%의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經濟難에 빠져 있다¹⁾.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經濟力 隔差라는 관점에서 볼 때 獨逸統一과 같은 유형의 南北韓統一은 통일 이후 독일경제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負擔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2. 經濟體制 및 制度의 差異

그러나 통일로 인한 經濟力 負擔은, 經濟力 隔差뿐만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두 經濟體制의 異質性 정도와 統一 以後에 指向하게 될 經濟體制의 모습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구동서독간 및 남북간 經濟體制의 異質性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舊東獨과 같이 北韓이 남한에 흡수되는 형태로 체제전환이 일어날 경우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흡수통일할 국가, 즉 舊西獨과 南韓의 經濟體制를 比較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舊西獨과 南韓은 동일한 資本主義 體制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통일로 인한 經濟力 負擔과 관련한 體制 및 制度上의 特徵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西獨地域은 1948년 이래 福祉國家 實現을 목표로 하는 社會的 市場經濟體制를 추구함으로써 社會保障部門에 대한 政府支出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현재 서

1) 財務部 經濟協力局, 『統一 2周年의 獨逸經濟現況』, 1993, p. 54.

독지역에서는 總財政支出의 35.7%가 社會保障部門에 지출되었으며 그 중 17.5%는 失業 및 社會保障保險에 대한 補助費로서 지출되었다²⁾. 이에 비해 南韓의 社會保障部門 支出은 1990년 현재 總財政支出의 23.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합계)에 불과하다³⁾.

〈表 IX-2〉 南韓과 西獨地域의 歲出內譯 比較(1991)

(單位: 10億원, 10億DM, %)

	南 韓 ¹⁾		西 獨 地 域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國防費	8,037.4	16.2	57.13	14.3
教育費	5,099.2	10.3	19.17	4.9
經濟開發 및 交通	11,826.4	23.8	63.13	15.8
社會開發 및 福祉	11,769.8	23.7	133.22	33.3
一般行政 및 其他	12,877.4	26.0	126.52	31.7
計	49,610.5	100.0	399.70	100.0

註: 1) 일반정부예산 기준임.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92, pp. 98~99.

BMF, *Bundshaushalt*, Bonn, 1992, pp. 20~21.

또 다른 經濟制度的 特性으로서 南韓은 지난 몇 차례의 經濟개발 계획기간중 政府主導의 經濟開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중에 정부는 민간경제부문을 정부주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各種 行政規制와 金融·財政·稅制支援 手段을 마련했지만 財政支出이 수반되는 支援手段의 비중이 높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남한정부가 西獨地域과 類似한 方式으로 統一 以後의 北韓

2) BMF, *Finanzbericht 1993*, Bonn, 1992, pp. 164~165.

3) 社會保障部門은 보건, 후생,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T. Kwack, "Size and Structure of Public Expenditure", K. Choi and others (eds.), *Public Finance in Korea*, The Korean Society of Public Finan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p. 46).

經濟開發에 주력한다면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財政負擔으로 北韓經濟를 活性化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表 IX-3〉, 〈表 IX-4〉 참조).

남한과 구서독에 각각 흡수되게 될, 北韓과 舊東獨의 體制的인 特徵들 중 統一費用 및 經濟活性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對外貿易制度가 있다. 社會主義 國家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國家機關이 對外貿易을 獨占하거나 嚴格히 統制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舊東獨은 동구권의 COMECON 국가들과 긴밀한 생산분업 체제를 유지하여 자동차 등의 비교적 복잡한 구조물을 COMECON 국가들과 共同生産하고 제품교류도 활발히 하는 등 協力的인 對外經濟關係를 유지하였음에 비해, 北韓은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유수입 및 특수한 경우의 주요 기계부품 수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自給自足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東歐圈 國家들의 産業生産 水準이 脫共產化 以後 아직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독지역 기업들은 통일

〈表 IX-3〉 南韓과 西獨地域의 財政規模 比較

(單位: 10億원, 10億DM, %)

		1987	1988	1989	1990	1991
南韓	G N P	106,024.4	126,230.5	141,794.4	171,488.1	206,026.5
	財政規模	24,658.0	29,072.7	34,882.9	47,135.0	59,245.7
	(對 GNP)	(23.3)	(23.0)	(24.6)	(27.5)	(28.8)
西獨地域	G N P	2,003.0	2,108.0	2,245.2	2,425.5	2,615.2
	財政規模	651.3	671.8	701.2	815.5	887.0
	(對 GNP)	(32.7)	(32.1)	(31.6)	(33.9)	(33.9)

資料: 大韓統計協會, 『主要經濟指標』, 1992, p. 163.

駐獨大使館, 『숫자로 본 獨逸統一』, 1992, p. 31.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haushalt unser Geld*, 1991, p. 11.

〈表 IX-4〉南韓과 西獨地域의 租稅負擔率 比較

(單位：%)

	1987	1988	1989	1990	1991
南 韓	17.5	17.9	18.6	19.4	18.6
西獨地域	23.4	23.2	23.9	22.7	23.5

資料：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3/7, 1993, p. 9.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haushalt unser Geld*, 1991, p. 11.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 - Wege-Risiken*, 91/92, November 1991, p. 13.

이전의 주요 거래처이던 東歐圈 國家들에 대한 輸出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동독지역은 통일 이후 EC권으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상대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어려움에다가 동구 국가들과 같은 과거의 주요 상품시장을 상실함으로써 二重苦에 시달리고 있으나, 北韓의 경우 지금까지 自給自足 對外經濟體制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구동독과 같이 통일 이후 급작스런 수출시장 상실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은 적다고 볼 수 있다.

3. 統一對備 制度의 整備

統一로 인한 經濟的 負擔은 한편으로 통일을 대비한 制度的 整備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制度的 整備가 未洽한 상태에서는 統一이 急速하게 이루어질 경우 個別經濟主體들이 새로운 경제체제에 직면, 經濟行爲의 基準設定이 불명확해져 투자를 미루고 觀望하는 자세를 취하게 됨으로써 經濟混亂이 加重되게 된다. 西獨地域의 경우, 급격한 통일로 인해 土地私有化方案, 統一費用 調達方案 등의 제도적 준비가 통일 이

전에 갖추어지지 못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南韓은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時間的 餘裕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有利的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統一過程에 대한 政策的 選擇

어떠한 過程을 통해서 統一을 이룩하고 또 統一以後 어떠한 財政·金融·勞動·産業調整 政策手段을 통해 經濟安定化와 經濟活性化를 도모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政策手段의 올바른 選擇은 統一의 經濟的 負擔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과정중 企業民營化政策, 土地의 原所有者 償還政策, 通貨統合方案, 統一費用 調達方案, 勞動市場政策 및 利子率政策 등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가능한 선택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經濟的 負擔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統一過程 初期에 독일은 民營化 過程에서 오는 企業賣却 代金으로 統一費用의 상당 부분을 充當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⁴⁾. 그러나 信託管理廳에 의한 企業民營化가 投資와 雇傭保障을 조건으로 한 매우 낮은 가격의 企業賣却 方式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이로부터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은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있을 南北韓 統一過程에 있어서도 앞에서 언급된 獨逸統一時의 중요한 政策範圍들과 長期計劃에 따른 統一過程의 選擇에 있어서 政策變動의 可能性이 存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南韓 政府와 國民이 떠맡아야 할, 統一로 인한 經濟的 負擔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4) 자세한 논의는 第4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5. 結 語

統一로 인한 經濟的 負擔을 줄일 수 있는 制度的 整備와 統一過程 및 以後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올바른 政策的 選擇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올바른 政策的 選擇이 이루어질 경우 舊西獨과 南韓의 經濟力 隔差에도 불구하고 南韓이 舊西獨보다 統一與件上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X. 綜合整理 및 政策的 示唆點

舊東西獨 通貨의 統合目的은 첫째, 通貨交換 比率이 東獨地域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減退시키지 않게 하고 둘째, 通貨交換을 통해 東獨地域 經濟에 적절한 수준의 流動性, 즉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인플레이션을 誘發하지 않는 限度 內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셋째, 이를 통해 東獨地域 住民들에게 資本主義體制로 統一된 獨逸에서의 經濟生活을 출발함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通貨資産을 保障해 주는 등 세 가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通貨統合을 評價해 보면, 우선 東獨地域 住民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通貨資産 保障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독지역의 각 연구기관들이 DM貨와 東獨마르크貨의 購買力 比率을 100 : 88~100 : 132 사이에서 비교적 큰 편차 없이 평가했었다. 여기서 100 : 88과 100 : 132의 산술평균은 100 : 110인데(100동독마르크는 110DM의 구매력을 지님),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東獨地域 住民들이 통화통합을 통해 더욱 큰 購買力을 보너스로 얻게 되었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通貨統合에 즈음하여 동독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던 購買力을 存續시킬 수 있는 通貨交換 比率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이루어진 流通 通貨量(stock)의 交換比率, 즉 약 131동독마르크가 100DM로 교환된 것은 東獨地域 住民들이 統合 以前에 東獨마르크貨로써 누리던 購買力 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東獨地域 企業들의 國際競爭力을 減退시키지 않는 通貨統合 比率(임금(flow)에 관한)에 대해 聯邦經濟部 教授諮問團의 多數 見解는 1 : 1을, 獨逸聯邦銀行과 聯邦經濟部는 1 : 2를 각각 주장함으로써 대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 : 1 交換比率이 채택됨으로써 통합 이전의 구동서독 환율 1 : 4에 비해 舊東西獨 通貨의 換率이 상당히

高平價되었다. 統合 以前の 平均換率이 동독마르크당 0.23DM였기 때문에 輸出品의 原價에 비추어 볼 때 實質賃金이 5배 정도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問題點은 통일 이후 東獨地域 勞組의 강력한 賃金引上 要求 때문에 더욱 증폭되게 되었다. 1990년 후반기에 각 산업별로 勞使合意된 東獨地域 勤勞者의 賃金水準은 25%에서 60%까지 인상된 수준이었다. 동독지역 노조의 賃金引上 目標은 1~2년 내에 西獨地域 賃金水準의 60% 정도를, 그리고 1995년까지는 거의 同一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지역 근로자의 勞動生産性이 이와 같이 급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독지역 기업들의 國際競爭力 喪失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獨逸聯邦銀行의 권고대로 통화교환이 1:2의 비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國際競爭力 喪失이 예방될 수 있었을 것으로는 유추할 수 없다. 만약 1:2 비율의 통화통합이 이루어졌다면 통합 직후 東獨地域 勤勞者들의 實質賃金은 서독지역 근로자들의 6분의 1 수준이 되었을 것인데, 이 경우 東獨地域 勤勞者들이 보다 높은 賃金引上을 要求하게 됨으로써 賃金上昇率이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現象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通貨超過’(억압인플레이션) 現象이 존재한다. 通貨超過란,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 實物經濟에 비해 通貨部門의 成長速度가 빠를 경우에도 정부가 법령에 의거하여 價格이나 利子率을 統制함으로써, 높은 통화수요와 낮은 제품공급량에도 불구하고 價格이 變動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充足되지 않은 通貨需要’를 일컫는다. 舊東獨에서도 예외 없이 대규모 通貨超過 현상이 존재하였는데, M_3 概念(통화유통량과 저축성예금)에 해당하는 舊東獨의 總通貨 規模는 1989년에 9만 2,373억 동독마르크였다. 舊西獨의 경우 可處分國民所得 對 M_3 의 比率은 89.4%로서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舊東獨의 通貨保有量(M_3) 2,370억 동독마르크 중 1,497억 동독마르크

는 舊西獨 水準의 可處分所得 對 M_3 의 比率을 유지하기 위한 舊東獨의 M_3 규모이며, 나머지 876억 동독마르크가 通貨超過 규모이다. 通貨統合時 이 通貨超過 현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이 모여졌다. ‘經濟·社會·通貨統合條約’에 의하면 동독지역 주민들이 연령별로 서로 相異한 限度의 通貨額을 交換받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한도를 모두 이용할 경우 2,373억 동독마르크 규모가 1,514억 DM로 교환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1,514억 DM는 西獨地域 水準의 M_3 /可處分所得의 關係를 維持하는 데 필요한 M_3 규모인, 1,497억 DM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로써 獨逸은 인플레이션 危險을 거의 완벽히 最小化하는 通貨統合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通貨統合時 東獨마르크貨와 DM貨를 交換함에 있어서, 임금 등 定期的 所得을 1:1로 교환한 것이 企業競爭力 弱化라는 측면에서 問題點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 낮은 교환비율을 채택했을 경우 東獨地域 住民들의 資産價値 保障이라는 측면에서 衡平性에 어긋나고, 또한 이 경우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實質賃金이 서독지역 근로자들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게 되어 賃金引上 壓力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舊東西獨間 通貨統合은 實際로 採擇된 比率보다 더 나은 代案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民營化 推進速度가 상당히 느리고, 또 이를 통한 賣却收益이 예상울 훨씬 밑도는 원인으로는 東獨地域 勤勞者들의 高賃金 要求와 不動產 所有權 問題 以外에 크게 두 가지 범주가 거론된다. 非效率的인 舊東獨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遺産이 갖는 문제점과 聯邦政府 信託管理廳의 民營化戰略上 문제점에 관한 범주가 그것이다. 聯邦政府의 經濟政策과 信託管理廳의 民營化 戰略上 문제점으로서 첫째, 統一 財政需要의 대부분이 政府負債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信託管理廳 管理企業이 民間資本市場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수될 수 있는 資本餘力이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投資

者의 資本動員 能力을 훨씬 超過할 정도의 많은 기업이 매각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신탁관리청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環境淨化費用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管理企業을 賣却하게 되었다. 셋째, 海外市場에서의 資本輸入을 통해 海外에서 形成된 貯蓄이 신탁관리청 관리기업의 인수에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中央銀行은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國內市場에서 有價證券을 賣却하여 國內通貨를 還收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國內資本市場은 萎縮되게 된다. 끝으로, 信託管理廳의 雇傭保障 要求를 들 수 있는데, 東獨地域의 失業率이 위험수위를 보이게 됨에 따라 信託管理廳은 賣却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에게 雇傭 및 投資에 관한 條件들을 붙여 기업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負擔은 投資者들로 하여금 企業引受를 더욱 꺼리게 만든다.

신탁관리청이 택한 민영화 방식인 企業賣却 方式에 대한 代案으로서 從業員參與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資本市場을 梗塞시키지 않는 가운데 東獨地域 住民들의 證券資產을 다소 保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증권자산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반대급부로 賃金引上 要求를 自制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독지역의 企業競爭力 低下의 가장 큰 요인인 生産性增加率 以上の 賃金上昇率을 抑制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종업원참여 모델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동독지역 주민들이 각자 分配받은 證券들을 即時 賣却, 消費하고자 할 경우 매각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資本市場의 梗塞을 가져올 수 있다. 동독지역 주민들이 증권을 즉시 매각할는지 또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유보할지는 保有證券의 未來 期待價値와 各自의 所得水準에 달려 있다. 그러나 一定 期間 동안 證券의 賣却을 不許한다면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에 民營化의 反對給付로서 정부가 賣却收益 또는 그 밖의 형태로 財政收入을 올릴 가능성은 완전히 없

어진다. 그러나 賣却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獨逸에서 信託管理廳이 賣却收益보다 더 많은 支出로 인해 財政赤字를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큰 단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經濟·社會·通貨統合同盟’에서는 舊東獨 社會主義 經濟體制下에서 沒收된 不動產에 대해 原所有者의 所有權을 認定해 주었다. 그러나 返還을 原則으로 하고 補償을 例外로 하는 不動產 所有權에 관한 규정은 不動產 所有權 概念의 不確實성과 이에 따른 不動產 市場의 機能麻痺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返還原則 規程은 投資目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김으로써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를 阻害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統獨 以後 두 차례에 걸친 法律改正에 따라, 信託管理廳이나 地方自治團體는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誘致에 필요할 경우, 返還原則에도 불구하고 例外的으로 返還하지 않고 直接 賃貸 또는 賣却할 수 있게 되었다. 不動產 所有權에 대한 基本原則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修正은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를 活性化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規定들이 統合 以前에 마련되어서 統合과 더불어 施行되었더라면 潛在的 投資者의 混亂이 없어져서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經濟·社會·通貨統合同盟’ 以後, 團體協約에 따른 東獨地域의 賃金引上 計劃을 보면 產業部門別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大部分의 產業部門에서 東獨地域 勤勞者의 賃금이 1994년까지 서독지역 근로자 수준에 이르도록 합의되었으며 金融部門의 경우에는 1992년까지 서독지역 임금수준의 100%를 지급토록 합의되었다. 東獨地域의 賃금은 ‘經濟·社會·通貨統合同盟’ 以後 高評價되었고 여기에다 이 동맹 이후의 급격한 賃金上昇으로 單位製品當 賃金費用이 크게 增加함으로써 동독지역 기업의 競爭力 喪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勞動生產性增加率이 賃金上昇率에 미치지 못하여 勞動生產性和 賃金

의乖離가 더욱 커질 경우 東獨地域에 있어서 賃金上昇은 經濟回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經濟學者들과 經濟部 內 學術諮問團은 東獨地域에서의 賃金上昇은 반드시 抑制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經濟諮問委員會(Sachverständigenrat)의 1991/92년 ‘獨逸經濟評價報告書’는, 東獨地域 企業의 競爭力을 確保하고 失業增大를 抑制하기 위해서는 東獨地域의 實質 賃金上昇率이 향후 2~3년간 西獨地域 水準에서 抑制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東獨地域 經濟를 回復시킬 수 있는 政府의 財政·金融支援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舊東獨의 經濟的 沒落이 어디에 기인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간적으로 볼 때, 短期的 處方이 필요한지, 아니면 短期的 苦痛을 감수하더라도 長期的·動態的 處方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政策的 決定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生産要素費用, 즉 勞動費用과 資本費用 중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일반적으로 勞動費用의 減少를 통한 支援을 주장하는 견해는 東獨地域 經濟의 崩壞를 재촉하고 그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을 生産性 增加率을 웃도는 賃金上昇率과 이에 따른 企業競爭力 喪失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동독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賃金上昇 抑制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통합으로 인한 勞動力的 自由로운 移動 때문에 이는 이미 不可能하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賃金補助金으로 企業의 賃金費用 壓迫을 덜어주는 것이 동독지역의 경제회복에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投資補助金 支援을 옹호하는 견해는 현재 東獨地域 經濟가 崩壞하게 된 直接的인 原因을 技術 및 設備投資 측면에서 찾고 있다. 구동독 체제하에서 모든 산업은 高技術이 體化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設備마저 老朽化됨으로써 製品의 質도 서구제품에 크게 뒤지는 한편 大量生産 體系도 구비하지 못해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東獨地域 企業들의 設備는

서독지역 기준에서 볼 때 50~70%가 廢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독지역 경제의 부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企業의 老朽設備를 代替 또는 現代化하고 新規投資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資本貯蓄과 이를 위한 投資活性化를 위해서는 賃金補助金보다 投資補助金 支援이 優越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制度가 未備되어 있고 社會主義 遺産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 市場機能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동독지역의 경제여건하에서 投資補助金 支援制度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西歐企業들은 시장기능이 미비한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를 꺼릴 뿐 아니라 東獨地域 企業들도 投資補助金を 당장의 倒産을 막기 위해 賃金支拂로 轉用하고 있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短期的인 問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賃金補助金이 없이는 많은 信託管理廳 管理企業들의 生存 可能性이 희박할 뿐 아니라 投資補助金에 의한 資本蓄積보다 賃金補助金에 의한 企業正常化가 더 效率的일 수 있다.

동독지역 기업들의 國際競爭力이 급속히 弱화된 원인으로서는 生産性增加率을 웃도는 賃金上昇率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는데, 이는 舊東西獨의 國境開放과 勞動力의 自由로운 移動이 가져다 준 필연적인 귀결이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國境統制와 勞動力의 自由로운 移動 制限을 통해 賃金上昇을 抑制시키는 것이 하나의 政策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 統一 以前인 1989년에 이미 국경이 개방되어 구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고 居住移轉도 곧 가능해졌다. 일단 許容된 自由를 다시 制限한다는 것은 政治的으로 實現 不可能하기 때문에 통일과정 동안에는 노동력 이동의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韓半島의 경우에는 勞動力 移動의 制限이 政策代案이 될 수 있다. 이 政策代案이 意味가 있음은 EC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EC는 '關稅同盟'에서 출발하여 商品市場을 開放한 후 상당한

시간을 두고 資本市場과 勞動市場을 開放하였다. 南北韓 統合의 경우 勞動力 移動의 統制를 당분간 維持함으로써 北韓地域에 대한 投資誘致를 기대할 수 있다. 投資는 低賃金의 利點을 찾아 移動하는 경향이 있는데 勞動力에 대한 國境統制가 없을 경우 南北韓間의 賃金隔差가 줄어들고 北韓地域에 대한 投資의 利點이 사라지게 된다. 政治的 反對를 最小化하고 國民의 自由를 最大한 保障하기 위해 統合 以後 勞動力 移動의 制限期間을 5年 정도로 명시적으로 公표하고 老弱者 및 年少者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며 勞動年齡層이라고 하더라도 研修教育, 觀光 등의 목적을 지나는 경우에 한해 방문을 허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制限은 北韓住民의 南韓移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反對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또한 勞動力 以外에 資本 및 商品의 交流는 제한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支援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賃金上昇이 生産性向上을 웃도는 수준으로 加速化되는 것을 막는 것이 東獨地域의 經濟活性化에 核心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는데, 獨逸의 경우 國境統制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東西獨地域間의 實質賃金 隔差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實質的인 反對給付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勞組에 대한 賃金引上 節制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그 代案으로서는 企業民營化 方式을 從業員參與 모델로 轉換함으로써 從業員들이 賃金引上 要求를 自制하는 代價로 企業의 持分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體制統合 以後에 發生할 수 있는 大量失業은 勞動市場 政策手段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이는 民間投資 및 綜合的인 經濟活性化政策으로 再産業化와 産業構造 調整이 이루어지면서 同時에 달성될 수 있는 長期課題이다.

統一費用은 크게 民間投資, 政府投資, 政府의 民間部門에 대한 所得移轉 支出, 其他 政府支出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정부투자,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 그리고 기타 정부지출은 政府部門의 財政需要를 구성한다. 政府部門의 財政收入은 이와 같이 늘어나는 財政需要를 감당하지 못해 獨逸全體의 公共部門 財政赤字는 1991년에 1,512억DM, 1992년에는 2,145억DM를 기록함으로써 GNP 對比로는 각각 5.8%와 8.0%를 나타내었다. 한편 이 財政赤字 規模에서 公共部門의 其他收入을 제하면 民間資本市場으로부터 借入해야 할 규모가 집계되는데, 이는 1991년에 1,300억DM, 1992년에 1,942억DM를 기록하였다. 정부에 의한 이러한 公共部門 公債發行 增大는 獨逸聯邦銀行의 高金利政策과 함께 海外로부터의 大量 資金流入을 가져왔다. 外國人の 獨逸 內 公債買入額은 1991년 471억DM, 1992년 844억DM로서 1991년과 1992년의 全體 公共部門 財政赤字額 1,512억DM와 2,145억DM의 각각 31%와 3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즉 1991년과 1992년의 全體 公共部門 財政赤字 規模의 3분의 1 정도가 外國人の 政府債券 買入에 의해 충당되었다.

支出削減을 통해 독일정부는 1991년에 370억DM, 1992년에 360억DM를 절약하여 統一費用에 轉用하였다. 그러나 財政赤字 規模가 견잡을 수 없이 擴大되고 있고 景氣與件上, 그리고 政治·經濟·社會的인 이유로 增稅規模를 급작스럽게 늘릴 수 없는 독일정부로서는 더욱 많은 支出削減 努力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政府補助金 削減을 주된 지출삭감 분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社會福祉費 分野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支出削減 餘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認識의 大轉換이 필요하다고 본다. 舊西獨의 경우 매년 總財政支出의 많은 부분(1990년의 경우 35% 정도)이 社會福祉를 위해 지출되는 등 社會保障이 잘되어 있는 나라로 손꼽혀 온 만큼, 이 분야의 支出削減은 低所得層의 生計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므로 큰 反對에 부딪혀 왔고 따라서 支出이 削減되기보다는 오히려 支出

比重이 해마다 다소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餘他 分野에서는 大規模 支出削減이 어려울 뿐 아니라 東獨地域의 產業이 危機에 처해 있고 大量失業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西獨地域에서만 높은 社會保障 惠澤을 누리는 것은 衡平性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東獨地域의 經濟水準 및 雇傭水準이 西獨地域에 근접할 수 있을 때까지의 支援費用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에 대한 서독 지역 주민들의 認識轉換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西獨地域의 社會保障 惠澤水準이 限時的으로 減少되어야 할 것이다.

獨逸政府의 1991년 후반기 이후 增稅措置를 분석해 보면 財產稅 및 附加價值稅 分野에서 증세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財產稅 分野(재산세, 토지세)는 정부의 總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1992년, 2.3%)은 미미하나 統一과 같이 국가의 예외적 증대사인 경우 限時的으로 財產課稅를 높여서 稅收增大를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인 社民黨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附加價值稅는 1993년 초부터 14%에서 15%로 인상되었으나 追加의인 需要가 있을 경우 稅率을 보다 引上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直接稅와 間接稅인 所得稅와 附加價值稅를 대비해 볼 때 우선 價格引上 效果는 附加價值稅가 지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附加價值稅는 一般消費稅로서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資本「스톡」(stock)의 形成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資本市場에서의 借入은 그 經濟的 影響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모든 統一費用 調達方案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차입은 利子率 上昇을 통해 民間投資를 萎縮시키고 未來의 利子支給 및 元金償還 負擔으로 인해 國家財政의 運用幅을 극히 制限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現實的으로는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 統一費用 調達方案으로도 統一 財政需要의 一部分이 충족시킬 수 있

으므로 殘餘分은 資本市場 借入을 통해 調達할 수밖에 없으나, 가능한 한 그 規模를 줄여야 한다.

‘大規模 財政支出을 수반하는 歷史的 事件의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數世代에 걸쳐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財政支出 負擔을 여러 世代가 分擔하는 政府借入을 통한 財源調達이 적합하다’는 논리는 財政學 理論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閉鎖 經濟를 가정할 때 財源調達 方案에 관계없이 特定 時期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는 當該 時期에 생산된 재화에 한한다. 즉, 未來에 償還되어야 하는 現在의 政府借入에 대한 利子支給도 未來世代 構成員들 간의 所得移轉에 지나지 않는다. 現在의 政府借入이란 단지 現在 民間投資에 使用될 財源을 政府消費나 政府投資로 轉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반면에 政府借入이 外國資本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現在의 政府借入 負擔이 未來世代의 利子償還 負擔으로 分散되어 世代間 財政負擔의 分配가 가능해진다.

결국 政府支出 削減, 增稅, 그리고 資本市場 借入을 어떻게 적절히 調和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政府支出 削減은 中短期 및 長期的으로 꾸준히 실행해 나가고 增稅도 적절한 세목을 선정하여 中短期 및 長期的으로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資本市場 借入은 이미 適正 規模를 넘어섰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短期에 있어서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政府借入으로 조달되는 자원은 본래 民間投資에 소요될 자금이고 稅率引上으로 조달되는 자원은 본래 民間消費에 소요될 자금이며 國民經濟의 資本스톡은 民間投資와 政府投資가 蓄積되어 형성되므로 成長效果의 관점에서는 稅率引上을 통한 財源調達 方案이 優越하다고 할 수 있다.

南北韓의 經濟力 隔差는 舊東西獨의 經濟力 隔差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統一으로 인한 經濟的 負擔은 이러한 經濟力 隔差뿐만 아니라, 統一 以後에 指向하게 될 經濟體制의 모습이 어떠한지, 統一을 對備한 制度的 整備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過程을 통해서 統一을 이룩하고 統一 以後에는 어떠한 財政·金融·勞動·産業調整 政策手段 등을 통해 經濟安定化와 經濟活性化를 도모할 것인지에 결정적으로 좌우되게 된다. 올바른 政策的 選擇이 이루어질 경우, 南韓은 舊西獨과의 經濟力 隔差에도 불구하고 舊西獨보다 統一與件上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參 考 文 獻〉

- 高日東·曹東昊, 『舊東獨의 私有化 方案 및 失業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92. 7.
- 大韓統計協會, 『主要經濟指標』, 1992, p. 163.
- 獨逸 經濟社會統合研究를 위한 短期調査團, 『獨逸 經濟社會統合에 관한 研究』, 1990. 12.
- 朴濟勳,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6, pp. 32~33.
- 裴眞永,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정책연구 91-1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8.
- , 「社會的 費用 등 具體的 算出必要」, 『시사저널』, 1992. 10. 22.
- , 『統獨 1年の 經濟的 評價와 展望』, 정책연구 92-0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 46~70.
- 法制處, 『獨逸統一關聯法 研究』, 법제자료 제156집, 1991.
- , 『獨逸統一關聯法 研究(II)』, 법제자료 제161집, 1992.
- 三星經濟研究所, 『世界經濟』, 1993. 5. 25, p. 73.
- ,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1992. 12, p. 1.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3. 7.
- 財務部 經濟協力國, 『統一 2週年の 獨逸經濟現況: 그 評價 및 示唆點』, 1993. 1, p. 54.
- 財務部 國際金融局, 『獨逸統一關聯資料集』, 제1,2,3권, 통일정책참고자료, 1991. 9.
- 駐獨大使館, 『독일 통일 소사전』, 1992.
- , 『숫자로 본 獨逸統一』, 1992, pp. 3~79.

- 統計廳, 『主要海外經濟指標』, 각호.
- 統一院, 『獨逸統一實態 資料集』, 통일과정연구 92-II, 1992. 9.
- , 『獨逸統合과 體制轉換』, 통일과정연구 92-III, 1992. 9.
- , 『統獨 2週年 報告書』, 통일과정연구 92-IV, 1992. 10, pp. 33~57.
-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을 위한 基本構想』, 1991. 9.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92, pp. 98~99.
- , 『國民計定解說』, 통계편, 1991, p. 24.
- 韓國銀行 調査第1部, 『주간해외경제』, 각호.
- , 『獨逸의 金融制度』, 업무참고자료 93-2, 1993, pp. 52~120.
- 洪裕洙, 『東歐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정책연구 92-1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p. 7~124.
- 『內外經濟新聞』, 1991. 10. 8.
- 『東亞日報』, 1991. 10. 15.
- Akerlof, George A., and others,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1991.
- 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wirtschaftswissenschaftlicher Forschungsinstitute e.V., *Wirtschaftsreformen in Mittel- und Osteuropa*, Beihefte der Konjunkturpolitik, Zeitschrift für angewandte Wirtschaftsforschung, Vol. 40, Berlin: Duncker & Humblot, 1993.
- Balassa, B., "The Purchasing Power Parity Doctrine: A Reapprais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2, 1964.
- Barro, R. J., "Are th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 Political Economy*, Vol. 82, 1974, pp. 1095~1117.
- Bellmann, L., "Lohn- und Arbeitspolitik in der neuen Bundesländern," *Wirtschaftsdienst*, 91/8, 1991, p. 403.
- Berger, Matthias and Richard Kohler, "Zwei Jahre deutsche Währungsunion," *Die Bank*, 92/8, 1992, pp. 436~443.
- Biehl, Dieter, "Die Entwicklung des Finanzausgleichs in der BRD," *Handbuch der Finanzwissenschaft*, Vol. 4, Tübingen, 1983, p. 106.
- Bielenberg, Walter and Wolfgang Kleiber, *Eigentum an Grund und Boden*, München: Verlag für Verwaltungspraxis Franz Rehm, 1991.
- BMF, *Beteiligungen des Bundes im Jahre 1991*, Bonn, 1992, p. 3.
- , *Bundeshaushalt*, Bonn, 1992, pp. 20~21.
- , *Finanzbericht*, Bonn.
- , *Subventionsbericht 1991*, Bonn, 1991, p. 6.
- Boss, A., and others, "BRD: Wirtschaftspolitik dämpft Konjunktur und Wachstum," *Die Weltwirtschaft*, 93/2, 1993, p. 23.
- Brezinski, Horst,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the German Monetary Union*, Paderborn: Universität-Gesamthochschule-Paderborn, November 1991.
- Brümmerhoff, D., *Finanzwissenschaft*, 2nd ed., München, 1987, pp. 373~384.
- Bundesminister der Finanzen,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Entwicklung der Finanzhilfen des Bundes und der Steuervergünstigungen für die Jahre 1989 bis 1992*, Dreizehnter Subventionsbericht, October 1991.
- , *Beteiligungen des Bundes im Jahre 1991*, December 1992.
- , *Bundeshaushalt 1993: Sparsam haushalten- Für einen Pakt*

- der Vernunft und Solidarität*, September 1992.
- , *Bundessteuerblatt*, Vol. 43A, Part 1, No. 6, March 1993.
- , *Das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Aufgaben und Organisation*, March 1991.
- , *Das Versicherungswesen in Deutschland*, September 1991.
- , *Der Bundeshaushalt unser Geld*, 1991, p. 11.
- , *Der Finanzplan des Bundes 1992 bis 1996*, August 1992.
- , *Einkommen- und Lohnsteuer*, 1992.
- , *Finanzen & Steuern: Eine Einführung 1992/93*, September 1992.
- , *Fragen und Antworten Zum Vermögensgesetz*, November 1991.
- , *Haushaltsrecht des Bundes*, November 1990.
- , *Steuerliche Hilf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July 1992.
- , *Unser Bankwesen*, December 1991.
- , *Unsere Steuern von A-Z (Ausgabe 1992)*, March 1992.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Die wirtschaftliche La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MWi Monatsbericht, 1993.
- Bundesregierung, *Jahreswirtschaftsbericht 1993 der Bundesregierung*, Bonn, February 1993, p. 69.
- Bundestelle für Außenhandelsinformation, *Die Neue Bundesländern als Wirtschaftspartner*, Köln, 1991, pp. 167~179.
- Caesar, Rolf, "Rechtfertigungsansätze öffentlicher Verschuldung," *WISU*, 93/2, 1993, pp. 140~145.
- Charap, J. and K. Dyba, "Economic Transformation in Czechoslovakia," *Osteuropa-Wirtschaft*, 91/1, 1991, pp. 39~46.
- Cornelson, D., "Privatisierung in Ungarn, Polen und in der CSFR," *Wirtschaftsreformen in Mittel- und Osteuropa*, Beihefte der

- Konjunkturpolitik 40, Berlin: Duncker & Humbolt, 1993, p. 41.
- Delhaes, K. Von, "Die Unabhängigkeit der baltischen Länder," *Osteuropa- Wirtschaft*, 92/1, 1992, p. 93.
- Deutsche Bundesbank, *Abschlußbericht; Vorläufige Verwaltungstelle*, Berlin, 1992, p. 46~47.
- , *Monatsberichte*, various years.
- , *Monthly Report*, various issues.
- , "One Year of German 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 *Monthly Report of the Deutsche Bundesbank*, July 1991, pp. 18~30.
- , "Terms of the Currency Conversion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July 1, 1990," *Monthly Report of the Deutsche Bundesbank*, June 1990.
-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DIW), "Deutsche Vereinigung prägt Subventionsentwicklung," *Wochenbericht*, 92/46, 1992.
- , "Grundlinien der Wirtschaftsentwicklung 1993," *Wochenbericht*, 93/1-2, 1993.
- , "Zur Entwicklung der öffentlichen Haushalte 1992/93: Finanzpolitik am Scheideweg," *Wochenbericht*, 92/37, 1992.
- Donges, J. B., "Arbeitsmarkt und Lohnpolitik in Ostdeutschland," *Wirtschaftsdienst*, 91/6, 1991, p. 286.
- Einigungsvertrag, Anlage I, Kap. XIV, Abschnitt 2, *Die Verträge zur Einheit Deutschlands*, München: Beck-Verlag, 1990.
- Fieberg, G. and H. Reichenbach, "Offene Vermögensfragen und Investitio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Vol. 32, 1991, p. 1978.

- Frohlich, Hans-Peter, "Währungspolitische Weichenstellungen in Osteuropa," *WiSt*, Vol. 1, January 1993, pp. 15~21.
- Gandenberger, O., "Zur Rationalität der öffentlichen Kreditnahme," *Finanzarchiv*, Vol. 30, 1972, p. 369~391.
- Gattermann, Hans H., *Perspektiven der Steuerpolitik nach dem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fte zur Internationalen Besteuerung, Vol. 72, Hamburg: 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Finanz- und Steuerwesen an der Universität Hamburg, 1990.
- Gerold, Krause-Junk, *Finanzpolitische Aspekte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Hefte zur internationalen Besteuerung, Vol. 84, Hamburg: 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Finanz- und Steuerwesen an der Universität Hamburg, 1992.
- Gesetz über besonderen Investitionen in der DDR, *Die Verträge zur Einheit Deutschlands*, München: Beck-Verlag, 1990, pp. 571~572.
-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ie Verträge zur Einheit Deutschlands*, München: Beck-Verlag, 1990, pp. 574~575.
- Geske, Otto, "Der Länderfinanzausgleich wird ein Dauerthema," *Wirtschaftsdienst*, 92/5, May 1992, p. 254.
- Grünewald, J., "Eine Anhebung der Umsatzsteuer ist unansweiglich," *Wirtschaftsdienst*, 91/11, 1991, p. 548.
- Hartwig, Karl-Hans, "Hyperinflation und Geldmangel; Eine Paradoxie russischer Geldpolitik," *WiSt*, Vol. 3, March 1993, p. 105.
- Henke, Klaus-Dirk, "Finanzbeziehungen zwischen Bund und Lan-

- dern," *WiSt*, Vol. 2, February 1993, pp. 67~74.
- Hickel, Rudolf, "Sozialökonomische Strategien zur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Rudolf Hickel, Ernst-Ulrich Huster, and Heribert Kohl(eds.), *Umverteilen; Schritte zur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Köln: Bund-Verlag, 1993, p. 88.
- Hickel, Rudolf, Ernst-Ulrich Huster, and Heribert Kohl(eds.), *Umver-teilen; Schritte zur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Köln: Bund-Verlag, 1993.
- Hüther, M., "Reform des Finanzausgleichs," *Wirtschaftsdienst*, 93/1, 1993, pp. 43~52.
- Ifo, *ifo Schnelldienst*.
- Kantzenbach, Erhard, "Lohnsubvention für Arbeitsplätze," *Wirtschaftsdienst*, 91/7, 1991, p. 326.
- , "Wirtschaftspolitische Probleme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Lectures for the Joachim-Jungius-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Hamburg, February 5, 1993.
- Kloten, N., "Zur Transformation von Wirtschaftsordnungen," *Ordo*, Vol. 40, 1989.
- Krakowski, Michael, "System Transform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Eastern Germany and Eastern Europe: Some Lesson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Two Years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organized by KIEP and FES, Seoul, October 2, 1992.
- Krakowski, Michael, and others, *Analyse der Strukturellen Entwicklung der Deutschen Wirtschaft: Strukturbericht 1991*, Hamburg: HWWA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Septem-

- ber 1991.
- Kranse-Junk, G., "Eine bessere Alternative ist nicht in Sicht,"
Wirtschaftsdienst, 91/11, 1991, pp. 552~553.
- Kühl, J., "East-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Two Years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fica-
tion of Korea, organized by KIEP and FES, Seoul, October
2, 1992, pp. 4~19.
- Kwack, Taewon, "Size and Structure of Public Expenditure,"
Kwang Choi, and others(eds.), *Public Finance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2, p. 46.
- Lang, Franz Peter, "Strategic Trade Policy for Eastern Europe,"
Intereconomics, July/August 1992, pp. 182~189.
- Losch, Dieter, "The Road to a Market Economy," *Intereconomics*,
November/ December 1992, pp. 255~260.
- Manke, Klaus, *Steuerverwal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m
Aufbau*, Hefte zur internationalen Besteuerung, Vol. 83,
Hamburg: 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Finanz- und Steuerwesen, 1992.
- Meyer, Klaus E. and Peter Ruhmann, "Direktinvestitionen im
Ausland," *WISU*, 93/1, 1993, pp. 62~67.
- Naggl, Walter von, "War der Zinsanstieg infolge der deutschen
Vereinigung spekulativ überhöht?," *Konjunkturpolitik*, Vol.
37, No. 5, 1991, pp. 273~295.
- OECD, *OECD Economic Survey; Germany*, Paris, 1991.
- Polanski, Zbigniew, "Inflation and the Monetary System in Poland
in the 1980s, and the Stabilization Program 1990," *Osteu-
ropa-Wirtschaft*, 91/4, 1991, p. 343.

- , "The Financial System in Post-Communist Countries: the Polish Lessons," *Intereconomics*, November/December 1992, pp. 261~268.
-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Gemeinschaftswerk "Aufschwung-Ost"*, March 1991, p. 38.
- Priewe, J. and R.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Fischer Verlag, 1991, pp. 123~134.
- Ricardo, Davi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P. Sraffa(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 245.
-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Auf dem Wege zu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 90/91, November 1990.
- ,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in Deutschland: Perspektiven-Wege-Risiken*, 91/92, November 1991.
- , *Für Wachstumsorientierung- 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92/93, November 1992.
- Scharrer, Hans-Eckart, "Lessons from the Currency Storms," *Intereconomics*, September/October 1992, pp. 201~209.
- Scherf, Wolfgang, "Finanzpolitik ohne schlüssiges Konzept," *WiSt*, Vol. 5, May 1991, pp. 249~252.
- Schlesinger, Helmut, "Fortschritte der monetären Integration in Westeuropa," *Kieler Vorträge*,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1992.
- Schlesinger, Helmut, Manfred Weber, and Gerhard Ziebarth, *Gesamtstaatliche Finanzpolitik in der Bewährung*, Vorträge

- und Aufsätze 134, Walter Eucken Institut, Tübingen: J.C. B. Mohr(Paul Siebeck), 1991.
- Schmähl, Winfried, "Koordination und Integration von Alterssicherungssystemen in Deutschland; Beispiele für unterschiedliche Wege," *Deutsche Renten Versicherung*, Vol. 4-5, April/May 1991, pp. 229~243.
- (ed.), *Sozial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Campus Verlag, 1992.
- Siebert, Horst,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spolitische Therapie*,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92.
- , *The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Kiel Discussion Papers 163, Kiel: Kiel Institut, 1991.
- Sinn, Hans-Werner and Gerlinde Sinn,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91.
- Sperling, Ingeborg, "Eine Konsolidierung der Arbeitsmarktpolitik ist nötig," *Wirtschaftsdienst*, HWWA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March 1992.
- Statistisches Bundesamt, *DDR 1990; Zahlen und Fakten*, Wiesbaden, 1990.
- , *Statistisches Jahrbuch 1990 für die BRD*, Wiesbaden, 1990.
- , *Zahlen, Fakten, Trends; Extra 9/90-2*, Wiesbaden, 1990.
- Streibel, G., "Environmental Protection; Problems and Prospects in East and West Germany," P.J.J. Welfens(ed.), *Economic Aspects of German Unification*, Berlin: Springer Verlag, 1992, p. 183.
- Suhr, Heinz, *Der Treuhand Skandal; Wie Ostdeutschland geschlachtet wurde*, Frankfurt: Eichborn Verlag, 1991.

- Tletmeyer, Hans, "Bundesbankpolitik: Weiterhin potentialorientierte Geldmengensteuerung," *WISU*, 93/2, 1993, pp. 93~94.
- Töben, Thomas, *Die Besteuerung des deutsche-deutschen Wirtschaftsverkehrs*,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85.
- Tofaute, Hartmut von, "BRD/DDR: Wer zahlt die Vereinigung?," *WSI Mitteilungen*, Vol. 43, 90/11, 1990, p. 689.
- ,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und Probleme der Finanzierung," *WSI Mitteilungen*, Vol. 43, 90/11, 1990, pp. 713~730.
- Treuhandanstalt, "Fragen und Antworten zur Privatisierung ehemaligen Volksvermögen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trieb und Wirtschaft*, 91/8, 1991, pp. 319~325.
- , *Monatsinformation der THA*, 93/02, 1993, pp. 8~30.
- Wagner, Gerd Rainer, "Altlasten," *WiSt*, Vol. 5, May 1991, pp. 253~255.
- Wehner, Burkhard, *Das Fiasko im Osten; Auswege aus einer gescheiterten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Marburg: Metropolis-Verlag, 1991.
- Weilepp, Manfred, *Instrumente der Strukturpolitik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WWA-Diskussionspapier, No. 5, 1993.
- Welfens, Paul J. J., "German Unification in Perspective," *Intereconomics*, July/ August 1992, pp. 174~181.
- (ed.), *Economic Aspects of German Unifica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Berlin: Springer Verlag, 1992.
- Westerhoff, Horst-Dieter, *Soll die deutsche Einheit über Steuererhöhungen oder über erhöhte Staatsverschuldung finanziert werden?: Eine Modellanalyse*, Diskussionsbeiträge aus dem

- Fachbereich Wirtschaftswissenschaften, No. 77, Essen: Universität-Gesamthochschule-Essen, November 1990.
- , “Unternehmenssteuern: Ein internationaler Standortfaktor,” *Orientierungen zu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politik*, Vol. 47, 91/1, 1991, pp. 53~61.
- Wissenschaftlicher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tellungnahme zu einigen finanzpolitische Aspekten der deutschen Einheit*, Hamburg, 1990.
- Wissenschaftlicher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ür Wachstumsorientierung- gegen lähmenden Verteilungsstreit*, November 1992, p. 147.
- , “Probleme der Privatisierung in der neuen Bundesländern,” *BMWi Studienreihe*, Vol. 73, Bonn: BMWi, 1991.
- , *Schaffung eines gemeinsam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bietes in Deutschland; Gutachten vom 1987. 6 bis 1990. 3*, Bonn: Otto Schwartz und Co., 1990.
- Gabler Wirtschaftslexikon*, Wiesbaden: Gabler Verlag, 1988, p. 3114.
- Handelsblatt*, January 19, 1992.
- Time*, August 10, 1990.
- Wirtschaftswoche*, February 22, 1991.